

I. 서 론

1. 연구목적

그동안 청소년활동의 주류를 이루어 왔던 청소년 단체활동이나 청소년 수련활동은 청소년기본법의 근거에 의해 생활권이나 자연권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련시설들이 법적 최소 인원만을 지도자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사고 예방의 철저를 기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러한 청소년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문제는 학생 봉사활동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예컨대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교 교사들의 현장지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에 있고, 지역사회내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지도자의 경우에도 그 수가 극히 한정되어 있어 실제 활동현장에서 청소년봉사활동을 안전하게 지도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장지도자의 양적부족은 학생들에게 활동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사고 발생 위험을 그만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며, 지도자의 현장인술이 없었거나 현장에 지도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 또는 지도소홀로 인하여 봉사활동 중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도자의 인술부재 또는 지도 소홀 등으로 일단의 책임을 면키 어려운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사고발생의 위험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자신의 피해는 물론 교사와 학교 등에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며, 이러한 상황들은 궁극적으로 청소년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물론 현행 청소년기본법에는 ‘시·도지사는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나 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로 하여금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제33조)과 동 법 시행령 제4조의 수련활동영역의 활성화 시책의 하나로 ‘수련활동 안전보험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근에 와서야 일부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단체에서는 수련 또는 단체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 보험에 가입하여 활동에 참가하도록 하거나, 수련시설이나 단체에서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참가비에 보험 가입비를 포함하거나, 반대로 수련시설이나 단체가 아예 연간 보험가입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학생 봉사활동의 경우에 있어서도 극히 일부분의 자원봉사센터가 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임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미가입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렇듯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현행의 청소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이 단순히 선언적 성격의 조문이라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임의조항으로서 강제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이를 임의로 적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사고 당사자에 대한 의무적, 법적

책임은 없고 다만, 민사상의 책임은 있을 수 있어 항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둘째, 보험가입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나 수련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엄격히 말하면 법의 내용 불비로 인해서 청소년 단체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단체 등은 보험가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활동에 따른 위험노출과 활동위축은 그만큼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 자신은 물론 학부모, 학교 당국 역시 활동에 수반되는 안전사고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이나 단체활동, 봉사활동에 참가함을 꺼려하거나, 지도자나 교사가 인솔하기를 꺼려하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일부 수련시설이나 단체에서 청소년 활동과 관련하여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私的) 보험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결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이라고 하는 공공의 성격으로 추진되는 청소년 활동에 수반되는 안전대책을 위한 비용이라고 하는 경제적 부담을 수련시설이나 청소년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청소년 육성이라고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와는 상치된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소 낮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가는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청소년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거나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건전 육성활동의 진흥을 위한 장려책 또는

동기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활동 중 안전에 대한 사전 대비책과 사후 대비책에 대하여 개별 활동 주체인 청소년은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보상책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보험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제반 활동과정, 특히 청소년 봉사활동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대책의 하나로서 운용되어야 할 보험제도를 완전히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한 사적(私的)보험기능에 맡기기 보다는 국가가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하는 방식의 새로운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Ⅱ장에서는 그동안의 청소년 활동이 어떻게 분류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어떠한 활동요구를 가지고 있는가를 선행연구를 통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활동들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요소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활동에 수반되는 위험과 관련하여 위험을 분산시키고 손해를 방지하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 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보험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은 청소년활동이 결국 청소년 자신에게는 물론 국가발전에 필요한 양분으로 작용한다는 논거로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청소년봉사활동에 대한 일선 학교교사와 학부모들의 안전사고 인식,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소재, 바람직한 보험제도 등

을 알아 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주로 다루었다. 조사내용으로는 학교교사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들이 어떠한 형태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봉사활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청소년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개연성의 정도와 사고의 책임소재를 규명함으로써 청소년활동에 대한 안전의식정도,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와 이에 따른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제도적 장치로서는 보험제도를 제시하였고, 이의 보험제도가 어떠한 형태로 도입되어야 하는가를 연구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자원봉사보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보험상품이 무엇보다도 비 영리 성격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과 실제 자원봉사보험이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우선 보험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날에 있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적(公的) 사회보험제도와 시장경제논리에 입각한 사적보험이 각각 어떠한 차별적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지를 비교·제시하였다. 아울러 국내·외 청소년자원봉사보험의 운영실태를 수집된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바람직한 보험제도 도입방안을 이끌어 내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청소년자원봉사 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안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도입가능한 대안들 및 최적 대안들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제Ⅴ장은 정책제언으로서 국가가 청소년봉사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정부나 학교, 사회가 각각 담당하여야 할 역할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자원봉사보험이 어떠한 형태로든 개발·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3. 연구방법

1) 이론 및 문헌연구

보험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기위해 사회제도로서 보험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문헌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오늘날의 공적보험과 사적보험이 갖는 기능과 성격등을 알아 봄으로써 청소년자원봉사보험제도가 어떠한 성격으로 도입되어야 하는가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봉사활동이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자신에게는 물론 국가의 청소년 건전 육성이라는 필요에 의해 하나의 정책으로서 추진되는 만큼 국가가 제도적으로 청소년의 건전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활동에 수반되는 사고발생에 대한 제도적 장치 역시 마련하여야 한다는 논리로써 안전보험제도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2) 현장방문과 설문조사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지는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활동내용과 이에 따른 보험에 가입여부, 보험의 성격과 내용, 실제 발생한 안전사고와 발생빈도, 보험금의 정도 등을 현장방문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청소년이나 운영주체측에서 가입한 보험의 성격이 여타의 사적보험 상품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개발되어야 할 자원봉사보험의 형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봉사활동을 주관하는 학교의 관련 교사집단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안전의식과 제도적 장치로서의 보험운영 형태에

〈표 1〉 교사·학부모 시도별 표본수

시·도별 구 분	교 사	학부모	표본수
서 울	11	11	22
부 산	4	4	8
대 구	5	5	10
인 천	5	6	11
광 주	5	5	10
대 전	5	5	10
울 산	3	4	7
경 기	4	4	8
강 원	3	3	6
충 북	3	3	6
충 남	3	3	6
전 북	2	2	4
전 남	3	3	6
경 북	1	1	2
경 남	2	2	4
제 주	3	3	6
합 계	62	64	126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대상으로 교사의 경우,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1998년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실시한 전국 학생봉사활동 담당교사 일반연수 과정 참가교사 62명과 학부모의 경우,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부모 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표 1〉 참조).

조사내용으로는 봉사활동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정도, 실제 활동 중 사고발생 경험유무, 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형태, 보험가입비용의 적정액수, 가입희망여부 등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제도의 도입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3) 자문회의

본 연구에서는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분석내용, 이를 바탕으로 한 대안의 도출과 도출된 대안의 상호간 비교분석을 통한 최종 대안제시 등 일련의 연구과정과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의 검증을 위해 관련분야 대학의 교수 및 보험실무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토록 하여 최종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자문회의의 의견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청소년자원봉사보험제도의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 최종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정책을 입안하는 측에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주요 대안만 한정시켜 제시하였다.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청소년활동과 안전보험제도의 필요성

1) 청소년활동의 분류와 요구(Needs)

청소년활동의 범주는 청소년 자신이 주체적 의지에 의해 자발적, 자율적으로 행하는 활동과 청소년 자신의 주체적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나 지역 사회, 또는 청소년지도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요구하는 활동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볼때 청소년의 활동은 자율에 기초하여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예컨대 국가가 청소년의 교육과 육성이라는 측면의 입장을 가질 때는, 청소년 자신의 주체적 의지와는 무관하게 활동이 고안되고 동시에 활동이 행하여지도록 요구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 자신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자발적인 활동이면서도 다른 한편 성인들에 의한 의도적인 개입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청소년활동은 성인(지도자)들에 의한 의도적 개입활동을 지나치게 강조해 옴으로써 성인들의 시각에 기초하여 청소년활동에 특정 목표나 과제가 설정되어, 청소년활동의 영역 역시 고유활동 영역과 임의활동 영역, 수련활동 영역 등으로 구분하고, 수련활동 영역만을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돕는 모든 활동이라고 말하여 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임의활동 영역에서나 고유활동 영역 속에서도 얼마든지 전인적 성장과 발달

을 돕는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생활전반에 걸쳐 그들 자신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다양한 의도적 활동을 청소년 스스로가 또는 성인들의 요구에 의해 스스로 행하는 활동' 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어쨌든 청소년활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개념에서 볼 때, 학교 안은 물론 학교 밖의 지역사회 등 어디에서도 항상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학교 내에서의 클럽활동, 특별활동을 비롯해 단체활동, 학교행사, 학교 밖에서의 개인 및 동아리 활동, 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수련활동, 청소년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단체활동, 기타 시설이나 기관, 단체에 참가하여 이루어지는 활동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활동을 내용에 따라 몇개의 영역으로 범주화하면 <표 2>와 같다.

<표2> 청소년 활동영역분류

활동목표별 분류	활동내용별분류(1)	활동내용별분류(2)	참가규모별분류
· 건강증진 활동 · 정서함양 활동 · 용기배양 활동 · 협동심배양 활동 · 도덕성배양 활동 · 창의성함양 활동 · 사회성함양 활동 · 자질계발 활동 등	· 스포츠 활동 · 문화 활동 · 봉사 활동 · 야외 활동 · 인간관계수련 활동 · 전통문화 활동 · 예절 활동 · 과학탐구 활동 · 놀이와 레크레이션	· 체력단련 · 응급처치 등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수련활동 · 예술감상 · 독서활동 등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 야영 · 해양탐험 등 용기배양을 위한 수련활동 · 생활예절익히기 · 전통예절문화활동 등 예절수양을 위한 수련활동 · 사회봉사 · 인간관계개발 등 협동심 증진을 위한 수련활동 · 역사연극 · 문화권 탐방 등 궁지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 제 1호 내지 제6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합적으로 함양하기 위한 수련활동	· 개인별 · 동아리별 · 집단별

* 출처 : 청소년활동론, 1993, p. 59. 그림을 재구성

* 활동내용별 분류(2)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내용임.

상기의 활동들은 청소년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동아리를 조직하여 스스로 운영하고 있다기 보다는 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대부분 교사의 지도를 통해서, 학교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소년 단체나 시설 등의 청소년지도사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나 지도를 통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이 실제 청소년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느냐에는 활동의 내용을 보면 다소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한국청소년개발원이 1996년에 실시한 청소년과 지도자의 수련거리 선호도 조사에 대한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표 3>에서 처럼 실제 참여하고 있는 활동과 희망하고 있는 활동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한 활동으로는 체력단련활동으로 전체 활동의 51.7%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실제로 체력단련활동에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는 14.2%밖에 되지 않으며, 이의 활동은 지도자 역시 24.2%로 가장 많이 실시하였으나 실제로는 4.2%밖에 원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자연체험활동의 경우,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8.7%밖에 되지 않으나, 자연체험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30.3%로 나타나고 있어 가장 많은 참여희망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반대로 청소년의 요구와는 달리, 지도자가 실시하고자 원하는 활동은 전통문화활동(2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비해 이의 활동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경우 9.3%로 가장 낮은 비율의 참여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의 활동은 청소년 자신이 지금까지 참여한 활동과 실제 본인들이 참여하고 싶은 활동과의 갭(gap)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지도자 역시 본인들이 실시하고 있는 활동과 실시하기를 원하는 활동과도 갭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가장 높게 선호하는 활동인 자연체험활동은 사실 다른 여타의 활동들에 비하여 사고발생 확률이 가장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연체험활동에 있어서 청소년의 경우 '실제 참여한 활동 - 가장 많이 참여하고 싶은 활동' 과의 개입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청소년의 활동요구와 실제 실시되고 있는 활동간의 갭을 단순히 선호도 차원으로만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활동에 대한 지도자의 지도능력이나 설비, 수반되는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해서 꺼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지는 향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동시에 청소년들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활동들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검증을 거쳐 세부적인 활동내용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어쨌든 청소년활동이 청소년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생성되고 동시에 청소년들의 자율적·자생적 조직에 의한 활동형태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활동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여건, 즉 지도자의 수, 개입의 정도, 전문성, 활동의 안전지도와 사고예방, 요구활동에 대한 만족도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여건이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관건이 된다고 하겠다.

〈표 3〉 청소년 수련거리 전체에 대한 청소년-지도자 비교

(단위 : %)

	청소년		지도자	
	가장 많이 이용한 것	가장 많이 참여하고싶은 것	가장 많이 실시한 것	가장 하고 싶은 것
체력단련활동	51.7(100)	14.2(100)	24.2(100)	4.2(100)
체력증진활동	38.5(74.4)	6.0(42.3)	13.2(54.4)	2.3(53.8)
보건위생활동	8.7(16.9)	5.9(41.9)	4.6(19.2)	1.0(24.3)
안전생활활동	4.3(8.4)	2.2(15.8)	6.4(26.5)	0.9(21.9)
정서함양활동	23.1(100)	27.4(100)	21.7(100)	23.8(100)
감성개발활동	1.3(5.5)	4.1(14.9)	6.0(27.5)	8.3(34.7)
문화예술활동	10.0(42.9)	9.8(35.8)	4.8(22.3)	11.1(46.6)
취미특기활동	11.9(51.6)	13.5(49.2)	10.9(50.2)	4.5(18.7)
자연체험활동	8.7(100)	30.3(100)	20.4(100)	23.1(100)
자연탐구활동	3.2(37.1)	7.4(24.5)	11.8(57.7)	5.1(21.9)
호연수련활동	1.1(12.3)	19.8(65.5)	3.6(17.6)	13.4(57.8)
자연사랑활동	4.4(50.7)	3.0(10.0)	5.0(24.7)	4.7(20.2)
예절수양활동	3.2(100)	5.0(100)	13.3(100)	7.3(100)
자기절제활동	1.5(46.9)	1.6(32.6)	6.3(47.1)	2.8(38.5)
생활예절활동	1.0(29.9)	2.0(38.5)	4.1(30.8)	2.4(32.3)
규범이해활동	0.7(23.2)	1.4(28.9)	2.9(22.1)	2.1(29.2)
사회봉사활동	10.7(100)	13.6(100)	15.4(100)	12.2(100)
일손돕기활동	4.9(45.9)	2.7(19.6)	3.3(21.5)	2.4(19.3)
지도상담활동	2.1(19.5)	3.4(25.2)	4.6(29.9)	2.6(21.3)
자선위문활동	2.4(22.0)	4.7(34.9)	2.6(16.9)	4.0(33.1)
지역사회개발	1.3(12.6)	2.8(20.4)	4.9(31.7)	3.2(26.2)
전통문화활동	2.6(100)	9.3(100)	4.9(100)	29.4(100)
민속예술활동	0.8(32.5)	4.4(46.8)	3.3(67.6)	15.1(51.5)
역사이해활동	1.5(57.6)	2.8(29.6)	1.4(28.9)	7.3(24.9)
문화비교활동	0.3(9.9)	2.2(23.6)	0.2(3.5)	6.9(23.5)

* 출처 : 구정화 외, 청소년 수련거리 선호조사, 1996.

2) 청소년활동과 안전사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활동을 수련활동으로 총칭하고 이의 활동영역은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체험활동영역으로서 심신단련, 자질향상, 취미개발, 정서함양, 사회봉사 등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청소년기본법 제3조 3호).

수련활동내용으로는 앞서서도 명시하였던 것처럼 건강증진 및 관리, 정서함양, 용기배양, 예절수양, 협동심 증진, 긍지함양, 복합수련 등 7가지 형태로 세분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조사연구에서는 수련활동 영역과 내용을 앞의 <표 3>에서처럼 수정하여 6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19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함으로써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상기의 하위영역들이 대체로 청소년 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의 활동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19개 영역의 활동은 학교내에서나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 질 수 있고, 생활권이나 자연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설중심 운영형태나 프로그램중심 운영형태, 그리고 참가규모나 참가형태 등의 어떠한 분류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소년의 활동은 실시되고 있는 운영형태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실내·외 종합활동 형태(34.3%)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야외 중심의 자연체험 활동(28.7%)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내중심의 강의·강습활동은 전체의 13.3%에 불과하여 실내중심 강의·강습 활동보다는 실내·외 또는 야외 중심의 자연체험활동이 훨씬 더 많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권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생활권에서는 실내중심의 강의·강습활동이 28.6%이며 실내외 종합활동이 22.6%로 나타나고 있고, 자연권에서 가장 많이 실시되는 활동은 야외중심의 자연체험활동과 실내외

종합활동이 각각 44.2%로 나타나고 있어 실내외 종합활동과 야외중심의 자연체험활동이 여타의 활동보다 높게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문화체육부, 1996).

그런데 청소년의 활동을 안전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흔히 생활권보다는 자연권 활동에서, 실내의 강의강습 활동보다는 실외의 활동이나 야외 중심의 자연체험활동에서 보다 위험적 요소가 많다. 실제 수련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공통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38.1%)과 학부모(38.7%)보다 지도자(57.6%)나 교장(63.2%)이 더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밝혀졌다(송광성외, 1993: 95).

이러한 안전사고 위험이 청소년들에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문제점으로 남아있고 사고의 예방대책과 사고 발생 후 적절한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그 결과는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소극적 입장, 활동의 위축 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에 수반되는 위험요소들 최소화하는 노력이나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 하였듯이 청소년활동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크게는 생활권내에서의 수련시설, 자연권에 소재한 수련시설, 그리고 청소년 단체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이나 단체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험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상징하면 생활권 시설에서는 주로 체력증진활동과 관련된 체육관 시설, 수영장 시설, 옥외의 씨름장 등에서의 활동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비교적 높다고 보겠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의 위험요소는 생활권보다는 기실 자연권 시설의 수련활동에서 더욱 많이 내재되어 있으며, 사고발생의 개연성도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자연권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 위험활동으로는 대표

적으로 산악훈련, 독도법 및 오리엔티어링 활동, 암벽등반, 수상활동, 야간담력훈련, 항공훈련, 지형지물을 이용한 자연체험훈련, 생존훈련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위험활동은 청소년 단체들의 활동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단체에 따라 수상활동, 호연지기활동, 자연체험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쨌든 이들 대부분의 수련시설의 경우 활동에 따른 위험요소가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재정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충분한 전문 지도자의 확보, 시설의 안전관리 등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일부의 시설에서는 그 비용을 자체부담하지만 대부분 활동에 참가하는 학교에서 부담하거나, 학생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생활권 수련시설과 자연권 수련시설 그리고 청소년 단체의 수련활동 관련 보험가입실태를 무작위로 7개소(생활권 수련시설 3개소, 자연권 수련시설 1개소, 청소년단체 3개소 등)를 선정하여 방문면접한 결과 <표 4>에서 처럼 7개소 모두가 어떠한 형태로든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부담주체 측면에서 보면, 생활권 수련시설 3개소, 자연권 수련시설 1개소 모두가 해당 시설의 재원으로 부담하고 있고, 반면에 청소년 단체의 경우는 3개 단체 모두가 보험료를 학생들에게 부담시키고 있고, 단체가 개최하는 특별행사시에도 단체에서 일부 부담하는 외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추가 또는 별도 부담은 생활권 시설에서도 특정 수련활동이나 야외활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둘째, 활동의 주관처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을 보면, 수련·단체활동 주관처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수영장이나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생활권 수련시설의 경우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에 주로 가입하고 있고, 자연권 시설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단체의 경우 대체로 상해보험 등에 가입

하고 있다.

셋째, 보험가입비용에 있어서는 생활권이나 자연권 수련시설에서는 모두가 자체부담하고 있는데 보험사의 입장에서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있어 대체로 해당 시설의 건물면적이나 수용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연간 최소 89만원에서부터 최고 240만원까지 부담), 반면에 단체의 경우 상해보험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 가입 인원수에 따라 할인해주고 있거나 해당 단체의 행사 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수련활동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사가 보상하는 보상금도 활동 주관처나 가입보험상품에 따라 차이가 많은데, 수련시설의 경우 사망사고시 대체로 1억원정도인데 반해 단체에서의 활동 중 사망사고 보험금은 최고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다섯째, 보험의 가입형태는 수련시설의 경우 대부분 1년단위(소멸성)로 가입하고 있으나 특정활동, 예컨대 야외활동(캠프 등)시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 부담시키거나 자체부담으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단체에서의 경우 매년 대원(단원) 등록 시나 신규가입 시 청소년들에게 의무가입토록하고 있으며, 행사에 따라 추가가입하게 하거나(행사용 보험), 비 단원인 경우도 의무가입하게 하고 있다.

여섯째, 활동 중 보장이 되는 보상내용으로는 사망과 후유장애, 의료비(입원, 통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실제 사고건수는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서부터 타박상 등을 포함하여 총 46건(이 경우 총 1,500만원 지급)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수련시설이나 단체의 경우 보험가입을 1년단위로 하고 있으나 특정행사나 활동은 보험적용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거나 별도의 행사용 보험가입비용을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체육관과 수영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수련시설의 경우 대체

로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가 수련시설을 청소년교육 또는 수련시설로 보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종의 하나로 분류하여 보험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청소년 단체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으로는 상해보험, 건강연수보험 등인데 건강연수보험의 경우 해당 단체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가 연수사업이기 때문에 연수보험이라는 형태의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체의 경우 동일한 성격의 보험들인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보험료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보험금까지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이유는 가입자의 인원규모, 활동의 위험정도, 사고 발생시 어느 정도까지의 사고내용에 대해서 보장할 것인가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결과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청소년 단체활동에 적용되는 보험 역시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회사의 판단에 의해, 또는 계약자의 선택이나 법 적용에 따라 제 각각 보험료와 보험금이 적용되고 있어 활동의 주관처나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 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 청소년 수련시설·단체의 보험가입실태

구분		생활권 시설(3)	자 연 권 시설(1)	청소년 단체(3)
보험 료 부 담 주 체	학생	-	-	B : 학생에게 부담 W : 학생에게 부담 Y : 학생에게 부담 (단원부담)
	시설 및 단체	MR: 체육활동보험가입 MD: 수련원에서 가입 SS: 수련원에서 가입	K : 수련원에서 전액부담	-
	해당 활동에 포함	MR: 수련활동보험가입 MD: 야외활동시 수련비용에 포함	-	W: 특별 행사시 추가부담 Y : 행사시 별도부담 (단원+비단원)
보험가입상품		MR: 체육시설대상책임보험 MD: 영업배상책임보험 SS: 체육시설업자배상보험	K : 영 업 배 상 책임보험	B : 스카우트 상해 보험 W: 단체 상해보험 Y : 단체연수건강보험
보험 가입 비용	개별가입	MR: 없음 MD: 야외활동시 SS: 없음	-	B: 대원 920원, 지도자 1,500원 Y: 지도자 연간 1,500원, 대원 1,000원 행사때(1일)대원 90원, 지도자 150원
	단체가입	MR: 894,879원 MD: 2,428,000원 SS: 1,950,000원	K: 1,128,000원 (입소대상자모 두 해당)	W: 1,000원-3,000원
사고보상액		MR: 회관내 1인당 최고5천만원, 사 고건당 1억원(사망시) MD: 수영장 사고부상시5천만원 SS: 사망시 5천만-1억원 구내치료비 백만원-천만원	K : 1인당 최고1억원 1건당 최고1억원	B: 최고 사망 후유장애시대원 1,500만원 지도자 2,000만원 W: 2,000만원-4,000만원 Y: 최고 사망시 행사보험:지도자1,000만원, 학생500만원 연간보험:지도자4,000만원, 학생3,000만원
연간보험료		MR: 1,856,139 + 야외활동보험 128,760 ('98 현재) 수용인원 650명 MD: 2,428,000원 SS : 1,950,000원	K: 1,128,000원 (수용면적 720명 기준)	B : 2억6천만원 정도 W: 7천만원-2억원 Y : 1억2천만원-3천만원 (서울지역 20만명)
가 입 형 태	임의가입	-	K : 수련원 자체가입	B: 회원 가입시 대부분 가입 Y: 비단원인 경우 행사 참여시 가입
	의무가입	MR: 의무가입의 형태 MD: 야외행사시 별도가입 의무가입의 형태 SS : 의무가입의 형태	-	W: 단원 및 지도자 의무가입, 행사참여시 비회원인 경우 의무 가입 Y: 단원은 의무가입
단체가입할인율		MR: 없음 MD: 없음 SS: 3% 정도	K : 없음	B : 무응답 W: 10% -20% Y : 보험사로부터 행사시 지원금을 받음
연간사고발생건수		MR: 없음 MD: 연간 1-2건 SS: 연간 3-5회	K : 연간 1건	B : 연간 6% (총가입자 25만명기준) W: 지난 5년간 없었음 Y : 2년에 1명 정도 사망 (서울지역)
연간보험금지금액		MR: 없음 MD: 10년간 6천만원이하(8건) SS : 150만원 (3건)	K : 사고1건에 대한보험금 은 추후지 급 키로 함	B: 46건, 1,500만원 지급

* 상기의 조사대상 수련시설, 단체의 명칭은 익명으로 처리하였음

3) 청소년활동과 보험의 필요성

청소년활동은 활동내용과 장소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

위험이라는 용어에 대하여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위험을 '측정이 가능한 불확실성(measurable uncertainty)'이라고 정의하는가 하면(Frank H. Knight, 1921: 233), '어떤 소망스럽지 아니한 현상의 발생에 관한 객관화된 불확실성(the objectified uncertainty as to the occurrence of an undesirable event)'이 바로 위험'이라고 했다(Allan H. Willet, 1951: 9-10). 이외에도 최근에는 위험을 '손실 발생에 관한 불확실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George E. Rejda, 1995: 5). 따라서 '위험을 부담한다'고 하는 경우 위험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¹⁾

청소년활동에서의 사고발생의 조건은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지는 수련시설내의 입지와 건물구조, 시설의 안전장치 등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청소년이나 지도자의 부주의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위험을 기피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득(得)보다 실(失)이 많다고 판단하면 위험이 뒤따르는 청소년활동을 포기하는 것이다. 다음의 대비방법은 위험을 스스로 인수하는 방법이다. 이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위험발생빈도와 심도를 제거 내지 감소시킴에 있어서 위험을 기피하

1) 위험(risk)은 손해(발생)의 가능성(chance or possibility of loss)을 의미하지만 이를 사고(peril)발생가능성이라고 하는 경우 손해의 개념이 사고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본다. 사고는 손해를 실제로 일으키는 화재, 폭발, 사망 등의 우발적인 재해나 사건으로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예지하거나 예방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하며 '위험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경우의 위험은 사고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위해(危害)는 영어의 hazard로서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는 조건, 즉 사고발생의 조건, 사정, 상황, 요인 또는 환경 등을 의미한다. 이는 사고발생의 잠재적 조건 또는 위험사정이라고 볼 수 있다. '위험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경우 hazard를 의미한다(Lalley, E. P. Corporate Uncertainty & Risk Management, N.Y, 1982, p.9)

기도 하고 위험발생에 대비하여 예비책을 강구하기도 하며, 불행히 위험이 발생될 경우 손실감소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기도 하며, 위험을 분산시키거나 결합시킴으로서 본인에게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대비책으로는 위험의 발생에 대비해서 사전에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즉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들어 위험의 발생 후에 대비하는 것보다는 위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위험발생이나 손해발생의 빈도를 줄이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위험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사전조치와 사후조치를 동시에 취하는 경우도 있다. 사전조치에 치중하느냐, 사후조치에 치중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비용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고예방을 위한 측면에서 안전시설설치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면에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은 자금조달을 통해서 대비하는 방법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예컨대 위험을 스스로 인수하는 방법, 또는 위험을 제3자에게 넘겨주는 방법, 마지막으로 위험의 결합으로 위험발생에 대비하는 방법이 그것인데 위험을 동질의 것으로 다수 결합해서 위험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의 방법이 바로 보험이다. 즉 보험이란 단순히 표현하면 위험결합으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시키는 사회적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방갑수, 1996: 26).

따라서 청소년활동에 보험이 필요한 것은 우연한 사고로부터 당하는 실제손실을 다수의 동질위험의 결합으로 얻는 평균손실로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험효과를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고발생 후 사고로 인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사고발생에 대한 원인규

명을 통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나 주의 등을 기울임으로써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전·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안전보험과 국가 개입의 의의

1) 국가개입의 필요성과 의의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은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발달로 인한 심리적 혼란과 정신적 불안정감을 극복하고 자아정체감을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 따라서 청소년 개인적 요구의 관점에서 본다면, 청소년 자신의 신체적 변화를 그들 스스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역할 학습, 정체감 구축의 기회마련을 필요로 하고, 청소년활동은 이를 위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청소년활동의 유의성을 보면, 비단 신체적 변화에 대한 극복기제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 신장시키고 책임감, 협동정신, 희생정신 등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청소년들의 적성이나 소질은 교과 학습시간을 통하여서도 발견될 수 있고, 신장될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교과위주의 주입식, 획일적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교육의 현실 속에서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청소년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국가적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청소년의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90년 체육청소년부에 의해 수립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은 그 동안의 입시위주의 교육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왔고, 이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청소년 육성을 새로운 청소년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수단으로 청소년 수련활동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수련활동은 이후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제도적 추진장치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련활동을 장려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장치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청소년기본법 제8조). 이외에도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되는 사업인 수련거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련거리의 이용대상 및 연령과 이용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야별로 균형 있게 개발·보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소년의 활동 중 수련활동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려·지원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수련활동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청소년 수련시설을 허가하는 요건으로 시설의 운영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고(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이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에 대하여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청소년기본법 제28조(수련시설의 종류 시설기준 등) 제2항에서 문화관광부령(제20조)으로 정하고 있는 수련시설의 안전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련시설의 안전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 가.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나. 상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조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다. 비상연락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 라. 안전사고·응급환자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 마.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방책·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바.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안전모·안전띠·구명대 등 개인보호장구를 갖추어 두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 매월 1회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아.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자.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차. 자연체험시설 등에는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카. 이용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타. 태풍·홍수·해일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 파. 당해 수련시설안에 법 제38조제2항 각호의 시설 또는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에서 정한 안전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은 수련시설 안전기준을 정함으로서 시설 운영자에 대하여 안전에 대하여 의식을 갖도록 하고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에 수련시설에 대한 이러한 안전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1차 위반 시 주의, 2차 위반 시 경고, 3차 위반 시 운영정지 10일, 4차 위반 시 운영정지 1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기준과 위반 시 적용하는 행정처분을 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수련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

고 대책에 충분한 중요성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들 수련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안전기준에 대한 지도감독이 어느 정도 실효성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의문스럽다. 따라서 실제 수련시설의 대부분이 사설(私設)로 운영되고 있고, 운영재정이 영세함을 감안할 때 이들 수련시설이 어느 정도 안전기준을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앞으로 별도의 연구를 통해서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청소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 법 시행령 제4조(수련활동 활성화시책)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 영역의 활성화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개발의 하나로 수련활동 안전보험제 실시를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11조 제2항은 수련활동영역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²⁾

이렇듯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법적 안전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특정 수련시설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근거와 지원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여 놓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청소년의 수련활동, 청소년 단체활동, 나아가 동아리 활동, 또는 학교가 운영하는 특별활동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그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이들 수련시설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해주어야 함에 불구하고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안전보험에 대한 강제가입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동시에 수련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대비책을 지나치게 수련시설 중심으로만 한정시키고 있다는 것이 현행 법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앞

2)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시책의 하나인 '수련활동 안전보험제의 실시'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동 조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련활동영역의 활성화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개발과, 고유 및 임의활동영역과 상호보완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으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결국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해석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련시설은 물론 청소년단체, 나아가 청소년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최소한의 보험가입비용을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본다.

2) 보험의 적용범위와 운용성격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의 생활전반에 걸쳐 그들 자신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다양한 의도적 활동으로서, 청소년 스스로가 고안하거나 또는 지도자가 고안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행하여지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구정화의 연구에서 제시된 6개 활동영역과 19개의 하위영역의 활동으로 상정될 수 있겠고 19개의 하위영역속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활동들이 청소년 스스로에 의해 개인 또는 동아리 형태로 전개되거나 수련시설이나 청소년단체 또는 학교가 의도적으로 주관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상기의 모든 활동이 연중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활동 역시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과 전혀 위험이 수반되지 않은 활동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상기의 모든 활동을 대상으로 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상대적으로 보험가입비용 부담만 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컨대 청소년활동이 생활권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자연권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또한 실내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실외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 활동인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조직된 청소년 동아리들에 의해서 전개되는 활동이냐에 따라 각기 적용되는 보험료를 결정하는 보험요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또 다른 변수로는 활동이 숙박을 요하는지, 아니

면 비숙박 활동인지가 고려될 수 있겠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연간 활동 시간 수나, 상기의 19가지 활동의 위험정도에 따라, 내용에 따라 달리 책정될 수 있다. 이렇듯 보험요율의 결정은 각각의 활동의 특정 상황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가 고려되어 경험통계에 의해 그 요율이 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소년활동 중 사고발생에 대한 경험통계가 부족한 상태이고, 지나치게 위험담보를 세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위험이 수반되지 않은 특정활동에 집중되거나 선호하는 편중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 단체, 학교가 연간 실시하는 전체적인 활동의 시간이나 내용을 고려하여 평균적 산출방식을 채택,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청소년활동에 따른 보험적용 대상활동으로는 최소한 학교가 주관하는 수련활동을 비롯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활동에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며, 나아가 청소년들 스스로가 조직한 등록된 동아리 활동에도 까지 확대·적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 동아리 활동조직이 어디에 등록할 것인가가 하는 등록기관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1998년도에 확정된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 의한 청소년의 자생·자율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가칭)청소년활동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며,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동아리와 같은 경우에는 현행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보험의 운용성격, 예컨대 보험료 부담의 주체, 사고발생시 보험금의 지급주체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게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로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청소년 자신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 둘째로 지도자의 부주의, 셋째로 수련시설의 안전상 조치에 결함이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다.

발생되는 사고 역시 활동 중 청소년 자신이 당하는 사고, 활동 중 청소년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사고, 청소년이 자신의 과실이나 부주의 등으로 수련시설의 설비나 장비 등에 입힌 재산상의 피해 등으로 구분하여 상정할 수 있다.

여기서 위험의 담보가 되는 경우는 활동 중에 청소년 자신의 부주의로 당하는 사고를 포함하여 청소년이 다른 사람에게 입힐 수 있는 사고, 활동 중에 있는 청소년이 수련시설의 장비나 설비 등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의 사고, 지도자의 부주의나 시설의 안전상 조치 결함으로 인해 청소년이 당하는 사고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적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청소년 자신의 부주의로 활동 중에 상해를 입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청소년 자신이 상해(사망사고를 포함)를 보장하는 보험부담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지도자의 부주의나 시설의 안전상 조치 결함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상해(사망사고를 포함)를 입는 경우에 대한 보험가입주체는 시설이나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배상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이 궁극적으로 국가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활동이라고 할 때, 사고의 책임을 청소년이나 지도자 또는 단체·시설에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며, 역시 일정액의 보험가입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분적으로 부담하거나,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액을 보상해주거나 지원해주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Ⅲ. 청소년자원봉사활동과 안전보험

199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생봉사활동은 현재로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보다 정확하게는 중학생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참가시간이 내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점수화되어 고등학교 진학성적에 반영하도록 제도화 되어있는 실정이고, 상대적으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봉사활동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다.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고등학교 봉사활동 실적을 대학입학 사정시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대학 자체로서도 교양선택이나 교양필수과목의 형태로 교과를 개설하여 대학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오늘날 고등학교의 봉사활동 실적을 대학입학시 반영하는 대학교는 날로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비단 대학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봉사활동의 교급 확대는 곧 학생봉사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봉사활동이 봉사학습으로서 학교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봉사활동이 봉사활동 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그 만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봉사활동 자체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형식적, 시간떼우기식 참여라든가, 교사들의 학생봉사활동 현장지도 미흡이나 봉사활동 안전에 대한 사전교육 미흡, 사고 발생 후 보상대책 부재 등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거나 마련되어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1. 봉사활동과 안전사고 개연성

교육부에서는 학생봉사활동이 처음 시행되었던 지난 1996년 2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봉사활동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장학자료(장학자료 제113호)를 발간하여 이를 시·도 교육청에 보급한 바 있다. 동 자료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봉사활동의 유형을 목적에 따라 8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활동분류에 따른 활동내용들을 제시한 바 있다(〈표 5〉참조).

〈표 5〉에서 제시한 활동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주관적 관점에서 볼 때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활동을 예측해보면, 농어촌 일손 돕기 활동(농촌벼베기나 추수활동시 각종 농기구사용, 농약병 수거활동 등), 복지시설 일손 돕기 활동(주방에서의 화상, 야채 등을 다듬을 때의 자상 등), 병원에서의 병약자 위문 활동(식사보조시 기도 막힘 등으로 인한 환자사고 등), 교통·안전지도 활동(교통사고 발생), 지역 사회실태조사 활동(수질조사시 익사사고), 재해구호 활동(인명구조시 인사사고 등) 등 사고출현이 가능한 활동들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수 있다.

〈표 5〉 학생들을 위한 봉사활동의 분류

봉사활동 목적에 따른 구분	활동 내용
일손돕기 활동	- 복지시설 일손돕기 - 공공기관 일손돕기 - 병원 일손돕기 - 농어촌 일손돕기 - 학교내 일손돕기
위문활동	- 고아원 위문 - 양로원 위문 - 장애인 위문 - 병약자 위문 - 자매부대 위문
지도활동	- 동급생 지도 - 하급생 지도 - 사회교육 지도 - 교통·안전 지도
캠페인 활동	- 공공질서 확립 캠페인 - 교통·안전 캠페인 - 학교주변 정화 캠페인 - 환경보전 캠페인
자선·구호 활동	- 재해구호 활동 - 불우이웃돕기 - 헌혈 및 골수기증 - 국제협력과 난민구호
환경·시설 보전 활동	- 깨끗한 환경 만들기 - 자연보호 - 문화재 보호
지역사회 개발 활동	- 지역실태조사 활동 - 지역사회 가꾸기 - 지역홍보 활동 - 지역행사 지원 활동
기타활동	* 앞서 언급한 7가지의 큰영역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봉사활동이 개발되면, 그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특히 학생봉사활동이 학교교급별, 성별, 연령 등에 따라 표준화 또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거나 교급에 따라 활동단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사고발생의 개연성은 수련활동 못지 않게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리고 각각의 활동영역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안전에 대한 사전조치로서 기본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혹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모든 발생 가능한 사고위험은 활동 그 자체에 항상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나 지각이 아직은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못하고, 동시에 호기심이 많으며, 다양한 상황에 부딪힌 경험의 부족, 다양한 상황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봉사활동 중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으로서는 일차적으로 해당 활동에 임하기 전에 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사전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고예방을 위한 청소년 각자의 노력과 주의는 물론, 필요한 장비나 준비물 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동시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대책으로서 사고원인을 규명하여 원인에 따른 적절한 보상책이 병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봉사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봉사활동 안전사고의 개연성을 확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지도자의 현장지도체제 미흡과 전문성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2.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교사의 입장

1) 교사집단의 일반적인 특성

본 조사에서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교사들의 의식과 사고 발생시 책임의 소재,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 장치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1차 집단으로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현재 봉사활동을 지도하고 있거나 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표집방법으로 1차집단인 학교교사 집단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선발되어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에서 '98년 7월 27일부터 동년 8월 7일까지 실시한 '학생봉사활동 지도교사 일반연수' 과정에 참여한 중·고등학교 교사 63명을 대상을 전수 조사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조사방법은 연수장소에서 조사표를 사전에 배부하고 다음 날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 회수결과 총 63명의 조사대상자 중 62명의 조사표를 유효처리·분석하였는데 교사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6>과 같다.

먼저 전체 교사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교사가 55명으로 88.7%를 차지하고, 여자교사는 상대적으로 7명(1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교사들의 연령 분포는 51세 - 60세가 41명으로 전체의 66.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31세 - 40세까지가 2명으로 3.2%에 불과하고, 실제로 봉사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37명(59.7%)으로 나타나고 있어 봉사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연령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입증하는 조사내용으로는 교사들의 경력에서도 알 수 있다. 예컨대 전체 교사 62명중 교사경력이 21년 이상 되는 교사가 55명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봉사활동 지도경험이 3년 이상 되는

교사가 18명(29%), 2년 이상 - 3년 미만인 12명(19.4%), 1년 이상 - 2년 미만이 6명(9.7%) 등으로 총36명이었고, 1년 미만이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26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교사경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21년 이상이 55명), 3년 이상 봉사활동 지도경력이 있는 교사는 18명(32%)에 불과했다.

〈표 6〉 교사집단의 일반적 특성

연령 성별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전 체	
남 자	2명(3.2%)	13명(24%)	37명(59.7%)	3명(4.8%)	55명(88.7%)	
여 자	-	3명(4.8%)	4명(6.5%)	-	7명(11.2%)	
전 체	2명(3.2%)	16명(25.8%)	41명(66.1%)	3명(4.8%)	62명(100%)	
교사경력	6-10년	11-15년	16-20년	21년이상	전 체	
남 자	2명(3.2%)	1명(1.6%)	4명(6.5%)	48명(77.4%)	55명(88.7%)	
여 자	-	-	-	7명(11.3%)	7명(11.2%)	
전 체	-	-	-	-	62명(100%)	
활동지도 경력	없다	6개월 미만	6개월 -1년	1년 -2년	2년 -3년	전 체
남 자	7명 (11.3%)	13명 (21%)	4명 (6.5%)	4명 (6.5%)	11명 (17.7%)	55명(88.7%)
여 자	1명 (1.6%)	-	1명 (1.6%)	2명 (3.2%)	1명 (1.6%)	7명(11.2%)
전 체	8명 (12.9%)	13명 (21%)	5명 (8.1%)	6명 (9.7%)	12명 (19.4%)	62명(100%)

다른 한편 이들 교사들이 재직 중에 있는 학교교급별 분포는 중학교가 32개교로서 51.6%를 차지하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16개교(25.8%), 실업계 고등학교가 10개교(16.1%), 특수 목적교 4개교(6.5%)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50%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소재지역으로는 대

도시 지역이 36개교(58.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지역이 각각 14개교(22.6%)와 12개교(19.4%)로 나타났다.

2) 학교에서의 봉사활동 운영형태

학교에서의 봉사활동 운영은 '학생 개개인에게 맡기는 형태'는 4명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 반면에 '학교교사가 주관하는 형태와 학생 개개인의 계획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형태가 38명(61.3%)으로 가장 많으며, '학교에서 교사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형태도 18명(29%)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봉사활동 운영에 대해 교사들의 현장지도는 '학교가 주관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지도'하는 경우가 33명(53.2%)으로 가장 많으며, 학교가 주관하는 경우나 학생들의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 한하여 현장지도하는 경우가 21명(33.9%)으로 나타나는 반면, 학생 개개인의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현장지도는 62명중 4명(6.5%)에 불과해 아직까지는 학교주관 봉사활동 현장지도에만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운영하려는 학교장이나 교사들의 의식에 기인하는 면이 없진 않으나 학교교사 외에 다양한 봉사활동 현장에서 지도할 자원봉사지도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한편, 지금까지 학교나 학급, 또는 학생 개개인의 계획에 의해 실시되었던 봉사활동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부가 「학생봉사활동의 이론과 실제」에서 제시한 활동내용을 보완·제시하여 다중 응답케 한 바, <표 7>에서와 같이 전체 활동내용 중 개별활동으로는 '학교내 봉사활동'이 전체 62명중 60명이 실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여 9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는 ‘학교주변 정화 캠페인 활동’이 52명으로 83.9%, ‘환경보존 캠페인 활동’이 47명으로 75.8%, 이외에 ‘복지시설 일손돕기 활동’과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봉사활동’이 각각 42명씩으로 67.7%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활동목적에 따른 분류체계상에서 살펴보면, 각 항목의 총 빈도 수를 기준으로 하여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을 순서대로 보면 ①일손돕기 활동(166명), ②자선구호활동(148명), ③캠페인활동(123명), ④위문활동(107명) ⑤환경시설보존활동(69명), ⑥지역사회개발 활동(57명), ⑦지도활동(51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활동영역내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봉사활동을 살펴보면, 일손돕기 활동 - ①학교내 봉사활동(60명, 96.%), 자선구호활동 - ②불우이웃돕기(41명, 66.1%), 캠페인활동 - ③학교주변 정화 캠페인 활동(52명, 83.9%), 위문활동 - ④양로원 위문(40명, 64.5%), 환경시설보존활동 - ⑤문화재 청소(31명, 50%), 지역사회개발활동 - ⑥지역사회 가꾸기(19명, 30.6%), 지도활동 - ⑦등하교 교통안전지도 등이 각각의 영역별 활동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였던 세부활동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이 대부분 학교내 또는 학교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학교와 관련되어 이루어진 봉사활동인 학교내 봉사활동과 학교주변 정화 캠페인 활동을 제외한다면, 환경보존 캠페인 활동이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으로 나타나고, 다음으로 복지시설 일손돕기 활동과 등·하교 교통안전지도활동, 불우이웃돕기 활동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봉사활동 참여형태는 그 동안의 학생봉사활동이 복지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느 정도 입증해주고 있으며, 동시에 학교나 학생들이 주로 학교내에서나 학교주변에서의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봉사활동영역별 참여하였던 활동

봉사활동영역(순위)	참여하였던 봉사활동	빈도(명)	유효퍼센트(%)
일손돕기 활동 (1순위)	농촌벼베기	12	19.4
	방역활동	2	3.2
	환자간병	13	21
	복지시설일손돕기	42	67.7
	공공기관내에 일손돕기	37	59.7
	학교내 봉사활동	60	96.8
위문활동 (4순위)	군부대 위문	4	6.5
	고아원 위문	32	51.6
	양로원 위문	40	64.5
	장애인 위문	22	35.5
	병약자 위문	9	14.5
지도활동 (7순위)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42	67.7
	일일방범지도활동	4	6.5
	사회교육지도	3	4.8
	수상안전요원	2	3.2
캠페인활동 (3순위)	공공질서확립 캠페인 활동	24	38.7
	환경보존 캠페인 활동	47	75.8
	학교주변 정화 캠페인 활동	52	83.9
자선구호 활동 (2순위)	장애인 봉사활동	22	35.5
	노인봉사활동	30	48.4
	보육아동돌보기	18	29.5
	재해구호	5	8.1
	불우이웃돕기	41	66.1
	헌혈	32	51.6
환경시설보존 활동 (5순위)	수질오염조사	3	4.8
	산림보호활동	11	17.7
	문화재 청소	31	50
	농약병 수거	8	12.9
	산불예방 감시원 활동	2	3.2
	퇴비닐 수거활동	14	22.6
지역사회개발 활동 (6순위)	지역실태조사	10	16.1
	지역사회가꾸기	19	30.6
	지역홍보	12	19.4
	지역행사지원	16	25.8

3) 안전사고 인지와 사전교육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교사들은 ‘항상 발생할 수 있다’와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경우가 각각 29명씩으로 나타나 사고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총 58명이 응답함으로써 전체의 93.6%라고 하는 높은 개연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러한 개연성 중에서도 특히 사고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는 활동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기재토록 한 바, 사고 위험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1순위 그룹에서는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활동’이 18명이 제시하여 19.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촌 벼베기 활동’이 7명(7.4%), ‘수상안전요원활동’이 4명(4.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 그룹에서도 역시 등하교 ‘교통안전지도활동’이 9명으로 9.6%로 나타나고, 다음이 ‘수상안전요원활동’으로 6명(6.4%), ‘산림보전활동’이 4명(4.3%)의 순으로 나타나고, 3순위 그룹에서는 ‘교통안전지도 활동’이 6명(6.4%), 그리고 ‘재해구호활동’과 ‘환경보존활동’ 역시 각각 6명씩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가지 활동이 동일한 비율을 보여 주었다

이들 각 순위별 활동들을 빈도에 따라 종합하여 보면, 전체 활동중 ‘교통안전지도활동’이 가장 위험한 활동으로 인지하고 있고, 두 번째가 ‘수상안전요원활동’, 세 번째가 ‘농촌 벼베기 활동’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결과 봉사활동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역규모와 특성에 관계없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의 교사가 봉사활동을 담당하고 있느냐, 하고있지 않느냐에 따라 사고 발생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봉사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경우, 전체 37명중 36명이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16명, 43%)와, ‘항상 발생할 수 있다’ (20명, 54%)라고 응답하여 97%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에, 봉사활동을 담당하지 않는 교사의 경우에는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가 25명중 13명(52%)이며, ‘항상 발생할 수 있다’가 9명(36%)으로 88%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봉사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 비해 사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발생이 비교적 크다고 생각되는 활동들에 대해 교사들의 사고 발생 개연성에 대한 견해는 봉사활동을 어디서 주관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가 주관하거나 학생 개개인의 계획과 병행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여 전체의 30.6%(19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동일 변인에서 ‘항상 발생할 수 있다’가 17명(27.4%)가 응답하여 전체적으로는 58%(36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사고는 ‘항상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8명(29.1%)로 나타나고 있어 대체로 학교를 통한 봉사활동의 경우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사고 발생 개연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봉사활동 주관형태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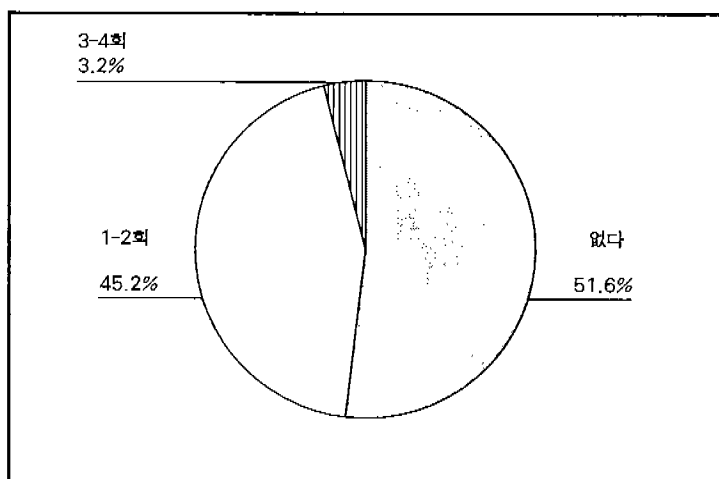
사고가능성 활동주관	항상 발생 할 수 있다.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전혀 발생않함	생각해본적 없음	전 체
학교에서 주관	12명 (19.4%)	6명 (9.7%)	-	-	18명 (29%)
학교교사주관과 학생개개인의 계획 병행실시	17명 (27.4%)	19명 (30.6%)	-	2명 (3.2%)	38명 (61.3%)
학생개개인의 계획에 맡김	-	3명 (4.8%)	1명 (1.6%)	-	4명 (6.5%)
기 타	-	1명 (1.6%)	-	1명 (1.6%)	2명 (3.2%)
전 체	29명 (46.8%)	29명 (46.8%)	1명 (1.6%)	3명 (4.8%)	62명 (100%)

한편, 이러한 위험 활동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실제 학교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들이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나', '필요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라고 응답하여 나름대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54명, 87.1%), 반면에 '실시하지 않고 있다' 와 '실시여부를 잘 모른다' 가 8명으로 12.9%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볼 때, 대부분의 학교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학교교사가 사고 발생에 대한 개연성의 정도를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는지가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전교육 실시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항상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응답한 경우 '안전사고 대비 사전교육을 실시' 하고 있거나(19명, 30.6%), '필요에 따라 실시' 하는 경우(10명, 16.1%)가 33명으로 전체의 53.2%를 차지하고 있어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경우(6명, 9.7%)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고발생 개연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전교육 실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면 실제로 봉사활동 중에 학생 본인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가 있었는지(보거나 들었는지)의 여부를 살펴 본 결과 [그림 1]에서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보거나 들은 적이 없는 경우가 32명으로 전체의 51.6%를 차지하고 있고, 적게는 1 - 2회의 경험에 있는 경우가 28명으로 45.2%로 나타나고 있으며, 3 - 4회도 2명(3.2%)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고 경험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 경우가 30명으로 48.4%를 사고발생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봉사활동전에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경험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에 대한 원인이 규명되어야 한다. 이의 원인에 대한 주관적 견해는 학교가 주관하는 봉사활동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교사의 현장지도가 없는 학생 개개인의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시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또한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 역시 사고 예방차원의 교육이 아니거나 실제 활동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이 아닌 소양교육정도의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상정해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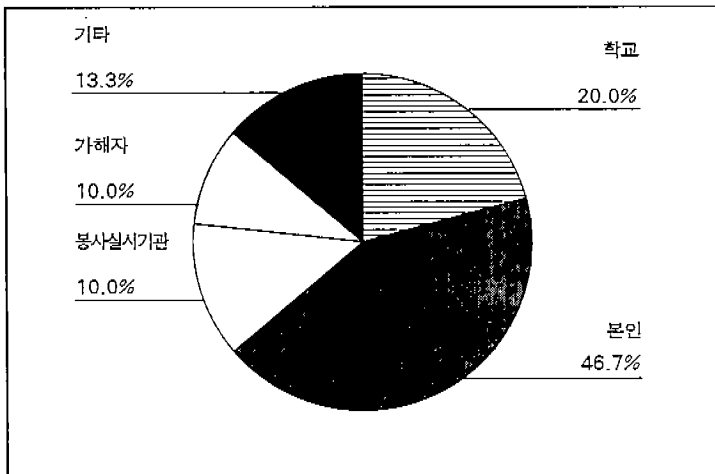
(그림 1) 봉사활동시 본인 및 주변인의 사고경험유무

4)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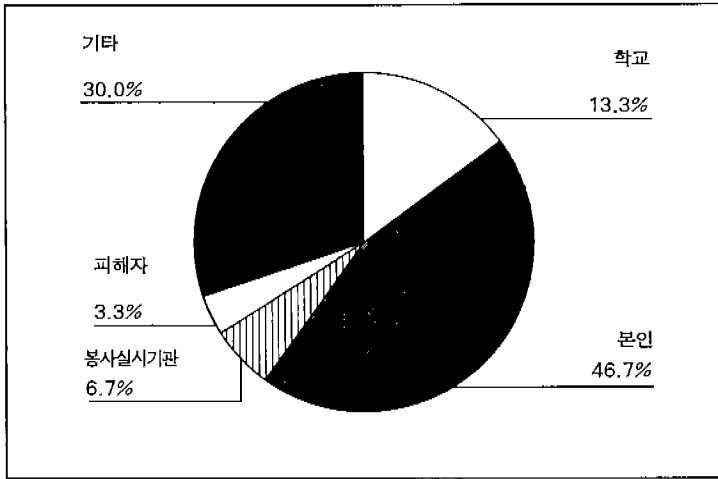
봉사활동 중 위의 사고발생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학생 본인이 다쳤을 경우 그 피해보상을 누가 하였느냐에 대해서는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총 응답자 30명중 사고를 당한 학생 본인 스스로가 해결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14명으로 전체의 46.7%를 차지하였고, 학교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를 6명이 응답하여 20%를, 봉사를 실시했던 기관이 보상한 경우와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보상하는 경우가 각각

3명으로 1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사고를 당한 학생 본인 스스로가 해결한 경우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학교나 봉사실시기관이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도 30%나 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학생 본인이 봉사활동 중에 다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학교나 봉사실시기관에서 사고 책임을 가지고 경제적 비용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봉사활동 중에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사람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 그 피해보상책임을 누가 져는가에 대해서는, [그림 3]에서 처럼 피해를 입힌 학생 본인이 피해보상의 책임을 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14명이 응답하여 46.7%를 보였고, 학교가 대신 피해보상을 한 경우가 4명으로 13.3%를, 봉사를 실시한 기관이 피해보상을 한 경우가 2명으로 6.7%를 나타내고 있어 학생 본인이 봉사활동 중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학생 스스로가 해결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그림 2] 봉사자 자신이 사고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책임



[그림 3] 봉사자가 타인에게 입힌 피해보상책임

역시 가해자가 되어 피해보상을 책임지는 경우가 동일한 비율을 보여 주고 있어 학생이 가해자가 되든, 피해자가 되든 그 책임은 학생이 해결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의 교과활동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처리 비용 확보를 위해 조성하고 있는 현행 각급학교의 안전공제기금이 어떻게 마련되고, 어떠한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지 교사들을 대상으로 알아 보았다.

〈표 9〉에서 처럼 학교에서의 안전공제기금 조성방법으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금마련을 위해 현금으로 납부받고 있다고 하는 경우가 전체 62명중 23명(37.1%)으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고, 다음이 학교운영기금에서 안전공제기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22명(35.5%)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학생들이 수집한 폐지나 수거한 빈병을 판(25.8%) 판매대금을 안전공제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상에 비추어 볼 때, 안전공제기금을 대부분 학생들이 현금으로 부담한다든지, 학생들의 노력에 의해 마련(63%)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안전공제 기금조성방법

안전공제기금의 조성방법	빈도	유효 퍼센트
학생들이 현금으로 납부	23	37.1
학교운영기금에서 충당	22	35.5
학생들이 수집한 폐지나 빈병수거	16	25.8
기타	1	1.6
합계	62	100.0

그렇다면 이러한 안전공제기금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0〉은 학생들이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기금의 혜택범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교 밖 수련활동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5명(전체의 40.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교 밖 단체활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22명으로 35.5%, 세번째가 학교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이 20명으로서 32.3%의 순으로 나타나며,

〈표 10〉 안전공제 기금 혜택의 범위

안전공제 기금의 혜택범위	혜 택	
	빈도	퍼센트
교내 활동	62	100.0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교밖 봉사활동	20	32.3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교밖 수련활동	25	40.3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교밖 청소년 단체활동	22	35.5
학생개개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봉사활동	2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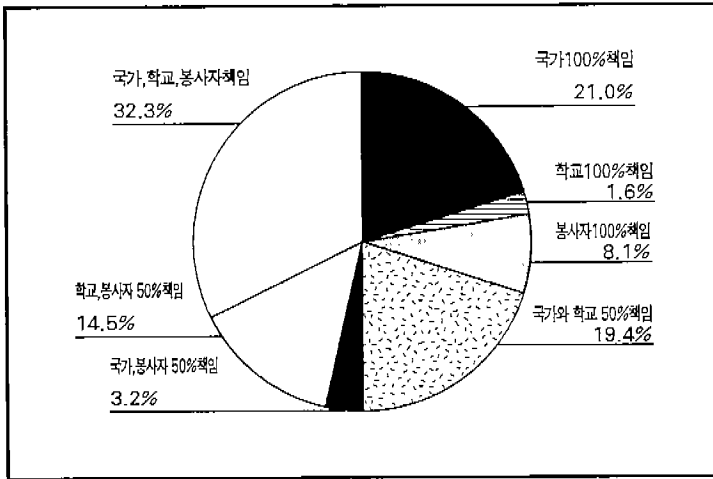
반면에 학생 개개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

에는 안전공제기금의 혜택이 거의 제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 봉사활동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고의 유형으로는 봉사를 하는 학생자신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아 전체의 47명으로 78.3%를 나타내고 있고, 봉사를 받는 사람의 신체적 피해가 6명(10%),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상호간의 상해사고가 5명(8.3%)로 나타났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자신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지배적 견해를 알 수 있다.

5)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와 안전보험

위의 조사에서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 경우에 대해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 보상을 누가 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었다. 그러나 이의 응답내용과는 달리, 실제 사고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만약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입힌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와 자원봉사자가 50%씩의 책임을 공유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국가가 100%책임져야 한다는 응답한 경우가 13명으로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국가와 학교에 각각 50%씩의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2명으로 19.4%를, 학교와 봉사자가 각각 50%씩의 책임이 있다가 9명(14.5%)으로 나타나는 반면, 봉사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5명(8.1%), 학교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1명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21%)라는 응답을 포함하여 어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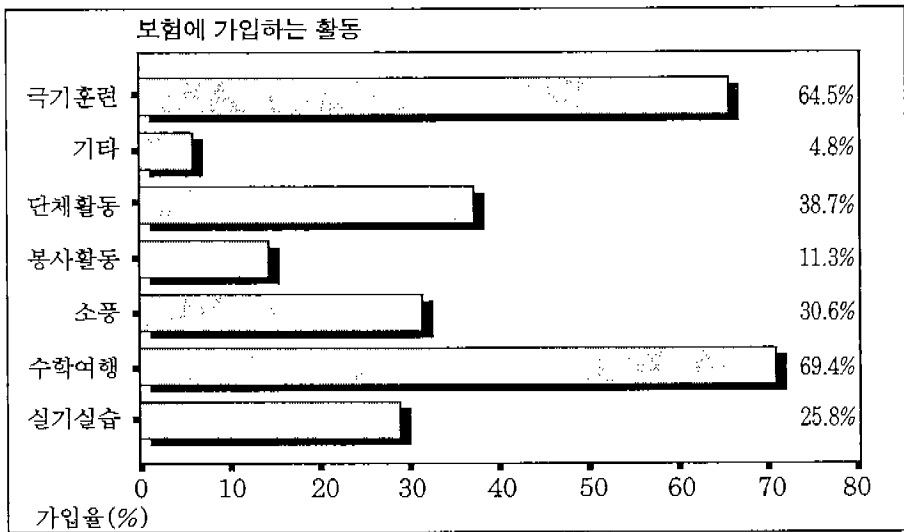


[그림 4] 봉사활동 사고의 책임소재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총 75.9%에 달하고 있다([그림4] 참조). 따라서 학생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학생의 부주의로 학생 스스로가 당한 사고이든, 타인에게 입힌 신체적 피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이든 간에 국가의 피해보상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고발생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장치로서 어떠한 경우에 학생들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그림 5]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교과외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 중 교사들이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조치로서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있는 활동을 복수로 응답하게 한 바, 가장 많이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활동으로는 수학여행으로 응답하였고(43명, 69.4%), 다음으로 극기훈련(수련활동)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0명으로 64.5%를, 청소년 단체활동이 24명으로 38.7% 등으로 나타난 반면, 봉사활동의 경우 7명(11.3%)에 불과해 다른 여타의 활동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학여행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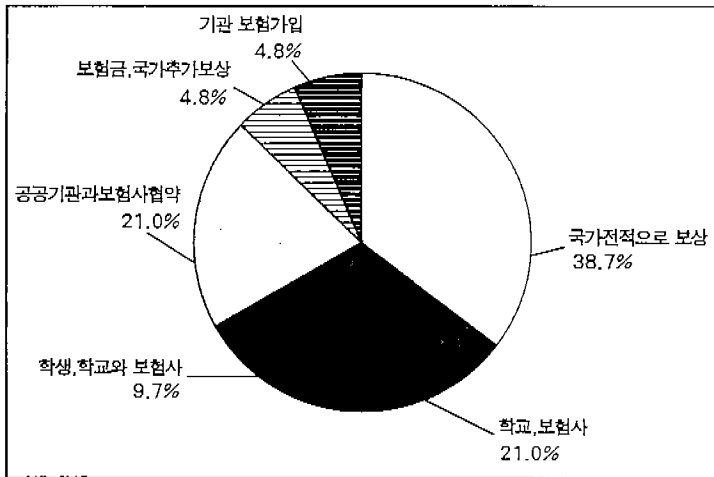
극기훈련의 경우 반드시 교사가 인솔하여야 하는데서 오는 사고위험 부담감이 작용하는 반면, 봉사활동의 경우, 앞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58명, 93.6%)하면서도 대부분이 학생 개개인의 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고,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역시 국가에게 있다고 생각한데서 나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림 5) 보험에 가입하는 활동

이와 관련하여 학생봉사활동에 수반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장치로서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에 대해서는 [그림 6]에서와 같이 국가가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하는 형태를 24명이 응답하여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다음이 학교재정으로 보험가입비를 일괄 부담하여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사고발생시 보험회사가 이를 보상하는 형태와 이와는 달리, 학생이 보험가입비를 부담하되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 공공기관이 보험회사와 협약하여 학생부담은 최소로 하고, 보험금을 보험회사

가 부담하는 형태가 각각 13명으로 21%씩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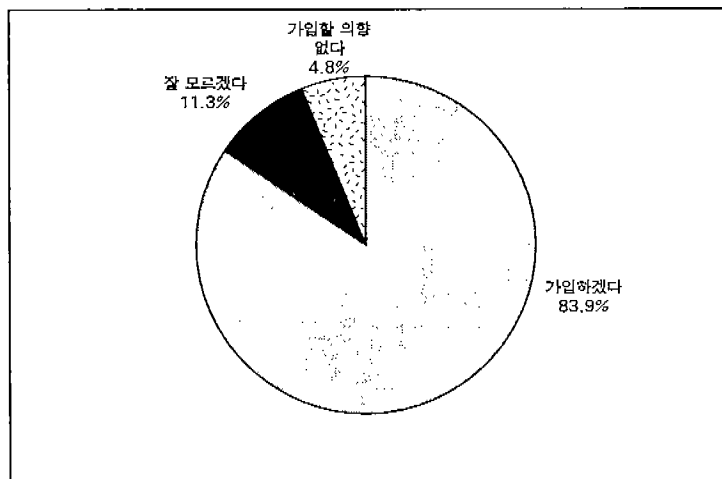
(그림 6) 바람직한 청소년자원봉사보험의 운영형태

이외에 학생이 부담하고 학교가 보험사와 계약하는 형태가 6명(9.7%), 학생이 보험가입비를 부담하고 사고발생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액 외에 국가나 공공기관이 추가로 더 보상하는 형태, 봉사실시기관에서 보험가입비를 부담하고 사고발생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각각 3명으로 4.8%씩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면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도입되어야 할 제도의 형태는 국가가 전적으로 보험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형태와 학생이 보험가입비를 부담하되 공공기관이 보험사와 협약하여 가입비용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보험운영제도에 대하여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로는, 학생봉사활동시 사고 발생에 대비하는 보험제도는 '국가가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발생시 국가가 보상' 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농촌이나 중·소도시 지역에서보다는 대도시 지역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반해 농촌지역의 경우, '학교나 학생이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발생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14명중 10명(71%)이 응답하여 보험제도 운영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중·소도시 지역의 경우, '국가가 보험에 가입하고 국가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와 '학생이 보험가입비를 부담하되 공공기관이 보험사와 협약하여 보험가입비를 최소화'하는 형태를 각각 4명과 5명이 응답하여 입장이 다소 양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학생이 보험에 가입하되 보험금지급시 공공기관이나 국가가 보험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방안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상기의 형태로 봉사활동보험이 운영되고 보험가입대상이 학생 및 현장지도자까지 적용된다고 할 때 교사의 경우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림 7] 에서와 같이 가입하겠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 응답자중 52명으로 83.9%를 차지하고 있고, 가입할 의향이 없는 경우는 3명(4.8%)에 불과한데, 이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본인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고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교사의 자원봉사보험 가입의향

여기서 보험가입 의사에 대해 봉사활동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담당하고 있지 않은 교사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봉사활동을 담당하는 교사의 경우, '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가 37명중 31명으로 83%가 가입 의사가 있고, 담당하고 있지 않은 교사들의 경우도 25명중 21명으로 84%가 '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고 있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모두 '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52명, 84%)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보험운영에 대한 가입비와 보험금 최고 보상액에 대하여 일본의 자원봉사보험, 국내의 몇몇 자원봉사 보험상품에서 제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52명)에 한하여 가입비와 최고 보상액을 제시한 조사결과 가입비보다는 보상액의 액수에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정 보험 가입비와 최고 보상액에 대해서 일본의 자원봉사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간 보험가입비는 3,000원 - 최고 보상액은 8,000만원을 응답한 경우가 48.1%(2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국내의 자원봉사 보험상품에서 나타나고 있는 연간 보험가입비 2,000원 - 최고 보상액은 5,000만원으로 36.5%(19명)이며, 연간 보험가입비 900원 - 최고보상액 500만원이 9.6%(5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체로 보험가입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해 주기를 바라는 반면에 높은 보상액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봉사활동 안전사고에 대한 학부모의 입장

1) 학부모 집단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에서는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안전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비교집단으로서 학부모들을 선정하였다. 학부모 집단에 대한 조사내용으로는 교사집단에서 다룬 주요 변인들과 대체로 동일하게 다루면서 다만,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현행의 학생봉사활동 운영에 대한 문제도출, 자녀들의 봉사활동시 사고발생 경험유무와 피해보상 책임의 소재, 보험제도의 운영형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학부모 집단의 표본 수는 교사집단의 표본 수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는데, 예컨대 지역별 교사 표본수 만큼 학부모 표본을 적용하였다. 교사집단에서는 총 63명 중 62명의 조사표를 유효처리·분석한 반면, 학부모 집단에서는 조사과정에서 1명이 추가되어 64명의 조사표를 유효처리·분석하였다. 조사기간은 교사집단의 조사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조사대상자 선정은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학부모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1>과 같다.

먼저 조사에 참여한 학부모들의 성별 분포를 보면 총 64명중 남자가 26명으로 40.4%이고, 여자의 경우는 38명으로 59.6%로 여자가 다소 많으며, 학부모의 연령은 40대가 67.2%로 가장 많고, 다음이 50대로서 13명(20.3%), 30대가 8명으로 12.5%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학부모들의 교육수준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21명(32.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자가 20명(31.3%), 중학교 졸업자가 15명

(23.4%), 대학원 졸업자가 7명(10.9%)이고, 초등학교는 1명에 불과해 대체로 높은 학력을 보여주고 있다. 학부모 집단의 특성으로는 성별로는 여자 응답자가 많으며, 고등학교 졸업자가 23.4%로 가장 많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고, 이중 대학교 졸업자가 전체 학부모 64명중 14명으로 21.8%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 11〉 학부모 집단의 일반적 특성

성별 \ 학력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이상	전 체
남 자	-	5명 (7.8%)	5명 (7.8%)	10명 (15.6%)	6명 (9.4%)	26명 (40.6%)
여 자	1명 (1.6%)	10명 (15.6%)	15명 (23.4%)	11명 (17.2%)	1명 (1.6%)	38명 (59.4%)
전 체	1명 (1.6%)	15명 (23.4%)	20명 (31.3%)	21명 (32.8%)	7명 (10.9%)	64명 (100%)
연령 \ 학력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이상	전 체
30대	-	-	4명 (6.3%)	3명 (4.7%)	1명 (1.6%)	8명 (12.5%)
40대	1명 (1.6%)	11명 (17.2%)	12명 (18.8%)	14명 (21.9%)	5명 (7.8%)	43명 (67.2%)
50대		4명 (6.3%)	4명 (6.3%)	4명 (6.3%)	1명 (1.6%)	13명 (20.3%)
전 체	1명 (1.6%)	15명 (23.4%)	20명 (31.3%)	21명 (32.8%)	7명 (10.9%)	64명 (100%)

또 다른 특성으로는 학부모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소재지는 교사집단에서와는 달리 농촌지역 소재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조사대상지역 선정과 관련되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광역시에 소재 하거나 도청 소재지에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들 조사대상 학부모 집단의 총 자녀수는 137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부모 1인당 평균 자녀수는 2.14명이며, 자녀들의 교급은 전체 137명중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41명으로 가장 많아 30%를 차지하

였고, 다음이 인문계 고등학교가 33명으로 24%, 초등학교가 27명 (19.7%), 대학교가 21명으로 15.3%로 나타나고 있다.

2) 자녀의 봉사활동 참여방법과 내용

우선 학부모의 자녀들이 어떠한 경로와 형태로 봉사활동에 참가하였는가를 보면,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참여' 한다가 25명으로 39.1%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학생 스스로가 봉사활동 기관을 찾아가서 활동에 참여' 한다가 18명으로 28.1%를 나타내고 있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에 참여' 하는 경우가 17명(26.6%), '학생들이 조직한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참여' 한다가 3명(4.7%)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센터를 통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표가 센터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배포한 방법에서 기인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센터를 제외한다면 학생 스스로가 봉사활동 기관을 찾아가서 활동에 참여하는 형태와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형태가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보다는 센터나 학생 스스로가 봉사활동기관을 찾아가서 활동에 참여하는 형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실시하는 형태가 총 46명으로 72%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이 학교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 참여보다는 학교가 개입하지 않은 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자녀들이 참여하였던 봉사활동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앞서 교사집단에서 학교나 학생 개개인의 계획에 의해 실시되었던 봉사활동내용을 동일하게 학부모들에게 제시하여 다중 응답하게 한 결과, 전체 활동내용 중 개별활동으로는 '학교내 봉사활동'이 전체 64명중 53명이 참

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여 82%로 가장 높은 참여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공공기관내에 일손돕기 활동’이 40명으로 62%를 나타내고 있고, ‘복지시설 일손돕기 활동’이 33명(51%), ‘학교주변 정화 캠페인 활동’이 24명(37%), ‘환경보존 캠페인 활동’이 23명(35%)이며, 이외에 ‘장애인 봉사활동’과 ‘장애인 위문활동’이 각각 18명으로 28%씩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학교내 봉사활동’이 학교교사의 응답에서나 학부모의 응답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사집단에서와는 달리 학부모 집단에서의 자녀들의 봉사활동 참여내용은 공공기관내에 일손돕기 활동이나 복지시설 일손돕기 활동이 많이 나타나고, 특히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2> 참조).

〈표 12〉 봉사활동 영역별 참여하였던 활동

봉사활동영역(순위)	참여하였던 봉사활동	빈도(명)	퍼센트(%)
일손돕기 활동 (1순위)	농촌벼베기	1	1.6
	방역활동	0	0
	환자간병	2	3.1
	복지시설일손돕기	33	51.6
	공공기관내에 일손돕기	40	62.5
	학교내 봉사활동	53	82.8
위문활동 (4순위)	군부대 위문	1	1.6
	고아원 위문	12	18.8
	양로원 위문	17	26.6
	장애인 위문	18	28.1
	병약자 위문	3	4.7
지도활동 (7순위)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11	17.2
	일일방법지도활동	0	0
	사회교육지도	2	3.1
	수상안전요원	0	0
캠페인활동 (3순위)	공공질서확립 캠페인 활동	10	15.6
	환경보존 캠페인 활동	23	35.9
	학교주변 정화 캠페인 활동	24	37.5
자선구호 활동 (2순위)	장애인 봉사활동	18	28.1
	노인봉사활동	13	20.3
	보육아동돌보기	10	15.6
	재해구호	0	0
	불우이웃돕기	10	15.6
	헌혈	12	18.8
환경시설보존 활동 (5순위)	수질오염조사	2	3.1
	산림보호활동	2	3.1
	문화재 청소	18	29
	농약병 수거	0	0
	산불예방 감시원 활동	1	1.6
	퇴비닐 수거활동	2	3.1
지역사회개발 활동 (6순위)	지역실태조사	5	7.9
	지역사회가꾸기	11	17.5
	지역홍보	1	1.6
	지역행사지원	6	9.5

학생들이 참여한 활동들을 활동목적에 따른 분류체계상에서 살펴보면, 교사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항목의 총 빈도수를 기준으로 할 때,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을 순서대로 보면 ①일손돕기 활동(129명), ②자선구호 활동(63명), ③캠페인활동(57명), ④위문활동(51명), ⑤환경시설보존활동(25명), ⑥지역사회개발 활동(23명), ⑦지도활동(1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위는 교사집단에서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우연하게도 우선 순위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치된 활동순위는 학생봉사활동의 일반화된 경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다시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손돕기 활동 - ①학교내 봉사활동(53명, 82.8%), 자선구호활동 - ②장애인봉사활동(18명, 28.1%), 캠페인활동 - ③학교주변 정화 캠페인 활동(24명, 37.5%), 위문활동 - ④장애인 위문(18명, 28.1%), 환경시설보존활동 - ⑤문화재 청소(18명, 28.1%), 지역사회개발활동 - ⑥지역사회 가꾸기(11명, 17.2%), 지도활동 - ⑦등하교 교통안전지도(11명, 17.2%) 등이 각각의 항목별 활동에서 주로 실시되었던 세부활동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들이 참여한 봉사활동내용을 지역과 연관시켜 보았을 때 학교내 봉사활동과 학교주변 정화캠페인 활동, 즉 학교와 학교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대도시 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중·소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3) 학부모가 보는 봉사활동 문제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봉사활동에 대하여 학부모들은 어떠한 점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우선 봉사활동 문제점들을 총 6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이를 응답항목으로 제시, 우선순위

별로 번호를 기입하게 하였던 바, 총 6개 순위 그룹 중 1순위 그룹에서는 학생봉사활동이 '대부분 시간 떼우기식, 형식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다'가 무응답을 제외한 62명중 32명이 지적하여 학생봉사활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다음 2순위 그룹에서는 '봉사활동 기관에서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원하지 않는다'로 61명중 16명(26.2%)가 지적하였고, 3순위 그룹에서는 '봉사활동 기관에서 단순한 노동력만을 요구한다'로 58명중 18명(29.5%)으로, 4순위 그룹에서는 '봉사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로 57명중 14명(24.6), 5순위 그룹에서는 '봉사활동을 위한 사전교육이 부족하다'로 57명중 15명(26.3%)이 지적하였으며, 마지막 6순위 그룹에서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지가 부족하다'로 57명중 31명이 지적하여 54.4%의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1순위 그룹에서 '대부분 시간 떼우기식, 형식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다'의 항목은 2순위 그룹에서도 두 번째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3순위 그룹에서부터는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고, 1순위 그룹에서 비교적 낮은 빈도를 보인 '봉사활동 기관에서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원하지 않는다'의 항목은 순위가 낮아짐에 따라 각 순위 내에서의 빈도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3〉 참조).

한편 이러한 문제점들이 봉사활동을 어디서 주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자녀들의 봉사활동 참여형태에 따른 문제점들 살펴 보았다. '대부분의 활동이 형식적이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있어서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인 경우가 많고, '학부모들의 지지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있어서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경우와 학생들이 스스로 봉사기관을 찾아가서 하는 경우에서 두드러지게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봉사활동 실시형태에 따른 문제점

문제점 실시형태	대부분의 활동이 형식적이다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원하지 않는다	단순 노동력만을 요구한다	안전사고 대비책이 없다	봉사활동 사전교육이 부족하다	학부모들의 지지가 부족하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에 참여	9명 (14.5%)	3명 (4.9%)	3명 (4.9%)	6명 (10.5%)	3명 (5.3%)	7명 (12.3%)
봉사활동 동아리를 통해 참여	1명 (1.6%)	-	1명 (1.6%)	1명 (1.8%)	-	-
스스로 봉사기관을 찾아가서 참여	8명 (12.9%)	6명 (9.8%)	5명 (8.2%)	3명 (5.3%)	5명 (8.8%)	12명 (21.1%)
청소년자원 봉사센터를 통해 참여	14명 (22.6%)	7명 (11.5%)	9명 (14.8%)	4명 (7%)	7명 (12.3%)	12명 (21.1%)
전 제	32명 (51.6%)	16명 (26.2%)	18명 (29.5%)	14명 (24.6%)	15명 (26.3%)	31명 (54.4%)

4) 안전사고에 대한 학부모의 입장

자녀들이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서 학부모들은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경우가 총 64명중 34명으로 53.1%의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항상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19명으로 29.7%의 비율을 나타내 학부모들의 경우 봉사활동중 사고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총 53명이 응답함으로써 83%라고 하는 비교적 높은 사고 발생 개연성을 인지하고 있다.

한편 어떠한 활동에서 특히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고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사고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는 활동을 우선 순위

를 부여하여 기재토록 한 바, 사고 위험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1순위 그룹의 활동으로는 '농촌 벼베기 활동'이 가장 높고, 다음이 '교통안전지도 활동' 세 번째가 '수상안전요원활동'의 순으로 나타났고, 2순위 그룹에서는 '산림보호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다음이 '농촌 벼베기' · '농약병 수거' · '재해구호' · '일일방법 활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 그룹에서는 '재해구호 활동', 다음이 '수상안전요원활동', 그리고 '교통안전지도' · '농약병 수거' · '환자간병' · '일일방법 활동'의 순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이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고 생각되는 활동으로 '농촌 벼베기 활동'이나 '산림보호활동', '농약병 수거활동' 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자녀들이 농촌지역에서의 생활경험이 비교적 없다고 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나타난 각 순위 그룹별 사고 발생율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활동들을 빈도에 따라 종합하여 보면 '교통안전지도 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이 '수상안전요원활동', 그리고 '농촌 벼베기 활동'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활동들을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규모에 따라 분석한 조사결과가 있는데, 우선 사고발생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1순위 그룹에서의 활동에서는 대도시 지역의 경우에서 '농촌 벼베기 활동'이 단연 높아서 35명중 11명이 응답하여 31.4%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이 '교통안전지도 활동'으로 17.1%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촌 벼베기 활동'은 중소도시 지역의 경우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22명중 7명으로 31.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이 '교통안전지도활동'으로 13.6%를 보이고 있어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1순위 그룹의 활동에서는 지역구분없이 '농촌 벼베기활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고발생율이 높다고 생각하는 2순위 그룹의 활동 중에서는, 대도시 지역의 경우 '재해구호활동'을 32명중 5

명이 응답하여 15.6%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중소도시 지역의 경우 ‘농약 병 수거활동’을 20명중 4명이 응답하여 20%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고 위험 3순위 활동에서는 대도시 지역의 경우 ‘농약병 수거활동’이 27명중 4명이 응답하여 14.8%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에서는 ‘재해 구호활동’이 22명중 4명이 응답, 18.1%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상기와 같은 사고 위험이 크다고 생각되는 봉사활동이 자녀들에게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참여시키겠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참여시킨다’와 ‘자녀의 의사를 전적으로 따른다’가 각각 23명으로 35.9%씩의 비율을 보였다. 이와는 반대로 ‘참여시키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9명으로 14.1%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비록 사고 위험이 크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을 참여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참여시키겠다고 하여 전체의 71.8%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사고발생율이 높다고 생각되는 활동을 어디서 실시하느냐에 따라 참여시키는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활동이라도 ‘참여시키겠다’가 가장 많이 나타나 총 17명중 9명으로 52.9%의 비율을 보였으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인데 25명중 10명이 응답하여 4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참여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모든 형태의 봉사활동의 주관처에 고루 나타나고 있어 활동주관처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고 단순히 학부모의 불안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5) 사고경험과 피해보상

그렇다면 실제로 봉사활동 중에 자녀 혹은 이웃 자녀들이 다친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형태로 피해보상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나 이웃 자녀가 학생봉사활동 중에 다치거나, 다른 사람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가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없었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64명중 60명으로 93.8%의 비율을 보이는 반면, ‘1-2회 있었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4명(6.2%)에 불과해, 자신의 자녀는 물론 이웃 자녀들이 봉사활동으로 인한 인적, 물적 사고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봉사활동 중 사고경험이 있거나 들은 적이 있는 경우가 비록 4명(6.3%)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을 주관하거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참여 형태에 따른 사고 경험 여부를 살펴 보았다.

〈표 14〉에서 처럼 ‘학생이 스스로 봉사활동기관을 찾아서’ 봉사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 2명으로 나타났고(4명중 2명, 50%), 학교에서 실시하는 경우에서가 1명,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생들의 동아리를 통해서 참여한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아리를 통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

〈표 14〉 봉사활동 주관형태와 사고 경험

참여형태	사고경험 없다.	사고경험	전 체
대부분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에 참여	16명 (25%)	1명 (1.6%)	17명 (26.6%)
학생들의 봉사활동 동아리를 통해 참여	3명 (4.7%)	-	3명 (4.7%)
학생 스스로 봉사활동 기관을 찾아가서	16명 (25%)	2명 (3.1%)	18명 (28.1%)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	24명(37.5%)	1명 (1.6%)	25명 (39.1%)
기 타	1명 (1.6%)	-	1명 (1.6%)
전 체	60명 (93.8%)	4명 (6.2%)	64명 (100%)

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적은 빈도에서 오는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학생 스스로 봉사활동 기관을 찾아가서 봉사활동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사고발생율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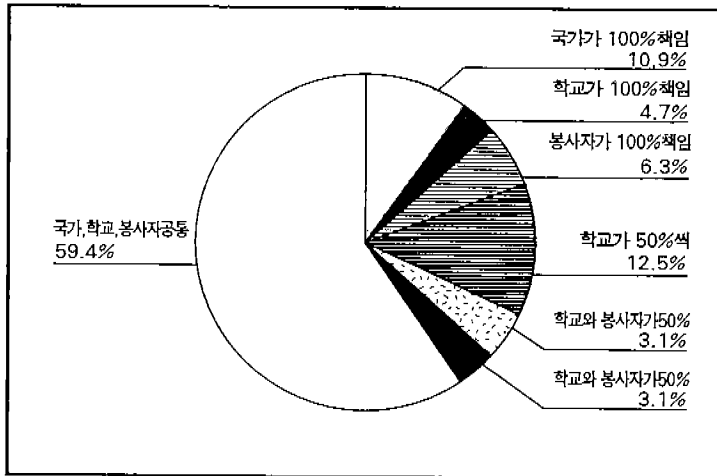
한편 자녀들이 입은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사고경험이 있었다’라고 응답한 학부모 4명의 경우, ‘자녀가 입은 피해보상을 자녀(학부모)가 해결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2명(50%), 봉사를 실시했던 기관에서 피해보상을 한 경우와 가해자가 보상한 경우가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자녀가 다른 사람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는 가해자가 되는 자녀가 보상한 경우가 1명, 봉사를 실시했던 기관에서 보상하는 경우가 2명으로 나타났다. 달리 표현하면, 비록 사고 발생 건수가 적었다고 하지만 위의 두 가지 경우 모두 학교는 개입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봉사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중 어떠한 형태가 가장 심각한가에 대한 물음에 ‘봉사를 하는 학생 자신의 신체적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7명으로 73.4%에 달하였고, 다음이 ‘봉사를 받는 사람의 신체적 피해’를 10명이 응답하여 15.6%로 나타났으며, ‘봉사학생들간의 상해사고’가 4명(6.3%), ‘봉사기관내에서의 재산상의 피해’가 3명(4.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봉사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사고는 봉사자 자신의 신체적 피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6)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와 안전보험

지금까지의 조사내용을 통하여 봉사활동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는 교사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학부모들 역시 비교적 높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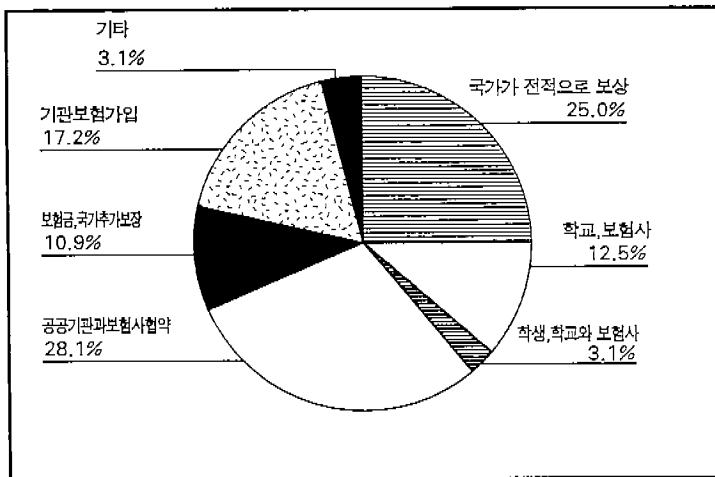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고가 실제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교사집단에서와 같이 순위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림 8]에서와 같이 빈도에 있어서는 국가와, 학교, 그리고 봉사자가 공통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8명으로 59.4%를 차지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국가와 학교에 50%씩의 책임이 있다고 8명(12.5%)이 응답하였고, 국가가 100%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7명(10.9%), 봉사자가 100%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4명(6.3%), 학교가 100%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3명(4.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봉사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많은 부분 국가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봉사활동사고의 책임소재

이러한 봉사활동 사고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서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그림 9]에서와 같이 '학생이 보험가입비를 부담하되,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 공공기관이 보험회사와 협약하여 학생부담을 최소로 하고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지급' 하는 형태를 18명이 응답하여 28.1%가 이의 형태를 선호하고 있고, 다음이 '국가가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 하는 형태를 16명이 응답하여 25%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이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해당기관에서 보험가입비를 부담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부담하는 형태'로 11명(17.2%)이 응답하였고, '학교재정으로 보험가입비를 일괄 부담하여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사고발생시 보험회사가 이를 보상하는 형태'가 8명(12.5%), '학생이 보험가입비를 부담하되 사고발생시 보험회사의 보험금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추가하여 보상하는 형태'가 7명(10.9%) 등의 순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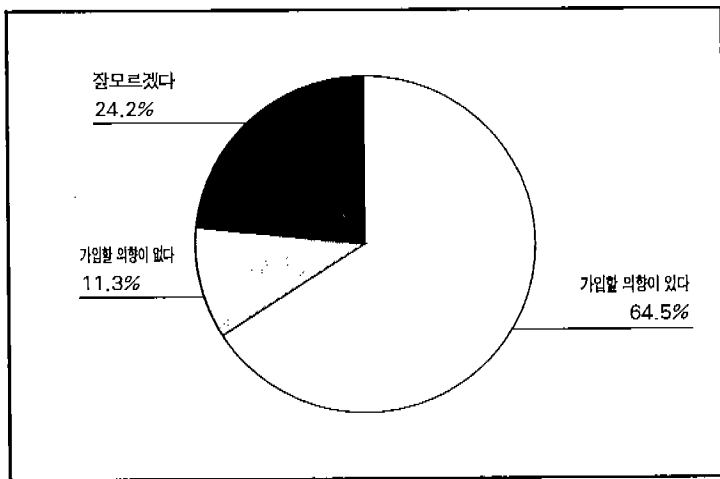


[그림 9] 보험의 운영형태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학부모의 경우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도입되어

야 할 보험제도의 형태는 보험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적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거나 국가가 전적으로 보험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형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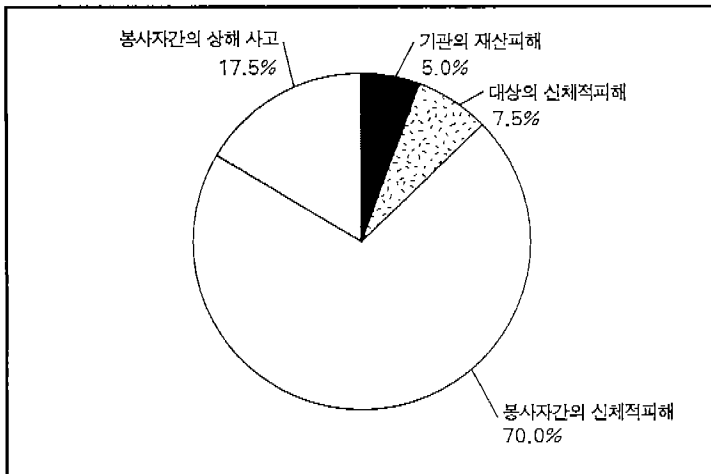
한편, 상기의 형태로 봉사활동보험이 운영된다고 할 때, 자녀의 안전을 위해 학생봉사활동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림 10] 에서와 같이 ‘가입하겠다’ 라고 응답한 학부모가 전체 응답자 64명중 40명으로 64.5%를 차지하고 있고, 가입할 의향이 없는 경우가 7명 11.9%로 나타나는 반면,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5명이나 되어 24.2%나 되고 있다.



[그림 10] 학부모의 학생봉사활동보험 가입의향

이러한 보험가입의향을 결정하는데 작용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서 [그림 11]에서 처럼 ‘봉사하는 학생 자신의 피해보상을 위해서 가입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고(40명중 28명, 70%), ‘봉사자간 상해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40명중 7명이 응답함으로써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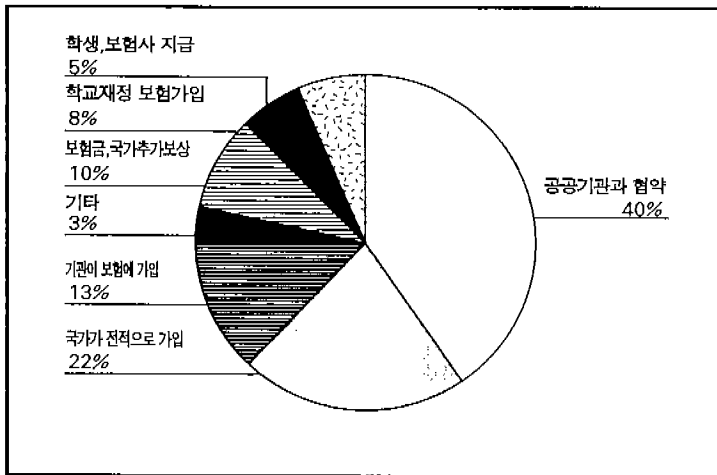
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봉사하는 학생이 '타인에게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비' 하기 위하여 가입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아 각각 7.5%, 5.0%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학부모들이 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봉사활동 중 사고의 심각성에서도 나타나듯이 대부분 봉사자 자신의 피해보상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 보험가입을 결정한 요인

보험가입의향이 있는 학부모의 경우, 자원봉사보험이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선호하는지 살펴보았다.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형태로는 '학생이 보험가입비를 부담하되,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 공공기관이 보험회사와 협약하여 학생부담을 최소로 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지급' 하는 형태에 40명중 16명이 응답하여 4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다음이 '국가가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 하는 형태에 선호하여 40명중 9명이 응답함으로써 보험에

가입할 의향은 있으나 국가가 가입하여야 한다는 형태이며, 다음이 ‘학생들이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해당기관에서 보험가입비를 부담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이를 부담하는 형태’를 40명중 5명이 지적하여 12.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학부모들이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으나 가능한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거나, 보험가입의 책임을 국가나 봉사기관에서 가입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2] 참조).



[그림 12] 선호하는 보험의 운영형태

한편, 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경우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앞의 교사 집단에서 제시하였던 적정 가입비와 최고 보상액을 동일한 방법으로 제시하여 조사한 결과, 연간 보험가입비는 3,000원 - 최고 보상액은 8,000만원을 응답한 경우가 40%(1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연간 보험가입비 2,000원 - 최고 보상액은 5,000만원으로 35%(14명)이며, 연간 보험가입비 900원 - 최고보상액 500만원이 7.5%(7명)로 나타나고 있어 학부

모 집단에서도 대체로 보험가입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느끼지 않은 반면 높은 보상액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는 달리 '가입할 의사가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학생봉사활동이 교육부의 방침에 의해 타율적으로 운영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국가(교육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4명, 국가나 학교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1명,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하여도 발생빈도가 낮기 때문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명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자녀의 활동과 관련하여 안전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와 가입한 적이 있다면 어떠한 보험에 가입하였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었다'가 총 63명중 41명으로 65.1%를 차지하였고, '가입한 적이 있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2명(34.9%)으로 지금까지 자녀의 활동과 관련하여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었던 경우가 가입한 적이 있었던 경우에 비해 2배정도 많았다. 이를 볼 때 학부모들의 자녀들을 위한 보험가입이 비교적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입한 적이 있는 22명이 가입한 보험의 종류로는 시중보험회사 상품에 가입한 경우가 10명(43.5%)으로 나타났고, 청소년 단체활동 참가시 가입한 경우가 9명으로 39.1%, 수련활동 참가시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활동과는 무관하게 시중의 보험사에 많이 가입하고 있고, 청소년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청소년 단체활동시 가입한 경우가 비교적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의 학부모들이 새로이 자원봉사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었던 경우에도 39명중 14명이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35.8%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가입한 경험이 없었던 경우에는 전체 39명중 25명이 자원봉사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64.1%으로 나타나 가입한 경험이 없는 경우 자원봉사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가입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보험

에 가입한 경험유무와 상관없이 보험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교사 - 학부모 집단간의 비교분석

여기서는 청소년봉사활동에 대한 안전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각 조사한 결과 중, 두 집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변인들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결과에 대한 경향성을 알아보고, 가능한 일반화시켜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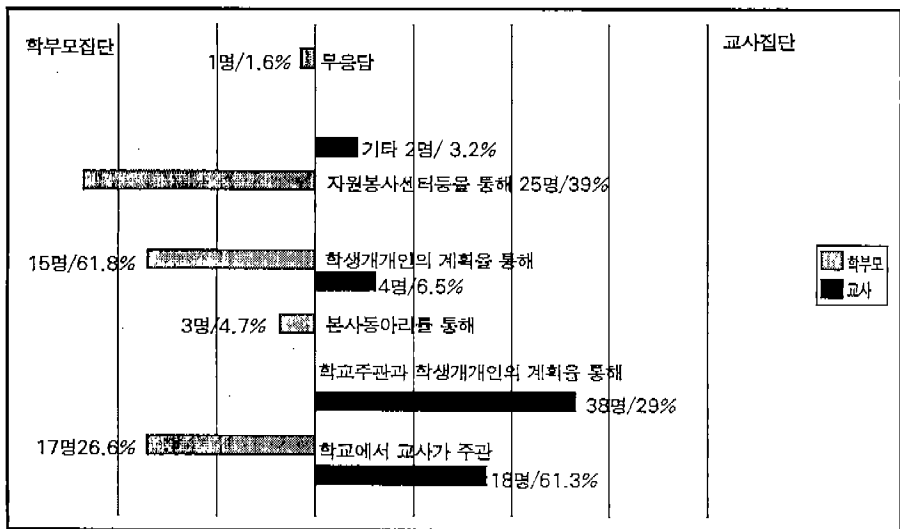
첫째, 청소년들이 어떠한 형태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그 동안 어떠한 봉사활동에 주로 참여하였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청소년봉사활동에 대한 경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봉사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두 집단이 각각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봉사활동 보험제도가 어떠한 근거 위에서 토양이 마련되어야 하는 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청소년자원봉사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면 하였을 때, 그 보험은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고, 적정 보험료와 보상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개발되어야 할 청소년자원봉사보험상품의 보험수가를 시사하고자 한다.

1) 청소년의 봉사활동 참여형태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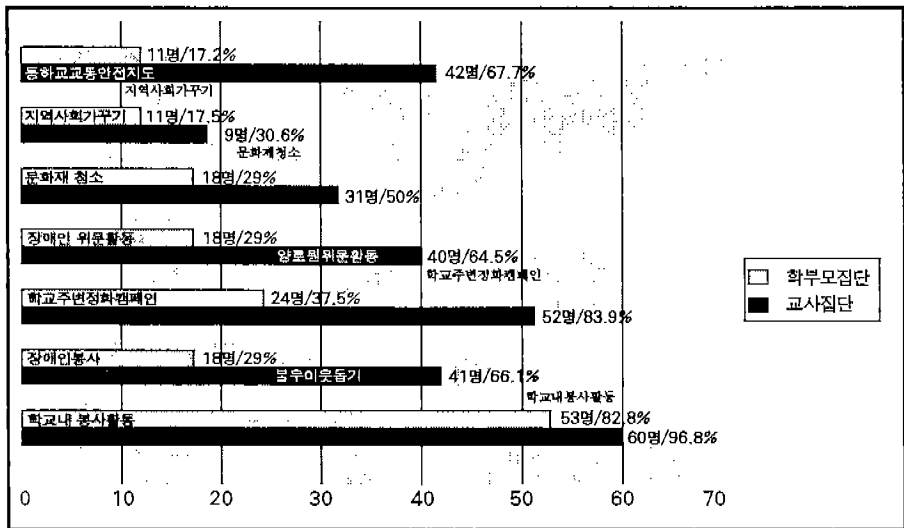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실시하는 형태는 대체로 학교를 통해서나 동아리 조직을 통해서, 또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단체 등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이 스스로 봉사활동기관을 찾아서 봉사활동을 하는 형태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면 전술한 참여형태에 대하여 교사집단과 학부모 집단간에 참여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여 보면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봉사활동 실시형태

교사집단에서의 학생들의 봉사활동 실시형태의 경우 62명중 38명이 응답한 '학교에서 교사가 주관' 하는 형태가 61.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반면에 학부모 집단에서 자녀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경우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을 찾아가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교교사의 경우 학생 개개인의 계획에 맡겨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가 62명 중 4명(6.5%)이라고 응답한데 반해, 학부모 집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63명 중 18명(28.5%)이 되어 두 집단간의 참여형태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면, 학교의 경우 학교가 주관하는 경우를 취하고 있지만 학부모 집단의 응답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도 학교에서의 봉사활동 참여보다는 지역사회내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여 참여하거나 학생들 스스로의 개인계획에 의해 봉사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4) 봉사활동 참여영역

다음으로 이들 두 집단간에서 응답한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그림 14]에서와 같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으로는 '학교내 봉사활동'이 두 집단 공통으로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으로 나

타나고 있는데 학교교사 집단의 경우 62명중 60명(96.8%)이 참여하고, 학부모집단의 경우 64명중 53명(92.8%)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참여율이 높은 활동으로는 교사집단의 경우 ‘학교주변 정화 캠페인 활동’으로 52명이 참여하여 83.9%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학부모 집단의 경우, ‘공공기관내에 일손돕기’ 활동이 참가율 62.5%를 나타내고 있다. 교사집단에서 두 번째로 참가율이 높았던 ‘학교주변 정화 캠페인 활동’은 학부모 집단에서는 네 번째 순위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상에서 볼 때 교사집단에서 보여주는 학생들의 참가활동은 주로 학교와 학교주변 정화 캠페인 활동이 높고, 학부모 집단에서는 ‘학교내 봉사활동’이 가장 높게는 나타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부모 집단에서 나타난 이러한 활동들은 앞의 봉사활동 참여형태와 관련지어 볼 때, 주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나 학생 개개인의 계획에 의해 봉사활동기관을 찾아서 실시한 활동임을 알 수 있다.

2) 봉사활동의 사고 발생 가능성과 책임소재

학생들의 봉사활동 중 사고 발생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교사-학부모간의 인지정도 비교는 <표 15>에서처럼 교사집단의 경우 ‘항상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와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총 응답자 62명중 58명으로 93.6%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고, 반면에 학부모 집단에서는 동일 변인에 대하여 64명중 53명(82.8%)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 두 집단간의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학부모보다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이 사고 위험 개연성을 더 느낄 수 있다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표 15〉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교사-학부모간 비교

집단 사고발생가능성	교사	학부모
항상발생	29명 (46.8%)	19명 (29.7%)
활동에 따라 발생	29명 (46.8%)	34명 (53.1%)
생각해본적없음	3명 (4.8%)	10명 (15.6%)
전혀발생않함	1명 (1.6%)	1명 (1.6%)
전 체	62명 (100%)	64명 (100%)

한편, 사고발생율이 높다고 생각되는 활동들에 대한 순위비교를 보면, 학교교사 집단에서의 경우, 1순위 그룹에서는 교통안전지도 활동이 가장 높은 반면, 학부모 집단에서는 농촌 벼베기 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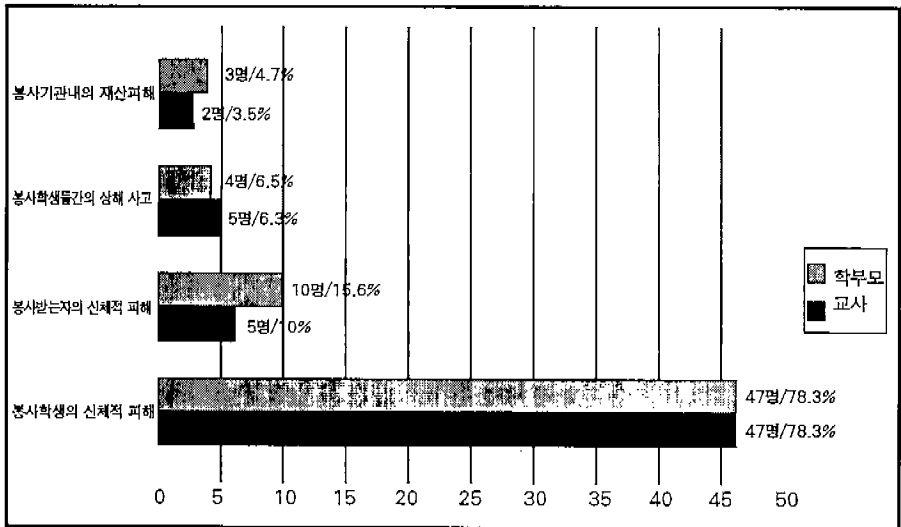
〈표 16〉 사고발생율이 높다고 생각하는 활동들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

집단 순위	교사집단	학부모집단
1 순 위 그 룹	교통안전지도 (33명) (56.8%)	농촌 벼베기 (27명 / 50%)
2 순 위 그 룹	수상안전요원 (15명) (25.8%)	수상안전요원 (14명 / 25.9%)
3 순 위 그 룹	농촌 벼베기 (10명) (17.2%)	교통안전요원 (13명 / 24%)
전 체	58명 (100%)	54명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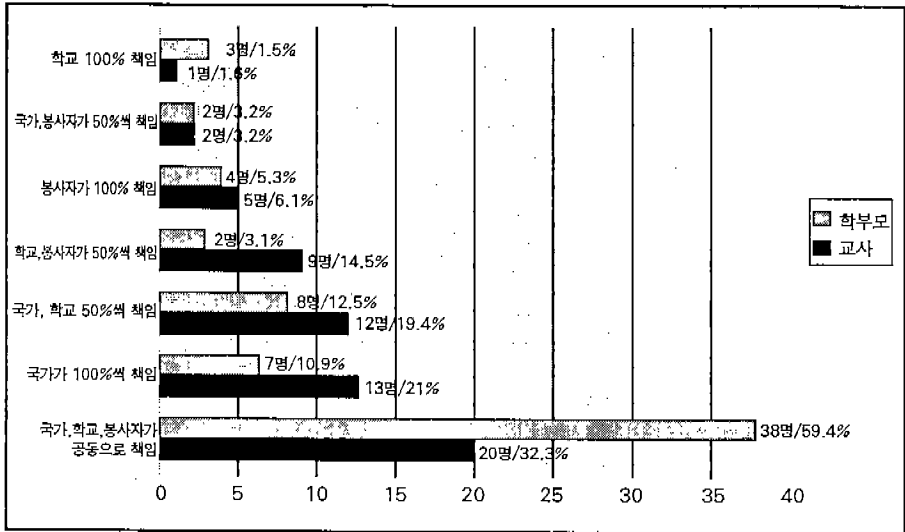
으며, 2순위 그룹에서는 교사집단과 학부모 집단 모두 수상안전요원 활동으로 나타나고, 3순위 그룹에서는 교사집단의 경우 농촌 벼베기 활동이,

학부모집단에서는 교통안전지도 활동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각 집단 내에서의 위험활동이 순서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활동으로는 동일한 활동들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6〉 참조).

봉사활동 중 일어 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사고 유형에 대해서는 학교교사의 경우, 두집단 모두가 ‘봉사를 하는 학생 자신의 신체적 피해’로 지적하고 있고, 다음으로 ‘봉사를 받는 사람의 신체적 피해’를 지적하고 있어 재산상의 피해보다는 본인이 또는 다른 사람이 당하는 인사사고에 대한 피해가 더 우선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5〉 참조).



[그림 15] 봉사활동시 발생할수 있는 가장 심각한 사고



[그림 16]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이러한 봉사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교사·학부모 집단간에서는 학부모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항목으로 ‘국가와 학교 그리고 봉사자가 공통으로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였으며 교사집단에서도 역시 동일변인에 대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6] 참조).

3) 선호하는 봉사활동 보험의 운영형태

봉사활동 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선호하는 운영형태로는 <표 17>에서 처럼 교사의 경우, ‘국가가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발생시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는 형태가 62명중 24명(38.7%)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나고, 다음으로 ‘학생이 보험가입비를 부담하되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 공공기관이 보험회사와 협약하여 학생부담의 가입비를 최소로 하고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지급’ 하는 형태를 선호(62명중 13명, 21%)하는 반면, 학부모 집단의 경우에는 교사집단과는 순위가 바뀌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학생이 보험가입비를 부담하되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 공공기관이 보험회사와 협약하여 학생부담의 가입비를 최소로 하고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지급’ 하는 형태를 오히려 선호(64명중 18명, 28.1%)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다음이 ‘국가가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발생시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 하여야 한다는 형태(64명중 16명, 25%)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변인에 대한 응답자 수를 합하여 비교하였을 때는 ‘국가가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발생시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 하여야 한다는 형태

〈표 17〉 보험제도의 운영형태에 대한 교사·학부모의 의견

보험제도 운영형태 \ 집 단	교 사	학부모
학생이 가입비부담, 공공기관이 보험사와 협약하여 가입비 최소화	13명(21%)	18명(28.1%)
국가가 보험가입, 사고시 국가가 보상	24명(38.7%)	16명(25%)
해당기관에서 보험가입, 사고시 보험금 지급	3명(4.8%)	11명(17.2%)
학생재정으로 보험가입, 사고시 보험사가 보험금지급	13명(21%)	8명(12.5%)
학생이 가입비부담, 사고시 보험회사의 보험금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추가보상	3명(4.8%)	7명(10.9%)
학생이 가입비부담, 학교가 보험사협약	6명(9.7%)	2명(3.1%)
기 타	0명(0%)	2명(3.1%)
합 계	62명(100%)	64명(100%)

(전체 126명중 40명, 31.7%)가 ‘학생이 보험가입비를 부담하되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등 공공기관이 보험회사와 협약하여 학생부담의 가입비를 최소로 하고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지급’ 하는 것(전체 126명중 31명, 24.6%)에 비해 더 선호하는 형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운영형태의 자원봉사보험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때 교사의 입장에서는 지도자로서, 학생들의 경우 학부모가 이의 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하여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경우, 연간 보험가입비와 보상 최고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두 집단간의 입장에 대해서는 <표 18>에서와 같이 가입의향이 있는 비율로 보면, 교사집단의 경우가 가입의향을 더 많이 보이고(62명중 52명, 89.7%), 적정 보험가입비와 최고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두 집단에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총 92명중 41명, 44.5%) ‘연간 보험가입비 3000원 - 최고 보상액 8000만원’을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8> 학부모 - 교사들의 적정 보험가입비와 보상액

보험 가입여부		적정보상액				
		연간 3천원납입, 최고8천만원 보상	연간 2천원납입, 최고5천만원 보상	연간 9백원납입, 최고5백만원 보상	기타	전체
가입할 의향 있다	교사	25명(43.1%)	19명(32.8%)	5명(8.6%)	3명(5.2%)	52명 (89.7%)
	학부모	16명 (31.4%)	14명 (27.5%)	7명 (13.7%)	3명 (7.5%)	40명 (76.5%)
전체	교사	26명(44.8%)	21명(36.2%)	7명(12.1%)	4명(6.9%)	58명 (100%)
	학부모	19명(37.3%)	17명(33.3%)	10명(19.6%)	5명(9.8%)	51명(100%)

Ⅳ. 청소년자원봉사보험 제도도입 방안

1. 제도도입의 기본방향

1) 보험의 개념

보험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접근형태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보는 시각에 따라 보험에 관한 정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즉 경영학의 입장에서는 보험을 공급의 측면에서 보험경영학을 논하고 있고, 경제학의 입장에서는 보험을 경제학의 한 분과로 취급해서 보험경제학을 논하고 있으며, 보험계리인은 보험을 수리적으로나 통계적인 측면에서, 법학자는 보험을 보험계약을 중심으로 법적인 측면에 치중해서 논하고 있다. 또한 사회학자는 보험의 사회성을 중요시하여 보험을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 논술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보험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위험이론과 기업경영에 있어서 위험관리란 측면에서 연구하는 경향이 강하다(방갑수, 1996: 26. 김주동·이원근, 1997: 55)

여기서 보험에 대한 독일 보험학회의 정의를 보면, '보험이란, 개별적으로는 불확실한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평가 가능한 금전적 필요를 개별경제의 다수를 결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위험의 평균화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충족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편 미국 보험학회의 정의는 '보험이란 손

해발생시 보험계약자에게 손실보상을 해주거나 기타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혹은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보험자에게 위험전가에 의한 우연적 손실의 결합'이라고 한다. 위의 두 학회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우연적 손실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하고 보험자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로부터 동질적 손실위험을 결합함으로써 손실 발생시 보험계약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주는 사회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의 필수적 성격은 위험의 전가, 손실(위험)의 결합, 우연적 손실의 보상으로서 이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위험의 전가

위험전가란 보험계약자가 손실금을 지불하는데 자신보다도 경제력이 튼튼한 보험자에게 순수위험을 전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보험료를 대가로 지불함으로써 조기사망, 건강상실, 재산손상 및 법적 책임 같은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하여 손실이 발생할 때에 보상을 받는다.

(2) 손실(위험)의 결합

손실의 결합은 보험의 핵심으로서 실제손실을 평균손실로 대체해서 소수의 손실을 전 계약자에게 분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대수의 법칙(어떤 위험에 대하여 측정대상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측정을 통한 예상치는 실제치에 가까워진다)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손실결합은 다수의 동질적 위험단위를 필요로 한다. 손실결합의 목적은 전 보험계약자에게 손실을 분담시키고, 대수의 법칙에 의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미래손실을 예측하는 데 있다.

(3) 우연적 손실의 보상

보험은 우연적 손실만 보상한다. 우연적 손실이란 예측할 수 없고 예기치 않은 손실로서 우연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실이다. 다시 말하면, 보험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손실을 보상하지 않으며 우연적이고 우발적인 손실만을 보상한다. 대수의 법칙은 손실이 우연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을 가정한다(김주동·이원근, 1997: 67).

2)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관계

보험은 그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보험의 운용목적에 따라 크게는 사회보험과 사보험(민영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자원봉사보험이 하나의 제도로써 도입되어야 한다고 할 때 이의 성격이 국가의 정책수행을 위해서 운용되는 보험인가, 사적인 개별 경제적 입장에서 운용되는 보험인가를 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회보험 또는 공보험(公保險)은 많은 국가에서 널리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사회보장은 대체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또는 공적부조, 사회복지사업 및 관련공공정책 등으로 구성된다 고 본다. 그리고 사회보험이란 보험적 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적으로 빈곤의 방지를 위하여 조직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정형된 빈곤사고(노령, 폐질, 사망, 상병, 출산, 실업, 업무재해 등)를 예상하고 미리 각출을 행하여 이들의 사고에 봉착하였을 때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사회보험이 사보험과 상이한 점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조직되고, 또한 강제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보험의 급여재원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 자신 또는 피보험자로서의 고용주, 그리고 정부 및 기타의 보험자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으로 조달된다.

사회보험과 사보험(私保險)의 관계는 대체로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전자의 사회보험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국민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이 최저선 이상은 개인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사보험을 통해서 갖가지 위험의 발생으로부터 오는 경제타격의 정도를 완화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최저생활보장이란 지역과 개인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으나 그 사회에서 최저로 인정되는 불가피한 생계유지상의 필요(needs)를 충족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얼마든지 그 이상의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보험의 필요성이 있게 된다.

사회보험에서 대상으로 삼는 손인(損因)은 사회적인 성격을 농후하게 띤 것으로서 나라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노령보험 또는 노령연금, 유가족보험, 불구 및 폐질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또는 고용보험, 노동자재해보상책임보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보험은 그 대상으로 삼는 위험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빈곤이 발생할 요인이 되므로 이 요인을 가능한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사회보험의 이름으로 국가에서 직접 관장해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사회보험의 본질에 있어서 사보험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회보험은 사회에서 인정하는 최저선의 생활보장을 구현시킴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보험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재력이 허용하는 한 각 개인의 현재수준의 생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둘째로 급부로서의 보험료와 반대급부로서의 각종 급여의 연관성에 차이가 있다. 즉, 사보험에 있어서는 보험료와 보험급여의 관련이 대체로 정확히 과학적으로 정비례하는데 반해,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사보험의 경우처럼 정확한 과학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목적에 부합시키기 위해 소득 재분배를 통한 부의 이전이란 측면에 치중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보험료를 일정한 금액에 도달하기까지 소득에 비

례해서 각출을 하는 데 비해서 각종 급여는 각출금에 정확히 비례됨이 없이 결정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로 사회보험은 강제성을 띤 데 비해, 사보험은 자의성을 띤다.

넷째로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사보험의 경우와는 달리 수혜자인 피용인과 그의 가족 이외에 고용주와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데, 정부의 경우에는 각출액의 일부를, 그리고 고용주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의 종류에 따라 그 전부를 각각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보험에 있어서는 대체로 보험계약자가 직접 보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로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사보험의 경우와는 달리 보험료로서의 각출액을 산출하기 위한 각종 통계를 수집해서 이를 기초로 그 각출액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 이는 사회보험이 보험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것은 또한 사회보험에서 대상으로 삼는 사회위험의 특성에서 오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비해 사보험에 있어서는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순수한 과학적인 통계자료에 의해서 산출된다.

여섯째로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사보험의 경우와 같이 보험료인 각출의 계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록 각출은 일시 중단됐다가 계속됐다 할지라도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상례이다. 이에 비해 사보험에서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일곱째로 운영형태를 들 수 있다. 사회보험은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한 독점이란 형태를 취하는 데 비해, 사보험은 자유경쟁체제를 갖추는 것이 상례가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사보험의 경우와 달리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각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보험에 있어서는 온전히 가입자에 의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방갑수, 1996: 60).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보험의 특징을 민영보험과 상호 비교함으로써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위험발생의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형태적으로 구별할 경우, 사회보험에 속하는 보험은 인보험에 한정되지만, 민영보험의 경우에는 인보험 외에 재산보험이나 책임보험까지도 포함하며 그 범위는 넓어진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현재 사회보험을 인보험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재산 또는 배상책임분야에까지 확대시키고 있으며, 그 예로서 홍수보험, 농작물보험 등을 들 수 있다.

② 보험금부의 면에서는 사회보험이 사회적으로 결정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법정금부를 행하고 있지만, 민영보험에서는 계약에 기인한 개인적·주관적 부보금액에 따라서 지급이 행하여지고 있다.

③ 경영주체인 보험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대부분 국영이나 공영보험임에 반하여 민영보험의 대부분은 사영이나 민영보험이 되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 중에는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과 운영이 강제되고 동시에 그 보험단체의 재정에 대한 최종적 보증이 국가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준국영의 경우의 것도 포함되고 있다.

④ 보험가입의 면에 있어서 사회보험이 강제가입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데 반하여 민영보험은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민영보험에 있어서는 각 개인은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보험종류를 선택할 수 있고 부보금액을 결정할 수 있지만 사회보험은 대체로 이런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⑤ 경영이나 운영의 원리에 있어서는 사회보험은 비영리로서 복지를 추구하는 데 대하여 민영보험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⑥ 보험료의 결정방법으로서는, 사회보험이 원칙적으로 임금 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계층별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 대하여 민영보험은 예상되는 사태의 정도에 따라서 개인별로 결정한다.

⑦ 보험료의 조달방식에 있어서, 사회보험에서는 피보험자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하거나 보험급부 부문에 해당하는 준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지만, 민영보험에서는 각 가입자가 위험에 준하는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⑧ 보험사업비의 부담에 대하여, 사회보험에서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데 대하여 민영보험에서는 부가보험료로서 피보험자가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

⑨ 책임의 소재에 있어서, 사회보험은 책임의 대부분을 사회로부터 구하는 사회책임의 보험임에 대하여 민영보험은 개인에게 책임이 보다 많이 구하여지는 자기책임의 보험이다.

⑩ 재정상태에 있어서, 사회보험은 복지우선의 자세가 선행하고 비용조달면에서는 소극적이고, 급부취급면에서는 적극적이기 때문에 자칫 재정궁핍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민영보험은 엄격한 계약에 기인하여 수리계산을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재정의 건전성이 장기 안정적이다.

⑪ 경영형태면에 있어서, 사회보험은 어떤 종류의 보장에 관한 공급독점성이 강하고 여기에 강제가입과 국영·준국영의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 그러나 공급독점은 있어도 그것은 이윤획득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민영보험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급면에서는 독점적이지 않다.

⑫ 보험계약의 면에 있어서, 사회보험은 보험계약이 없으며 부보내용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보내용을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민영보험은 보험금이나 보험요율은 계약에 명시되며 이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특징을 살펴 보았는데 사회보험이 갖는 몇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의 부담능력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즉 일정

이상으로 부담이 지나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가져오고, 나아가 정신적인 문제점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급부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져 노동으로 얻는 임금과 사회보험에서 받는 급부의 차가 줄어들면 사람들은 근로의욕을 상실하여 버릴 염려가 있다.

셋째로는 사회보험이라는 제도가 성립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즉 지나치게 특수한 리스크(risk), 지나치게 지역적인 리스크, 지나치게 유동적이어서 보험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리스크, 성격이 드러나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 도덕적 리스크, 국가의 멸망이나 천재지변의 발생 등의 보험적 한계는 사회보험제도의 성립한계가 될 수도 있다.

넷째로는 민영보험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다.

사회보험의 무리한 강화 또는 확충과 사보험에 대한 지나친 견제는 민영보험제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민영보험의 기구나 경영체제와 연대하고 국가나 정부가 이를 지도감독, 규제, 통괄하여 가는 쪽이 성과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보험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일례이다.

다섯째, 특수한 압력단체가 있어서 사회보험의 개선에 저항하거나 기득권 의식이 국민 사이에 너무 강하여 사회보험의 개선이나 개혁에 계속해서 반대한다면 결국 사회보험의 합리화나 효율화가 저해되고 사회보험의 발전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여섯째, 국민생활에는 역사나 습관이라는 특수한 요소가 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국민의식과 역행하거나 무리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국민의 합의를 얻을 수 없다. 아무리 사회보험이 유익한 제도라고 해도 대 변혁을 자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곱째, 모든 조건에 선행하여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다. 반드시 경제적으로 성장하였다고 해서 사회보험이 잘 유지되는 것

은 아니지만, 성장이 정지되었을 경우 사회보험의 한계는 급속하게 나타난다(김주동·이원근, 1997: 273-280).

이상과 같은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특징적인 면, 사회보험의 한계 등을 고려하고, 동시에 본 연구에서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자원봉사보험은 과연 어떠한 형태로 제도화되어야 하는가를 도출하고자 한다.

3) 청소년자원봉사보험의 성격

보험은 위험발생의 객체의 관점에서 인 보험(人保險)과 물 보험(物保險), 보험료의 성격의 관점에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보험경영주체의 관점에서 민영보험과 공영보험, 보험경영의 동기관점에서 영리보험과 비영리보험, 보험가입의 선택성 관점에서 강제보험과 임의보험, 보험기간의 관점에서 단기보험과 장기보험, 정부의 정책적 요소의 유무 관점에서 보통보험과 경제정책보험, 법률상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은 보험의 분류방식을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갖는 특성에 비추어 적용하여 봄으로써 청소년자원봉사보험은 어떠한 성격을 가져야 하는가를 규정해 보자고 한다.

첫째로 위험발생의 객체의 관점에서 보는 분류방식으로 인 보험(insurance of persons)과 물 보험(property insurance)을 들 수 있다. 이의 분류에서 일반적으로 인 보험에서는 사람의 신체 손상 및 사망에 대해서 금전적 평가가 불가능하지만 물 보험에서는 재산의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 평가가 가능하다. 인 보험은 경제적 평가를 수반하는 손해개념, 나아가서는 피보험 이익의 개념이 물 보험에는 타당하여도 인 보험에는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인 보험에는 생명보험, 상해보

험,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 고용보험이 이에 속하고, 반면에 물 보험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운송보험, 자동차 보험, 항공보험, 기계보험이 이에 속한다(김주동·이원근, 1997: 72-79)

이상에서 인 보험과 물 보험의 분류체계상에서 볼 때, 자원봉사활동은 활동중 사고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적 피해나 타인의 신체적 피해 그리고 타인의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이를 보상하는 것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보험은 인 보험과 물 보험에 동시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둘째로 자원봉사보험이 민영보험으로 분류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공영보험으로 분류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을 수 있다. 여기서의 분류방식은 민영보험에는 개인경영의 형태와 유럽 각국에서 보여지는 각종의 조합경영의 형태, 나아가서는 주식회사 및 상호회사에 의한 회사경영의 형태가 있는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보험업법상 민영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취급하는 것은 공제(共濟)라는 이름으로 구별되고 있다. 이와 반면에 공영보험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보험과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협의의 공영보험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사회정책 또는 경제정의 실현의 수단으로 보험을 취급할 수 있다. 근로자 재해보험, 각종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고용보험(이상 사회보험), 농업보험, 어선보험, 수출보험, 중소기업신용보험(이상 경제정책보험) 등이 공영보험에 속한다. 이상의 분류에서 볼 때, 청소년자원봉사보험은 청소년자원봉사가 국가의 청소년 건전육성 필요에 의해 제도적으로 추진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보험 또는 지자체별로 운영할 수 있는 공영보험 성격으로 규정지어질 수 있다.

셋째로 자원봉사보험을 영리보험으로 분류할 것인가, 아니면 비영리보험으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영리보험은 보험사업의 운영을

통하여 이익 또는 이윤을 얻으려는 것으로 주식회사에 의한 보험사업이 그 대표적인 형태가 되고 있다. 비영리 보험은 이익 또는 이윤에 집착하지 않고 보험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보험의 공공성, 사회성, 복지성 등을 주된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공영보험의 대부분이 비영리보험이고 각종 협동조합이 취급하는 공제도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고려할 때 청소년자원봉사보험은 마땅히 비영리 성격의 보험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무적으로 수행되어지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영보험의 성격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할 때 보험가입을 임의 혹은 법률에 의해 강제로 가입하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고 보겠다. 즉 청소년자원봉사보험을 임의보험(voluntary insurance)성격으로 볼 것인가 강제보험(compulsory insurance)성격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임의보험은 개개인이 자기의 판단 하에서 스스로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부보금액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반면에 강제보험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공적인 어떤 힘을 발동시켜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국가의 필요에 의해 청소년들이 행하여야 하는 활동으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청소년자원봉사보험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강제보험 성격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넷째의 청소년자원봉사보험 성격으로는 보험계약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보험계약기간이 단기인가 혹은 장기인가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 보험은 단기보험(short-time insurance)과 장기보험(long-time insurance)으로 나눌 수 있다. 보통 1년 이하의 것은 단기보험으로, 3년 이상의 것은 장기보험으로 분류된다. 단기보험의 경우 대체로 손해보험에

서 많이 보여지고 있으며, 보험자금의 축적도 없고 경제변동이나 인플레이션에 의한 영향도 적다. 반면 장기보험은 생명보험에서 많이 보여지며 보험자금이 축적되고 금융기능이 중시된다. 생명보험에 저축성이 개재되고 있는 근거도 이점을 이용한 때문이다. 이러한 보험계약기간과 성격을 고려할 때 청소년자원봉사보험은 근본적으로 저축성 또는 보험자금의 축적을 통한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1년단위의 단기보험성격으로 규정지을 수 있으나 청소년의 봉사활동기간이 학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중학교과정과 고등학교과정 등을 고려하여, 3년단위의 장기보험이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보험의 분류를 대체로 4가지 상이한 관점을 적용하여 청소년자원봉사보험의 성격을 규정하여 보았다.

이의 성격을 다시 정리하여 살펴보면 <표 19>에서와 같이 나타난다.

〈표 19〉 청소년자원봉사보험의 성격

성 격 분 류		성 격	
		강하게 나타남	약하게 나타남
위험 발생 객체	인 보 험	◎	
	물 보 험		○
보험 경영 주체	민영보험		△
	공영보험	○	
보험 경영 동기	영리보험		△
	비영리보험	◎	
보험 가입 선택	임의보험		△
	강제보험	◎	
보험 계약 기간	단기보험	○	
	장기보험	◎	

* ◎ 매우강함, ○ 강함, △ 약함

〈표 19〉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자원봉사보험의 성격은 위험발생의 객체의 관점에서 볼 때, 인 보험과 물 보험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하나, 인 보험에 우선을 두어야 하는 성격이어야 하며, 동시에 공적인 성격을 갖는 보험으로 운영되는 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은 사업을 통하여 이익이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운영되기보다는 보험의 공공성, 사회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청소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입의 선택은 청소년 개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임의보험이 아닌 법률이나 제도에 의한 강제가입의 형태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보험을 통하여 발생되는 이익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재 투자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가입계약기간 역시 보험자금 축적 등 금융기능이 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제 등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을 장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4) 청소년자원봉사보험의 기능

청소년자원봉사보험이 하나의 제도로서 도입된다고 할 때 이의 보험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게 되는가를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즉 보험이 갖는 일반적 성격과 접목시킬 때 청소년자원봉사보험은 과연 어떠한 기능을 갖게 되는가를 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험이 갖는 성격과 기능을 모두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원봉사활동이 갖는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가가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보험기능을 도출하고 그러한 기능만으로 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보험의 기능은 보험자체의 본질적 기능과 부수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동시에 사적(私的) 측면에서의 기능과 공적(公的) 측면에서의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보험의 본질적 기능의 측면에서 보면, 보험제도의 이용자는 보험료라고 하는 비교적 소액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의해 일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비교적 다액의 보험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하는 점이다. 따라서 보험제도 그 자체는 청소년활동의 주체가 필요로 하는 제반 청소년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가능한 한 적은 비용으로 담보한다는 사회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회적 효과의 발휘가 바로 보험제도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보험의 부수적 기능을 보면, 우선 손해의 방지를 들 수 있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인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고의 방지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이러한 사고 방지기능을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청소년활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순히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고의 조사자가 보상액을 산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고의 원인, 상황, 장치물이나 시설의 안전도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을 권고하게 된다. 동시에 보험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거나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나 연구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사고 예방활동에 기여함으로써 사고방지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2. 청소년자원봉사보험 제도도입

1) 국내 · 외 자원봉사보험 운영실태

(1) 국내의 자원봉사보험

우리 나라의 경우 자원봉사보험이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개발되어 판매되기 시작한 지는 극히 최근의 일이다. 지난 '94년도부터 사회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이슈로 제기되고, 참여인구가 날로 증대되고 급기야 '96년부터는 학생들의 학생봉사활동이 제도화됨에 따라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몇몇 사적보험시장이 앞장서서 보험상품으로 개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사적시장에서 개발한 자원봉사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어느 정도 위험이 예측되는지, 실제 활동 중 어느 정도로 사고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상해보험의 경우를 바탕으로 하여 개발되어 보험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금 책정 역시, 전술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보험제도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현재까지 국내에서 자원봉사활동 중의 위험만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으로 시판되고 있는 것으로는 S화재보험회사의 자원봉사보험이 있고, D화재해상보험회사가 학생봉사활동 중의 위험만을 담보하여 개발한 학생봉사활동 상해보험이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보험 상품을 나름대로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입인구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적은 데서도 기인하지만, 봉사활동을 주관하는 학교나, 시설 · 단체의 가입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어쨌든 상기에서 규정한 청소년자원봉사활동보험의 성격과 실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자원봉사보험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S회사의 자원봉사보험상품에서의 경우, 특별히 학생만을 대상으로 적용하지 않고 일반성인 자원봉사와 공통으로 적용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가입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고, 개인계약은 없으며 100인 이상 단체의 가입에만 적용되는 상품이다. 보장내용으로는 사망과 후유 장애, 의료비 등이며, 기존의 상해보험보다 다소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다. 보험료의 납입방법으로는 년납, 6월납, 3월납, 월납(3.33%할증) 등으로 구분하여 가입단체가 일시에 단체의 보험가입비를 납부함으로 해서 오는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한 피보험자 수에 따라 단체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예컨대 최저 300인 이상의 할인율 5%에서부터 최고 2,000명 이상의 경우 20%까지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요율 역시 2일의 경우 4%를 적용하고 있고, 최장 10개월까지로 구분하여 최고 90%까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표 20〉 및 〈표 21〉 참조).

〈표 20〉 S회사의 자원봉사보험 단체할인율

피보험자수	300명 이상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2,000명 이상
할 인 율	5%	10%	15%	20%

〈표 21〉 S회사의 자원봉사보험 단기요율

보험기간	2일	15일	1개월	3개월
단기요율	4%	14%	20%	40%
보험기간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단기요율	50%	70%	80%	90%

〈표 22〉은 S회사의 일반 자원봉사자를 위한 플랜으로 담보내용 중 사망의 경우 신종 단체 상해보험 보통약관에 정한 상해에 대하여 업무중에 신체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80일만에 사망한 경우를 말하며 각 안에서 정한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며, 후유 장애의 경우 신종 단체 상해보험 보통약관에 정한 상해에 대하여 업무중에 신체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피해 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보험가입금액에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고, 의료실비의 경우 역시 신종단체 상해보험 보통약관에 정한 상해에 대하여 업무중에 신체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피해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하고 있다.

〈표 22〉 S회사의 일반 자원봉사자를 위한 플랜

담보내용	A안	B안	C안	D안	E안
사망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후유장애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의료실비	5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배상책임		1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보험료	870원	1,436원	2,242원	3,782원	5,382원

※ 상기 납입보험료는 단체할인을 적용전의 금액임

또 다른 국내의 자원봉사 보험상품으로서 D회사가 개발한 상품을 들 수 있다. 이의 상품은 학생 봉사활동 상해보험으로서 자원봉사단체 또는 학교의 소속원인 학생이 자원봉사활동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험의 계약자는 <표 23>에서 처럼 개인, 교육기관의 기관장, 행정관청 소속의 자원봉사센터, 기타 봉사활동 단체가 되며, 피보험자는 자원봉사 활동 중인 학생으로서 초·중·고·대학생까지 해당된다. 여기서 행정관청 소속의 자원봉사센터는 구청 소속 자원봉사센터 등을 말하며, 기타 봉사활동단체는 복지회관이나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을 말한다.

<표 23> D회사의 학생봉사활동 상해보험 가입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비고
개 인	자 원 봉 사 활 동 중 인 학 생	초·중·고·대학교
교육기관 / 교육기관장		
행정관청 소속의 자원봉사센터		구청소속 자원봉사센터 예) 강북구 자원봉사센터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기타봉사활동 단체		각종 봉사활동 단체 예) 복지회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

<표 24> 개인계약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유의사항
개 인	자원봉사활동중인 학생 (초·중·고·대)	1. 보험기간은 1년(봉사활동시간 : 초·중·고생 40시간, 대학생은 208시간)으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함(단기계약 불가) 2. 특정활동담보 특별약관은 첨부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 임의해지도 할 수 없음 3. 매 계약당 최저보험료는 2000원임.

〈표 25〉 단체계약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유의사항
교육기관 / 교육기관장 행정관청 소속의 자원봉사센터 기타 봉사활동단체	자원봉사활동 중인 학생 (초·중 · 고·대)	1. 보험기간은 1년(봉사활동시간: 초·중·고·대 학생은 208시간)을 원칙으로 함. 2. 봉사활동시간이 상기 1의 시간보다 적을 때는 특정활동 담보특약을 첨부하여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3. 특정활동담보특약을 첨부할 때는 봉사활동프로그램(봉 사활동내역, 시간(1일 및 총시간), 기간)을 반드시 제출하 여야 함.

상기 회사의 경우 보험 구성을 기본계약사항과 선택계약사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계약은 S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해·사망 후유장해가 적용되고 상해로 인한 의료비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

〈표 26〉 D회사의 학생봉사활동 상해보험의 구성

구 분	담보위험	담보내용	비 고
기본계약	상해·사망후유장해	학생이 자원봉사활동중에 입은 상해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보상	보험기간 : 1년
	상해 의료비	학생이 자원봉사활동중에 입은 상해 사고로 인한 의료비 보상	
선택계약	특정활동위험	기본계약 보험기간은 1년이나 특정 활동시간 담보만 선택시 첨부	단체계약에만 첨부함
	임시생활비	자원봉사활동중 입은 상해사고로 입 원시 임시생활비 지급(일당)	최고 26주
	헌혈 후유증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 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후유증발생시 위로금 지급	「헌혈 후유증 판정위원회」
	학생봉사활동배상책임	자원봉사활동중 타인에게 입힌 배상 책임 손해 담보	개인배상책임

본계약사항과는 별도로 특정활동시간만을 추가로 선택하여 보험에 적용한 다든지, 헌혈에 대한 후유증 발생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헌혈후유증에 대한 보상, 임시생활비를 지급하는 등의 비교적 다양한 형태의 선택사항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표 26〉 참조).

한편 D회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계약기간과 손해의 범위를 보면, 보험기간의 경우 〈표 27〉에서 처럼 기본담보와 특정활동담보로 구분하고, 기본담보의 경우 개인계약이나 단체계약이든간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활동담보에 있어서는 단체계약에만 해당되는데 특정활동시간에 따라 1년 이하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27〉 D회사의 학생봉사활동 상해보험기간

구분	보험기간		비고
	기본담보	특정활동담보	
개인계약	1년	해당 없음	단기계약/임의해지 불가
단체계약	1년	특정활동시간에 따라 1년 이하 계약체결 가능	단기계약체결 가능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첫째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에 입은 상해 사고, 둘째 자원봉사활동 시작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에 입은 상해사고, 셋째로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통행 중에 입은 상해사고의 경우에 보상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표 28〉 개인계약(상해위험 : 학생1인 기준)

구분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A플랜	B플랜	C플랜	D플랜	E플랜	F플랜
보상	상해사망후유장해	5000만원	1억원	2억원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한도액	상해 의료비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보험료(보험기간 : 1년)		2,000원	2,480원	4,620원	2,070원	5,890원	9,540원

* 최저보험료 : 매 계약당 2000원

〈표 29〉 선택계약사항

구분	대상	담보위험	비고
		특정활동위험	단체계약
선택계약	대학생	임시생활비	개인계약 또는 단체계약
		헌혈후유증	
		학생봉사활동배상책임	
	초·중·고생	임시생활비	개인계약 또는 단체계약
		헌혈후유증	
		학생봉사활동배상책임	

이상에서와 같이 사적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내의 청소년 자원봉사보험은 상품은 그 종류가 아직은 많지 않지만 청소년봉사활동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개발, 시판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D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사활동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운영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예컨대 피보험자를 청소년 개인으로 하고 있으면서 보험계약자는 개인이 직접 계약하는 개인계약과 봉사활동을 주관하는 주관처에서 단체로 보험계약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담보 역시 기본담보와 선택담보로 구분함으로써 보험으로 인

한 경제적 부담을 가능한 줄이고 실질적인 보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흔적을 엿볼 수 있다.

(2) 일본의 볼런티어활동 보험운영 실태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1977년부터 전국사회복지협의회(全國社會福祉協議會)가 볼런티어 활동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되어 일본화재(日本火災)해상보험주식회사를 간사회사로 하여 2개회사와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① 손해의 보상내용

볼런티어활동중에 볼런티어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경우(상해사고)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배상사고)등의 사고를 폭넓게 보상한다.

② 특 정

- 전국사회복지협의회와 일괄하여 계약하는 단체계약이다.
- 숙박을 수반하는 활동도 보상의 대상이 된다.
- 방재·재해 볼런티어활동도 보상의 대상이 된다.
- 천재(지진 등)에 의한 사고도 보상대상이 된다.(C플랜에 가입 경우, 상해부분만 해당)

③ 가입신청자(가입할 수 있는 자)

- 볼런티어 개인 또는 볼런티어 단체
- 볼런티어의 감독의무자

* 볼런티어가 어린이로서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 등 감독의무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동 피보험자로 한다.

④ 대상이 되는 볼런티어활동(일본 국내의 경우에 한함)

- 자발적인 의사에 의거, 타인이나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

— 무상의 활동(비용변상정도인 것은 무상에 포함한다)으로 다음의 3가지 중 1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한다

· 그룹의 회칙에 의한 기획, 입안된 활동일 것

(그룹이 사회복지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필요함)

· 사회복지협의회에 신고한 활동일 것

· 사회복지협의회에 위촉된 활동일 것

* 활동에는 활동을 위한 학습회 또는 회의 등도 포함된다

⑤ 대상이 되지 않는 볼런티어활동

— 해난구조 또는 산악구조 볼런티어활동

— 총기를 사용하는 해수구제(害獸驅除)볼런티어활동

— 야소(野燒), 산소(山燒)를 행하거나 또는 자동 톱을 사용하는 삼림 볼런티어활동 등

⑥ 보상기간

— 매년 4월 1일 오전 0시부터 익년 3월 31일 오후 12시까지이다.

— 4월 1일 이후의 가입에 대하여는 가입신청수속이 완료되는 날의 익년 오전 0시부터 당해연도 3월 31일 오후 12시까지가 된다.

〈표 30〉 보상내용

	보험금의 종류	보 험 금 의 내 용	가입플랜 · 보상금액		
			A플랜	B플랜	C플랜
상 해 사 고	사망 보험금	상해로 인하여 사고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 한때, 사망보험금의 금액 을 지불한다	858.9만엔	1,722.2만엔	858.9만엔
	후유 장해 보험금	상해로 인하여 사고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 의 일부를 잃었다든가, 기 능에 중대한 장해를 영구 히 남기게 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후유 장해보 험금액을 지불한다	858.9만엔 (한도액)	1,722.2만엔 (한도액)	858.2만엔 (한도액)
	입원 보험금 (1일당)	상해로 인하여 입원한 때 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일수에 대하여 입 원보험금일액을 지불한다	4,800엔	6,800엔	4,800엔
	통원 보험금 (1일당)	상해로 인하여 의사의 치 료를 받은 때에는 사고일 로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 일수(90일한도)에 대하여 통원 보험금일액을 지불 한다	2,800엔	4,500엔	2,800엔
	수술 보험금	입원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에 상해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때에는 입원보험금에 수술의 종류에 따른 배율(10배, 20배, 또는 40배)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지불한다			
	배상 사고 보험금 (대인· 대물)	제3자의 신체 또는 물건 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때 보 험금을 지불한다. 단, 사고 당면책(자기부 담)1,000엔으로 한다	2.5억엔 (한도액)	3억엔 (한도액)	2.5억엔 (한도액)
부 금(연 간)			300엔	500엔	2,630엔

- *상해사고의 보험금은 건강보험·생명보험·가해자로부터의 배상금 등과는 관계없이 지급한다.
- *사망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의 지불은 합계하여 보상기간을 통하여 사망보험금액을 한도로 한다.
- *평상의 활동 또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치료한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⑦ 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고

- 상해사고 : 불런티어가 불런티어활동 중의 사고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불한다.(예, 청소 봉사활동 중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나, 불런티어활동 수행하러가는 도중,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 배상사고 : 불런티어가 불런티어활동 중의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다든지,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것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예, 목욕 불런티어활동중, 실수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사원조 불런티어 으로 청소중 실수하여 꽃병을 떨어트린 경우, 또는 자전거를 타고 불런티어활동을 하러 가는 도중 실수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등).
- * 활동장소와 자택과의 왕복도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상의 대상이 된다. 자택이외의 장소에서 출발하는 경우는 그 장소와 활동장소의 도중이라고 본다. 단, 통상의 왕복경로일 것.

⑧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는 주요한 예

- 상해사고의 경우
 - 피보험자나 보험금 수취인의 고의에 의한 상해
 - 자살행위, 범죄행위, 무자격운전, 음주운전에 의한 상해
 - 뇌질환, 질병(심장질환을 포함), 심신상실에 의한 상해
 - 경부증후군 또는 요통으로 타각증상이 없을 것

- 지진, 분화, 해일에 의한 상해(상해사고는 C플랜 가입의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된다.)
-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의 상해
- 배상사고의 경우
 -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한 사고
 - 동거의 친족에 대한 사고
 - 자동차, 항공기, 선박, 총기에 의한 사고
 - 지진, 분화, 해일에 의한 사고
 - 직업상의 업무수행에 기인한 사고
- * 자동차에 의한 사고는 가입자 자신의 상해만이 대상이 되며, 대인·대물사고 등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⑨ 가입신청수속

- 소정의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고 부금을 첨부하여 가까운 사회복지협의회에 제출
- 사회복지협의회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수부인을 압인함으로서 가입신청수속을 완료하게 됨

⑩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가입신청수속을 행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일본화재까지 연락하여야 한다.

- 볼런티어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사고발생의 일시, 장소
- 사고의 원인, 상황
- 상해의 정도, 병원명(상해사고)
- 상대방의 성명, 주소, 연락처, 상해 또는 손해의 정도(배상사고)

* 사고가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연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배상사고의 경우 화해시에 일본화재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상담하여야 하며, 일본화재의 승인 없이 화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 사회복지법인 전국사회복지협의회, 취급대리점 : 주식회사 복지보험서비스, 인수손해보험회사 : <간사회사>일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안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경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표 31〉 가입자수 추이

(단위:명)

구 분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A 플랜	779,573	921,514	882,609	557,704
B 플랜	289,735	321,132	345,202	191,248
C 플랜	-	-	-	6,191
천재 플랜	-	195	381	191
합 계	1,069,308	1,242,841	1,228,192	755,334

※98년도의 경우는 98년 5월말 현재까지임

〈표 32〉 보험료 추이

(단위:엔)

구 분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A 플랜	233,871,900	276,454,200	264,782,700	167,311,200
B 플랜	144,867,500	160,566,000	172,601,000	95,624,000
C 플랜	-	-	-	4,333,700
천재 플랜	-	440,700	1,002,030	529,070
합 계	378,739,400	437,460,900	438,385,730	267,797,970

※98년도의 경우는 98년 5월말 현재까지임

〈표 33〉 지불보험금추이

(상단 : 건, 하단 : 천엔)

구 분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상해사고	672	857	967	406
	78,346	102,938	109,527	28,686
배상사고	58	84	76	87
	3,080	4,399	4,368	368
합 계	730	941	1,043	493
	81,426	107,337	113,895	29,054

※98년도의 경우는 98년 5월말 현재까지임

〈표 34〉 1인당 해당되는 보험금액

(단위 : 천엔, 면책의 경우 : 엔)

구 분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A 플랜	상해부분	사 망	5,000	7,000	8,589	10,051
		후유장해	5,000	7,000	8,589	10,051
		입원일액	3,500	4,500	4,800	5,700
		통원일액	2,000	2,500	2,800	3,500
	배상부분	대인·대물	120,000	250,000	250,000	350,000
		면책(1사고)	1,000	1,000	1,000	1,000
B 플랜	상해부분	사 망	10,000	15,460	17,222	21,581
		후유장해	10,000	15,460	17,222	21,581
		입원일액	5,000	6,000	6,800	8,000
		통원일액	3,000	4,000	4,500	5,200
	배상부분	대인·대물	200,000	200,000	300,000	400,000
		면책(1사고)	1,000	1,000	1,000	1,000
C 플랜	상해부분	사 망	-	-	-	34,540
		후유장해	-	-	-	34,540
		입원일액	-	-	-	10,000
		통원일액	-	-	-	6,600
	배상부분	대인·대물	-	-	-	450,000
		면책(1사고)	-	-	-	1,000
천재 플랜	상해부분	사 망	-	7,000	8,589	10,051
		후유장해	-	7,000	8,589	10,051
		입원일액	-	4,500	4,800	5,700
		통원일액	-	2,500	2,800	3,500
	배상부분	대인·대물	-	250,000	250,000	350,000
		면책(1사고)	-	1,000	1,000	1,000

〈표 35〉 1인당 해당되는 보험료

(단위 : 엔)

구 분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A 플랜	300	300	300	300
B 플랜	500	500	500	500
C 플랜	-	-	-	700
천재 플랜	-	2,260	2,630	2,770

※과거 3년

〈표 36〉 보험금 지불건수와 지불금액(1996년)

보 험	종 목	지 불 건 수	지 불 금 액
볼런티어활동보험	상 해	857건	102,938천엔
	배상책임	84건	4,399천엔
볼런티어활동 등 행사용 보험	상 해	230건	12,785천엔
	배상책임	21건	824천엔
재택복지서비스 종합보상	상 해	277건	10,949천엔
	배상책임	152건	5,712천엔
합 계	상 해	1,364건	126,672천엔
	배상책임	257건	10,935천엔
총 합 계		1,621건	137,607천엔

이상에서 볼 때,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의 가입계약자를 전사협(全社協)으로 하여 전사협이 자원봉사자 개인, 단체 및 단체의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업무를 일괄 접수·처리하여 보험회사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다.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 일반 보험회사에 학교나 단체, 또는 학생개개인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운영하고 있어 보험제도의 운영 자체에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자원봉사 재해공제에 있어 급부의 종류로는 일본의 경우, 본인의 사고와 대인·대물급부가 있는 반

면, 우리 나라의 경우 본인의 사망과 후유 장애, 의료실비 등에 대해서만 급부하도록 되어 있고 사고 발생시 일본의 배상 책임 한도액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자원봉사보험 개발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2) 제도도입을 위한 대안분석과 선정

지금까지의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청소년봉사활동 중 실제 발생한 사고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때문에 음성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면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일본의 자원봉사보험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96년의 경우 총 가입자수가 1,242,841명인데 반해 봉사활동중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가 총 941건으로 0.075%에 불과하며, '97년의 경우는 총 가입자수가 1,228,192명중 보험금 지급건수가 113,985명으로 0.092%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의 경우에서도 자원봉사보험이 개발되어 시행된다고 할 때, 실제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건수는 매우 낮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자원봉사보험을 새로이 개발한다고 할 때 경험통계의 부족으로 현재까지의 사고 발생 추이를 알 수 없고, 어느 정도 사고가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기존의 상해보험 수준 또는 상해보험보다는 다소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할 소지가 크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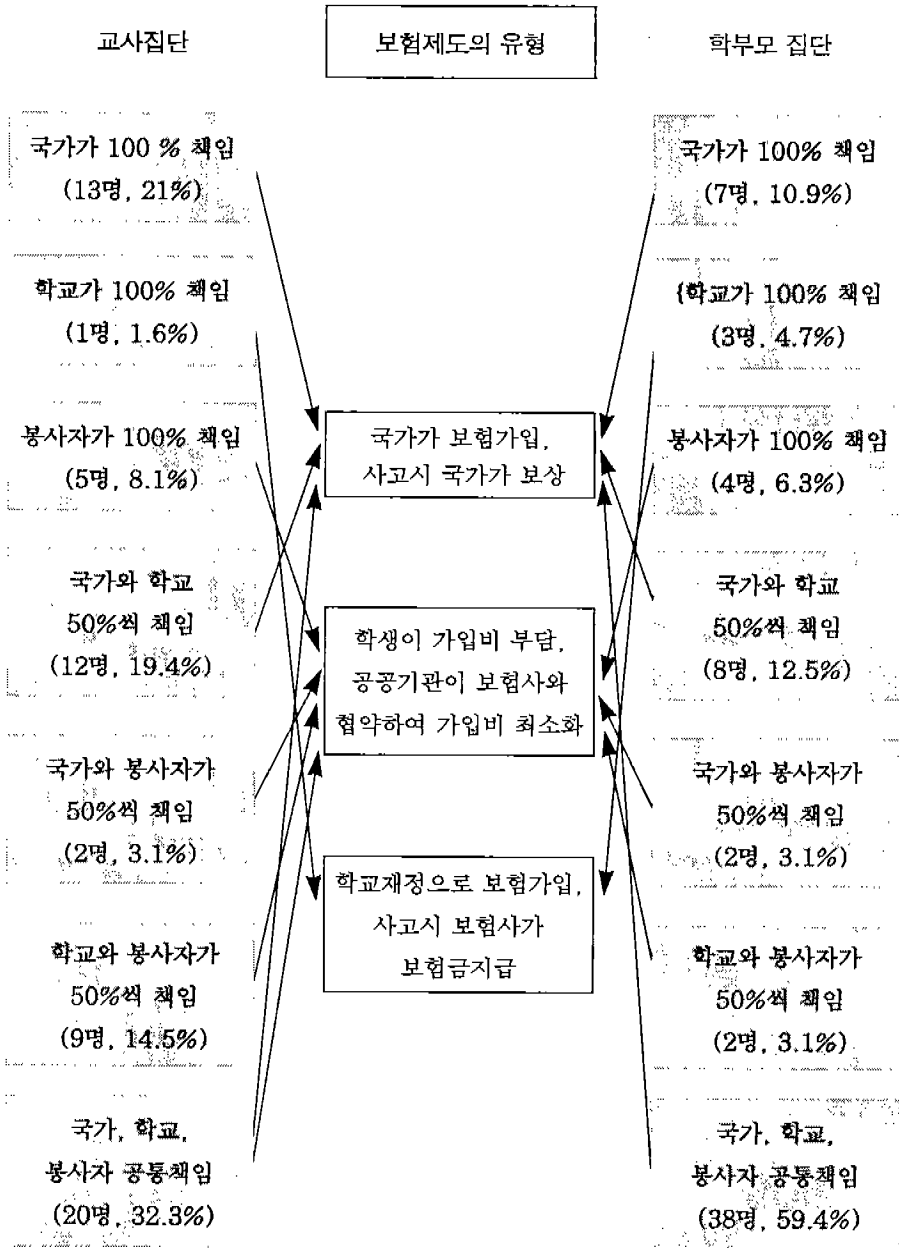
따라서 지금까지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볼 때, 국가는 학교교사나 학부모들이 희망하

는 보험제도의 운영형태를 참고할 뿐만 아니라 전술한 청소년자원봉사보험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영의 보험상품개발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사집단이 선호하는 대안

앞의 조사에서 이미 학생들이 봉사활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교사집단과 학부모 집단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그리고 이들 두 집단이 학생들의 봉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사고에 대한 대책으로서 자원봉사보험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때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교사집단과 학부모 집단에 대해 각각 의견을 물은 바 있다. 따라서 청소년자원봉사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적정대안들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인 작업으로 이들 두 집단이 제시한 봉사활동 중 사고책임소재에 따라 선호하는 보험운영형태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17]은 교사집단과 학부모 집단에서 각각 나타나는 봉사활동 중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소재와 이러한 책임소재가 결국 어떠한 형태의 보험운영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7) 보험제도의 운영형태

각 조사집단에서 사고발생 책임에 대한 응답 내용의 빈도를 고려하여 비교적 의미 있는 보험운영형태에 실선과 점선으로 연결하여 보았을 때, 사고책임이 국가 또는 학교에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험제도의 운영형태에서 '국가가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 발생시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 하는 형태로 강하게 나타나며, 국가 또는 학교와 더불어 봉사자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보험가입비를 부담하되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 공공기관이 보험회사와 협약하여 학생부담의 가입비를 최소로 하고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지급' 하는 형태에 가장 강한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는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하는 입장이 지배적이지만 실제 보험의 운영형태는 공공기관이 가입하여 보험회사와 협약하므로서 가입비의 저렴 등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2) 대안의 분석

어떠한 형태의 청소년자원봉사보험제도를 최종의 대안으로 제시할 것인가 하는 대안의 분석에 있어서는 앞서 제시하였던 6개 형태 모두를 대안으로 하여 각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최종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 37>에서 제시한 대안①의 경우 국가가 봉사활동 보험제도를 100% 수용하고 나아가 보험의 실제적인 운용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 육성 책임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해 봉사활동보험에 모든 청소년이 가입할 수 있음으로 해서 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체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험가입비를 국가가 떠맡고, 사고발생시 이를 전액 보상까지 책임진다는 것은 국가재정이나 현행 사회보험 운영체제를 고려할 때 이의 제도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더구나 학생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향후 근로 청소년 등에 대해서는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는 경우, 초래될 수 있는 형평성

의 문제나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음의 대안②의 경우는 학교재정으로 보험가입비를 부담하고 학교가 보험사와 계약을 하며, 사고발생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제도인데, 이의 장점으로는 봉사활동의 주체인 학교가 학생들의 보험가입비 부담을 떠안고 보험사와 일괄 계약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겠으나, 현실의 학교재정 등을 감안할 때 재원마련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학교가 자체의 재정확보를 위하여 학생들에게 보험가입비를 전가시키는 형태, 예컨대 학생들로 하여금 재활용품을 수거토록 하여 이의 판매대금(현행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안전공제기금을 이러한 형태로 조성하고 있음)을 보험가입비로 전용, 보험사와 계약하는 형태를 추가로 검토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대안③과 유사한 형태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학생들에게 보험가입비를 마련하라고 하는 형태이며 동시에 학교는 학생들의 보험계약 업무를 별도로 취급하여야 함으로서 인력의 투입과 기존 교사들의 업무과중을 초래할 수 있다.

대안④의 경우는 실제 청소년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내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 자원봉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주관이 되어 보험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형태인데, 이를 통해 보험가입비를 최소로 하거나 보험의 운영내용을 최대한 비영리 성격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이 강한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학생들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센터 등 공공기관까지의 접근성, 센터 등 공공기관의 보험가입자 접수 등의 부수적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단점으로 나타난다.

이외에 대안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장점은 학생과 보험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사고발생의 경우 국가가 보상금을 추가로 더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형태로서 사고발생율이 적다고 하는데서 오는 국가의 소극적 개입이라고 볼 수 있고,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보상할 수 있

는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대안⑥은 미국의 경우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운영형태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봉사활동 수요기관에서 오히려 청소년들을 귀찮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거의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국가가 수요기관을 엄격히 지정하여 최대한 혜택, 예컨대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대신 수요기관이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시행과정에서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표 37〉 청소년자원봉사보험 대안별 장·단점 분석

구 분	장 점	단 점
대안① : 국가가 보험가입하고, 사고 발생시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	· 모든 청소년이 보험가입 혜택 · 최소 가입비, 최대 보상금 · 지금 운영형태 가능 · 국가의 청소년육성 책임 구현	· 모든 청소년 대상 보험가입 재원 확보 필요 · 보험운영의 관리에 필요한 별도 기구조직 설치로 예산확보
대안② : 학교재정으로 보험가입비를 일괄부담, 사고발생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	· 봉사활동주체인 학교가 일괄 부담하여 모든 학생보험가입 혜택	· 보험가입비용 확보를 위한 자치 교육청별 예산확보 · 재정부담으로 봉사활동 위축
대안③ : 학생이 보험가입비를 부담하되 학교가 보험회사와 계약하는 형태	· 보험가입비 납입업무 용이	· 학교가 보험업무를 취급함으로써 교사업무의 과중부담또는 관리직원 신규확보
대안④ : 학생이 보험가입비를 부담하되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 공공기관이 보험회사와 협약하여 학생부담의 가입비를 최소화 하고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지급	· 보험가입비부담의 최소화 · 국가나 학교의 재정 및 업무 부담 경감 · 학생들의 보험가입 자유선택 · 청소년봉사자의 관리 용이	· 공공기관(센터)의 업무 가중 · 센터에서 접수함으로써 해서 방문에 대한 불편함
대안⑤ : 학생이 보험가입비를 부담하되 사고발생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액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추가로 더 보상해주는 형태	· 국가의 추가 보상으로 인한 보상액의 증가 · 학교측의 부담 감소 · 가능한 다수의 청소년이 보험 가입 · 보험사의 이윤 극대화 효과	· 추가보상액에 대한 재원확보 · 손해사정시 국가가 개입하여야 하는데 필요한 인력 확보
대안⑥ :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해당기관에서 보험가입비를 부담하고 사고발생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	· 학교와 국가측의 부담 감소	· 해당기관의 재정부담으로 인해 봉사활동을 거부 우려 · 실제 봉사활동이 필요한 기관이 미가입시 청소년들이 봉사활동 회피

(3) 대안의 선정

위에서 살펴 본 각 대안별 장단점을 참고로 하여 몇가지 의미있는 대안들을 도출, 실제 제도로써 도입가능한 형태로 수정·보완하여 최종대안을 선정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국가가 보험운영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형태

첫째의 방안으로는 국가가 현행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거나 조문개정을 통하여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을 주관하는 시설이나 단체등으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해당 주관처에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행 사회보험의 기여금 제도와 같이 일정액을 참가하는 청소년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고발생 담보의 범위는 초기단계에서는 사망사고와 상해사고 등에 한정시켜 적용하고 점차 경험통계의 축적과 기술의 축적을 통하여 담보의 범위를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의 국가 개입형태로서는 봉사활동보험을 현행 사회보험 중의 하나인 의료보험과 같은 체제로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조합을 설립, 이의 조합에서 자원봉사보험이나 수련활동 보험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지정병원을 확보하고 조합을 신설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나 조합의 신설의 경우 오직 보험업무만을 전담하는 조합신설보다는 기존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예컨대 중앙의 경우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보험업무를 통괄하도록 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지방의 경우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보험업무를 관장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두가지 형태로 운영될 때 청소년들의 보험가입은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수련활동시설이나 단체활동, 봉사활동을 주관하는 주관처의 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 한하여 강제가입형식을 취하며, 참가하는 청소년의 보험가입비를 국가와 청소년 자신이 일정액을

분담하여 가입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한편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와 보상 적립금에 대한 재원확보는 초기에는 청소년육성기금의 일정액을 조합에 지원하여 조합이 이의 기금으로 보험료와 보상금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실제 사고발생으로 인한 보상금의 지불액수 등을 고려하여 점차 자립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보험업무의 전달체제확립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청소년봉사활동만을 고려한다고 할 때,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수요기관은 일차적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활동터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시·도 및 시·군·구 센터는 이들 활동터전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에 등록되어 있고, 등록되어 있는 지도자가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도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도나 시·군·구 센터는 이러한 경우 하나의 지역조합이 되며 중앙의 조합은 이들 지역조합에서의 보험기여금과 보상금을 집중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달체제라고 하겠다.

② 사적보험시장에서 운영하되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형태

첫째의 방안으로는 일본의 경우, 그리고 국내 보험상품에서와 같이 자원봉사보험만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회사에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독점적으로 자원봉사보험업무를 취급할 수 있거나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최소한 비영리 성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보험회사의 일반 사무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봉사센터들이 봉사활동 가입신청서와 보험료를 납부받는 업무를 담당하고 이를 중앙 센터가 취합, 보험사와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형태를 취함으로써 중간 이윤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

적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으며 보상금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센터 역시 최소한 보험업무 일부를 대행함으로써 보험사로 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청소년봉사활동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방안으로는 국가가 보험회사에게 자원봉사보험업무를 위탁하되, 최소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대신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보험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액에 대한 재원확보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 역시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이외에 지난 1982년도부터 각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각급 학교를 회원으로 하여 실시되고 있는 사단법인체인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자원봉사활동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공제회의 경우 공제급부에 있어서 보상범위가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학교수업 또는 특별활동 중' 또는 '기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교내외 활동 중'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교사의 현장지도가 병행되어야 하는데서 오는 문제점, 시·도 교육청 관할 구역별로 법인을 운영함으로써 재정조달능력의 한계와 보상액의 차이, 보상신청의 제약 등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앞의 제Ⅲ장에서 다룬 교사집단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실제 안전공제기금의 혜택범위는 극히 한정되어 학교내 활동 중 사고에서만 지급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주로 학교가 주관하는 활동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볼 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사고에는 사실상 보상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자원봉사보험의 관리·운영

1) 보험의 관리·운영

청소년자원봉사보험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형태로 운영하든, 보험시장에 맡기되 공공기관이나 국가가 일정부분 개입·지원하는 형태를 취하든 조합(공공기관)의 성격, 또는 보험사의 선정, 그리고 보험업무의 운영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우선 위의 대안을 고려할 때, 청소년자원봉사 보험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국 규모의 청소년자원봉사 보험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의 공공기관의 성격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자원봉사 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조합이거나 기존의 기관기능을 보완하여 설립되는 기관이 될 수도 있겠고, 국가로부터 자원봉사보험업무를 위임받아 보험사와 협약하기 위한 중앙 차원의 청소년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일 수도 있다.

어쨌든 중앙 차원의 공공기관이나 단체는 청소년자원봉사업무를 수행하는 지방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방조직은 최소한 시·군·구 단위까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시·군·구 단위까지 설치되어있는 자원봉사업무수행기관으로는 시·군·구 자원봉사센터가 있어 이를 조합의 형태로 또는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내 청소년들의 보험가입업무를 담당하는 일차적 기관이 되고 시·도 단위에서는 16개 시·도에 설치·운영 중에 있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이를 수합하고 시·도별로 보험가입상황을 중앙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나

(가칭) 전국청소년자원봉사진흥재단 등으로 제출하면 중앙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수합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든 조합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공공기관이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앙 차원의 공공기관이 청소년자원봉사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이며, 시·도와 시·군·구 센터는 단순 보험업무 취급, 예컨대 활동신청서 보험가입신청서 비치 및 접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동시에 각 센터는 청소년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별도의 보험모집과정이나 별도의 사무실 확보, 운영에 따르는 불필요한 제 경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한편 중앙 차원의 재단(공공기관)은 보험사로부터 이러한 제 경비의 절감부분을 환급 받아 시·도나 시·군·구 센터에 분배하게 되고 일선 센터에서는 이러한 지원예산으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재 투입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조합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기금의 운용과 보험료의 운용을 통해서 청소년자원봉사보험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의 이자발생이나 기여금의 축적을 통해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재 투자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여러 가지 효과 외에도 보험을 운영함으로써 매년 청소년봉사활동 사고발생건수와 보험금 지급액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으로 해서 보험료의 과도한 부과를 억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자원봉사보험기간의 설정문제이다. 보험기간이란 보험자가 손해보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보험사고 발생의 시간적 한계인데, 보험자의 위험부담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이를 통상 책임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한다.

보험기간은 상법 제656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개시하여 그 종료일까지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자의 책임기간을 명백히 하고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막기 위하여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시점과 종료되는 시점의 시간까지를 밝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자원봉사보험의 경우 현행 학제를 고려하여 3년 단위로 운영할 수도 있겠으나 보험료 부담을 감안할 때, 대체로 매년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고 봉사활동이 실제로 시작되는 4월 1일 오전 0시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 24시에 끝나는 1년 단위계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2) 보험의 종류와 대상활동

청소년들이 봉사활동 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담보하고 어떠한 활동에 대하여 적용할 것인가는 청소년자원봉사보험의 내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우선 담보의 위험으로는 기본적으로 봉사자 자신의 사망, 후유 장애, 입원 및 통원, 수술 등의 상해사고를 들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인·대물에 대한 배상사고로 구분할 수 있다. 상해사고는 봉사자가 봉사활동중의 사고에 의해 상해를 입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고이며, 배상사고는 봉사자가 봉사활동 중에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다든지, 타인의 물건 파손 등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사고를 말한다. 이외에도 선택적으로 담보위험을 추가하여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위험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인지가 먼저 규명되어야 하고 고의에 의한 사고인지, 천재에 의한 사고인지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적용될 수도 있고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자원봉사보험이 하나의 상품으로 개발된다고 할 때는 가능한 담보위험의 종류를 열거하여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동시에 봉사활동 사고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지역별 지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와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할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도 명시되어야 한다.

V. 요약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들의 인성개발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하나의 제도로써 시행되고 있어서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어떠한 형태로 마련하여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와 개별 청소년들이 어떠한 형태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사고 위험이 큰 봉사활동은 어떠한 활동들이 있으며, 이러한 사고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들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각각에 대해 조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사고 발생시 이를 보상하는 책임소재와 보상하는 방법으로 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해 조사집단들이 각각 어떠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보험운영제도에 대한 대안분석과 최종의 대안을 선정·제시하였다.

1) 조사결과 요약

(1) 청소년봉사활동 참여실태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는 교사집단(T집단)조사에서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학생 개개인의 계획에 의해 참여하는 형태가 가장 많고(29%), 다음이 학교에서 교사가 주관하는 형태(29%)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학부모 집단(P집단)에서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참여한다가 가장 많고(39%), 다음이 학생 개개인의 계획에 의해 참여하는 형태(28%)로 나타났다. 그러나 T집단의 경우에는 학교가 주관하는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청소년 개개인의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참여형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두 집단 모두를 동시에 고려한다면 학생 개개인의 계획에 의해 참여하는 형태가 많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한 봉사활동으로는 T집단에서의 경우 학생들이 참여했던 활동으로 학교내 봉사활동이 가장 많았으며(64명중 60명 응답, 96.8%), 다음이 학교주변 정화캠페인 활동(83.9%), 환경보존 캠페인활동(75.8%)의 순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P집단의 경우에서는 역시 학교내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자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82.8%), 다음이 공공기관 일손 돕기 활동(62.5%)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참여한 적이 있는 활동으로 학교내 봉사활동이 가장 많고, 상대적으로 T집단에서는 학교주변 정화 캠페인 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루어 볼 때 T집단의 경우 학교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편중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봉사활동 사고와 책임소재

청소년들이 봉사활동 중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두 집단 모두 매우 낮은 빈도를 보였으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즉 T집단에서의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발생할 수 있거나,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93.6%이며, P집단에

서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82.8%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봉사활동 중사고 발생가능성을 매우 높게 인지하고 있다.

특히 봉사활동 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대해서 이를 우선 순위로 보면, T집단의 경우 교통안전지도활동, 수상안전요원활동, 농촌 베타기활동 순으로 나타났고, P집단에서도 농촌 베타기활동, 수상안전요원활동, 교통안전지도활동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두 집단 공통으로 위의 3개 활동이 사고 위험이 큰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봉사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느냐에 대해서는 T집단의 경우 국가와 학교, 그리고 봉사자가 공통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고(32.3%), 다음이 국가에 100%책임이 있다가 21%, 국가와 학교가 각각 50%씩의 책임이 있다가 19.4%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P집단의 경우에는 국가와 학교, 그리고 봉사자 공통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한 경우가 59.4%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국가와 학교가 각각 50%씩의 책임이 있다가 12.5%, 국가가 100% 책임이 있다가 10.9%를 보여주고 있어 청소년들이 봉사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자원봉사보험의 도입과 운영형태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상책으로 어떠한 형태의 보험제도가 적절하겠는가에 대해서 T집단에서는 국가가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시 국가가 보상하여야 한다는 국가보험 운영형태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38.7%), 다음이 학생이 보험가입비를 부담하되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의 공공기관이 보험사와 협약하여 가입비를 최소화하는 형태(13%), 또는 학교재정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13%)를 동일한 비율로 선호하고 있다. 이에 대해 P집단의 경우에는 학생이 보험가입비를 부담하되,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 공공기관이 보험

사와 협약하여 가입비를 최소화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고(28.1%), 다음이 국가가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시 국가가 보상하는 형태(25%)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봉사보험제도의 도입방안

청소년봉사활동은 청소년 자신은 물론 국가적 필요에 의해 실시되는 활동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청소년봉사활동을 내신성적과 연계하여 점수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이 봉사활동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가 또는 국가와 학교, 봉사자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든 청소년자원봉사보험이 하나의 제도로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의 보험운영측면에서 보면 최소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보험운영 - 비영리성, 보험적용 - 모든 활동대상과 활동내용에 대한 포괄성, 보험비용 - 최저 부담, 최고 보상의 원칙 등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자원봉사보험 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때 보험의 운영형태를 제시하기 위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제시와 대안들의 장단점 등 분석과정을 거쳐, 최종 대안을 선정·제시하였다.

가장 우선하는 대안으로는 국가가 자원봉사보험운영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형태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일차적으로 보험가입과 보상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이 가입하고 모든 봉사활동에 적용하는 대상과 내용의 포괄성이 적용되어야 한다. 국가가 보험료를 전액부담하는 운영형태보다는 국가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각각

일정비율로 부담하고, 보험요율의 결정은 경험통계가 축적되고 기금의 운영형편을 고려하여 직접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차선의 대안이 보다 현실적 운용에 있어 타당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의 대안으로 사적보험시장에 자원봉사보험의 기능을 맡기되 국가나 공공기관이 적절히 개입하는 형태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적보험시장의 보험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하되 국가가 부분적으로 책임지는 다소 소극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가 보험회사로 하여금 청소년자원봉사 보험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되, 보험료를 최소로 책정토록 유도하고, 가입의 형태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개개인이 임의로 가입하도록 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와 국가가 공동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 국가가 보험사를 지정하고 동시에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을 지정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사와 단체계약을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국가는 자원봉사보험이 비영리 성격으로 상품개발될 수 있도록 세제 상의 혜택 또는 독점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공기관은 지방조직을 통하여 보험업무에 적절히 개입·지원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공공기관은 새로이 신설하는 것보다는 중앙 차원에서는 현행의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도 단위에는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지방조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특별히 지정하는 것은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모든 시·도에 이미 설치되어 있다는 점, 실제로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 참여시 가입처리업무가 용이하다는 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비영리기관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보험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현행

보험업법상의 저축을 받는 경우, 조합의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지난 1991년부터 추진되어온 청소년수련활동은 정부의 청소년 육성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왔으며, 동시에 수련활동 부문보다도 많은 행·재정 지원을 받아 왔으나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의 교육현실에 비추어 볼 때, 참여시간의 부족과 입시에 대한 부담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참여동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사후대책이 미흡한데서도 크게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참여 동기를 강화하는 대책의 하나로 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여부가 곧 청소년의 활동 참여 동기를 신장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다.

더욱이 기존의 수련활동과 더불어 지난 '95. 5. 31 교육개혁 조치로 인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학생 봉사활동이 제도화됨에 따라 참여 동기강화를 위한 안전사고 관련 사전·사후대책은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대책은 실제 사고가 발생되거나 또는 사고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사후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필요로 한다. 그 동안 우리는 정부나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의 결과로 엄청난 사고를 보아왔다. 청소년봉사활동 역시 활동 초기부터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학부모, 교사나

지도자들로부터 사고책임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어 왔다. 그리고 항상 상존 하고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으로 인하여 학교나 교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해 활동이 자연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모든 국민이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동시에 이를 제도적·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활동이라고 본다면, 국가는 이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에 있어 더 이상 소홀하거나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에 국가가 향후 청소년자원봉사정책에 포함하여야 할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사후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봉사활동은 수련활동 못지 않게 활동에 따라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와 가정 이외에 다양한 사회상황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 중 새로운 상황에 부딪치게 되는 경우 상황을 타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봉사활동이 수반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은 물론 위험이 수반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예컨대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농촌환경이 가지는 여러 가지 지역특성에 대해 사전교육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내용에 따라 사고발생시 응급처치법, 각종 농기구를 다루는 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수질환경실태 조사를 위한 봉사활동의 경우, 익사사고 등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봉사활동 안전교육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학교가 중심이 되어 실시되어야 하지만, 지역사회 청소년자원봉사센터나

봉사활동 수요처 등에서도 반드시 해당 봉사활동에 따른 사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한한 안전을 위한 시청각 교육자료 등도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청소년봉사활동 지도를 위한 인턴제를 도입, 봉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청소년 수련활동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의 근거에 의해 생활권이나 자연권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나름대로 활동을 지도하고 있지만 봉사활동 지도의 경우 대부분 자원봉사지도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이들 자원봉사지도자는 활동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봉사활동 지도에 참여율이 극히 낮고, 실제 사고 발생시 그 책임을 자원지도자에게 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주관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담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교사들의 입장지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에 있고, 지역사회내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지도자의 경우에도 그 수가 극히 한정되어 실제 활동현장에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안전과 관련하여 지도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율도 그만큼 크다고 보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도자 역시 인솔 및 지도 소홀 등으로 일단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본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는 현행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청소년지도자 인턴제를 도입하여 봉사활동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대학의 청소년지도학과를 졸업하고도 미취업 상태에 있는 고급인력들이 많아 이들을 봉사활동 유급지도자로 활용할 때 새로운 고용창출의 효과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방안의 효과적 측면은 미취업 청소년지도학과 졸업자에게는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사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동시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최소 비용을 지급

하고도 현장 지도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아울러 유능한 유급 지도자는 향후 인원 채용시 곧 바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청소년봉사활동보험 제도로입과 운영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 학교 당국 역시 활동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봉사활동 참여율이 저조하고 학교의 교사나 센터의 지도자들의 경우에도 청소년봉사활동 지도·인솔을 꺼려하거나 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봉사활동 중에 실제 사고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책임 등으로 인해 노출이 되지 않고 음성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결과적으로 지도자와 청소년간의 경제적 부담, 또는 갈등관계를 야기시키게 된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음성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양성화시켜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국가가 자원봉사활동보험 개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자원봉사보험개발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특히 요청되는 것은 청소년봉사활동을 국가가 제도화하였고, 국가의 청소년 교육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넷째, 단계적으로 청소년활동 안전보험제도로의 확대적용이 필요하다.

현행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수련시설이나 단체에서 청소년 활동과 관련하여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私的) 보험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자신 또는 시설이나 단체

를 운영하는 운영자에 많은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비용 부담이 어떠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없이 청소년의 활동 참여 위축, 시설·단체의 가입비용 부담으로 인한 재정적 악화, 양질의 서비스 제공 미흡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적 필요에 의해 공공의 성격으로 추진되는 청소년 활동이 안전대책을 위한 비용이라고 하는 경제적 부담을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이는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청소년 육성이라고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많은 차질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는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장려책의 일환으로, 또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청소년 봉사활동을 비롯하여 수련활동, 단체활동 등에 적용되는 보험제도를 시급히 도입하여야 한다.

우선 개발되어야 할 청소년봉사활동 보험은 보험의 제도의 성격과 도입 방향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비영리성격으로 가능한 부담이 적게 하여 다수의 청소년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물론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이지만 현재의 국가 재정을 고려할 때 사회보험의 운영형태를 가미하여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더불어 국가가 일정액을 보험료로 부담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이외에도 완전한 사적보험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보험회사와 절충하는 형태 또는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보험업무를 위임받아 청소년자원봉사 관련 공공기관이 이를 대행한다든지 공공기관이 별도의 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 또는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보험업무를 처리토록 하되 별도의 감면혜택을 주어 비영리 성격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는 일차적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가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기술하였듯이 국가 재정의 어려움으로 필요한 재원의 전부를 확보하기보다는 보험업무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금확보, 또는 공공기관에 위임하는 경우 그 수임기관에 일정액의 보험운영기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 재원으로는 현행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수련시설, 청소년 단체의 수련활동 활성화 등의 운영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육성기금의 일부를 출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섯째, 보험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청소년기본법에는 ‘시·도지사는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나 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로 하여금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제33조)과 동 법 시행령 제 4조의 수련활동영역의 활성화 시책의 하나로 ‘수련활동 안전보험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 최근에 와서야 일부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단체에서는 수련 또는 단체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 보험에 가입하여 활동에 참가하도록 하거나, 수련시설이나 단체에서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 참가비 납부시 아예 보험 가입비를 포함하여 납부토록 하는 사례가 있다. 특히 학생 자원봉사가 제도화됨에 따라 사적보험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이를 특화하여 자원봉사활동과도 관련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있거나 기존의 상해보험이나 여행보험상품 등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변용,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현행의 청소년기본법 제 33조의 규정이 단순히 선언적 성격의 조문이라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겠다.

첫째, 현행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임의조항으로서 강제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이를 임의로 적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사고 당사자에 대한 의무적, 법적 책임은 없고 다만, 민사상의 책임은 있을 수 있어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

둘째, 보험가입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나 수련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엄격히 말하면 법의 내용이 불비함으로 인해서 청소년 단체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단체 등은 보험가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활동에 따른 위험노출과 활동위축은 그만큼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행히 지난 '98년 7. 28일자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에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검토사항의 하나로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공제회 설치·운영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는 이를 근거로 하여 안전사고와 관련 공제회 설치·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험제도 도입과 관련 상호간의 장단점을 나름대로 분석하여 공청회 등을 거쳐 하루빨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6),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학생봉사활동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부
- 교육개혁위원회(1995),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서울: 교육개혁위원회
- 김동희(1989),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서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 김정명 외 4인(1991), 청소년활동 동기부여 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김정배 · 정화수(1997), 청소년자원봉사 정책모형 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주동 · 이원근(1997), 보험학원론, 서울: 형설출판사
- 문화체육부(1996), 수련거리백과 발간 기초조사연구 참고자료, 서울: 문화체육부
- 문화체육부(1997),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체육부
- 문화관광부(1998),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 서울: 문화관광부
- 방갑수(1996), 최신보험론, 서울: 박영사
- 송광성 · 박성희 · 정문성 · 김경준(1993), 청소년 수련활동 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신섭중(1992), 사회보장정책론, 서울: 대학출판사,
- 윤영득(1995), 복지경제학, 서울: 형설출판사,
- 이광호 · 노혁 · 구정화 · 맹영임 · 길은배(1997), 청소년 수련활동 운영체계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만우(1993), 후생경제학, 서울: 태진출판사
- 이은섭(1996), 보험론, 서울: 삼영사
- 함병수 · 이민희 · 김경준 · 김정주(1997),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의 평가 및 수립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1993), 청소년활동론,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Allan H. Willett(1951), *The Economic Theory of Risk and Insuranc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Frank H. Knight(1921), *Risk, Uncertainty and Profit*,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George E. Rejda(1995), *Principles of Risk and Insuranc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Lalley, E. P(1982), *Corporate Uncertainty & Risk Management*, N.Y.

大阪ボランティア協會編(1981), ボランティア- 参加する福祉, 일본: 주식회사 ミネルヴァ書房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iews of teachers and parents of students on safety accidents which may occur in the process of students' voluntary activities and to suggest types of insurance, and plans as an institutional safety net.

62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in charge of voluntary activities and 64 parents of students serving at 16 youth voluntary centers were covered by in this study.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the respondents indicated that frequencies of actual accidents are very low, while they thought possibilities of accidents are very high.

Second, they emphasized that government should assume to some degree of responsibility for accidents when students have an accident on the way to voluntary work.

Third, it was suggested that operation type of social insurance imposing expenses on government and students or an alternative plan entrusting duty to non-profit organizations such as youth voluntary centers is the most suitable type for operation of insurance.

Some important policy suggestions based up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safety education for service activity should be put in practice.

Second, it is necessary that the voluntary leaders should be trained and place them in the fields.

Third, the insurance should be introduced and operated under government's intervention.

Fourth, the legal basis and the institutional support program for insurance system should be planned by the government.

볼런티어활동 보험 보통보험 약관*

제 1 장 정 의 조 항

제 1 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 있어서 각 명칭에 사용되는 용어는 각각 다음의 정의에 따른다.

(1) 볼런티어 활동 추진 법인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타인이나 사회에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의 추진 또는 사회복지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나라 및 지방 공공단체를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2) 볼런티어 활동 단체

볼런티어 활동 추진 법인으로 부터의 위촉 또는 볼런티어 활동 추진 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3) 볼런티어 활동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타인이나 사회의 공헌을 목적으로 하며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또 활동에는 활동을 위한 학습회 또는 회의 등을 포함하며, 유상의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통비, 식사비등 비용 변상 정도의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는 유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 자료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자원봉사보험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대장성에서 인가한 자원봉사보험 약관을 제시한 것이다(자료출처 : 사회복지법인 전국사회복지협의회 (1998). 『자원봉사활동 보험』).

**본 약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별표1~별표6은 원문에 생략되어 있음.

- ㄱ. 소속 불런티어 활동 단체의 회칙(명칭은 상관없습니다)에 의해 기획, 입안된활동
- ㄴ. 불런티어 활동 추진 법인으로 부터의 위촉 또는 불런티어 활동 추진법인에 신고한 활동

(4) 불런티어 활동 중

불런티어 활동을 행하고 있는 동안을 말하며 불런티어 활동을 행하는 목적을 가진 통상의 경로에 의한 주거 (주거 이외의 시설을 기점으로 하는 경우는 「시설」로 바꿉니다) 를 출발해서부터 주거 (주거 이외의 시설에 돌아가는 경우는 「시설」로 바꿉니다)에 도착 하기까지를 포함합니다.

(5) 불런티어

불런티어 활동을 하는 자연인으로 다음의 항목 중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ㄱ. 불런티어 활동 단체의 구성원
- ㄴ. 불런티어 활동 추진 법인의 위촉을 받은 자 또는 불런티어 활동 추진 법인에 등록한 자

(6) 보험기간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 기간을 말합니다. 단 보험 계약이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도에 효력상실 된다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상실일 또는 해제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 2 장 배상 책임 담보 조항

제 1 조 (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

1. 당사는 이 담보 조항과 함께 제1장 정의 조항 및 제4장 일반 조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이하 본 담보 조항 및 제4장 일반 조항에 있어서 「사고」라 합니다)에 대해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제2호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관물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가진자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 배상 책임에 한합니다. 이하 이 담보 조항에 있어서 「배상 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하는 것에 따른 손해(이하 본 담보 조항 및 제4장 일반 조항에 있어서 「손해」라 합니다)에 대해 보험금을 지불합니다.

(1)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에 의한 타인의 신체장해(장해에 기인하는 사망을 포함합니다. 이하 본 담보 조항에 있어서도 같습니다) 또는 타인의 재물의 멸실, 손해 또는 오손(이하 본 담보조항에 있어서 「손괴」라고 합니다)

ㄱ. 보험 증권 기재 불런티어의 불런티어 활동 중에 발생하는 우연한 사유

ㄴ. 보험 증권 기재의 불런티어가 불런티어 활동과 함께 제공된 재물 (이하 본 담보 조항에 있어서 「제공물」이라 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유

ㄷ. 보험 증권 기재의 불런티어의 불런티어 활동의 결과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유

(2) 보험증권 기재의 불런티어가 불런티어 활동과 함께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관물의 우연한 사유에 의한 손괴, 분실 또는 도취(사취를 포함합니다)

2. 앞항의 규정은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 정해진 피보험자마다 별개로 적용하고 피 보험자 상호간의 관계는 각각 서로 타인으로 봅니다. 단 다음에 열거한 자에 대해서는 타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배우자
- (2)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의 친족
- (3)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별거의 미혼의 자녀

제 2 조 (피보험자의 범위)

본 담보 조항에 있어서 피보험자란 다음에 열거한 자를 말합니다.

- (1) 보험 증권 기재의 볼런티어
- (2) 앞에 열거한 자의 감독 의무자(감독 의무자를 대신하여 감독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제 3 조 (보험금을 지불하는 손해의 범위)

당사가 제1조 (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불하는 손해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에 한합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해 지불하는 손해 배상금(배상금의 지불로 생기는 대위취득(代位取得)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제한 것)
- (2) 제8조(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 제1항 제1호에 따르는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필요에 따른 지출 또는 유익한 비용. 단 재공물 또는 재공물의 일부가 되는 것 외의 재물의 회수, 검사, 수리, 교환 그 외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비용은 제외합니다)
- (3) 제8조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 제1항 제2호에 언급한 수속에 따라 필요에 의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필요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 (4) 제8조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는 소송, 조정, 화해 또는 중재에 대해 당사의 승인 하에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 (5) 제9조(당사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의 해결) 제1항에 따르는 당사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의 해결에 협력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제 4 조 (보험금의 지불액)

1. 앞조항에서 정한 손해 중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대해서는 1회의 사고에 의해 발생된 손해의 합계액이 보험 증권 기재의 면책 금액(이하 본 담보 조항에 있어서 「면책 금액」이라 합니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보험 증권 기재의 보험 금액(이하 본 담보 조항에 있어서 「보험 금액」이라 합니다)을 한도로하여 보험금을 지불합니다. 또 전조항 제2호에 따르는 손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조치를 강구한 뒤에 손해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사는 보험금을 지불합니다.

2. 앞조항에서 정한 손해 중 제4호에 대해서는 그 전액에 대해 보험금을 지불합니다. 단 앞조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각 손해의 합계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먼저 발생한 손해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불합니다.

3. 앞조항에서 정한 손해 중 제5호에 대해서는 그 전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불합니다.

제 5 조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1)

당사는 다음의 각항 중 해당되는 사유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 (1)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 (2) 지진, 화산 또는 해일
- (3)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정권 탈취, 내란, 무장 반란 외 이와

같은 사변 또는 폭동(이 담보 조항에 있어서는 군중 또는 다수의 집단행동에 의한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있어서 현저하게 평온이 깨어지고 치안 유지상 중대한 사태를 인정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4) 핵연료 물질 (이미 시용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본 항에 있어서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오염된 물건(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의 방사성, 폭발성 그외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 (5) 앞의 (3)의 사유에 수반하여 생기는 사고 또는 이들에 따르는 질서의 혼란에 기인하여 생기는 사고
- (6) (4)이외의 방사선 노출 또는 방사능 오염
- (7) 피보험자의 심신 상실에 기인하는 사고
- (8) 피보험자의 또는 피보험자의 지도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사고
- (9) 항공기, 자동차 또는 총기(공기총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
- (10)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법령에 위반한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한 제공물에 기인하는 사고
- (11) 제공물 또는 볼런티어 활동의 결과가 소기의 효능,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고, 단 제공물의 본래 의도하지 못한 악영향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12) 피보험자 직업상의 업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사고
- (13)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자 그외 피보험자의 업무 보조자에 의해 다음에 열거한 업무의 수행에 기인하는 사고

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진료, 치료, 간호, 질병의 예방, 구급 구명조치 또는 사체의 검안(의료용의 기구, 기계 또는 장치를 상기의 위해 사용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ㄴ. 의약품 또는 의료 용구의 조제, 조정, 감정, 수여 또는 수여의 지시
- ㄷ. 안마 마사지 지압사, 침술사, 유도정복사, 이학요법사 또는 작업요법사 등의 자격을 가진 직업인이 그 자격을 가지고 행하는 기술

제 6 조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2)

당사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와 타인과의 사이에 손해 배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되는 배상 책임
- (2) 제공물의 결함에 따른 제공물 자체의 손괴에 대한 배상 책임

제 7 조 (사고의 통지)

1. 피보험자가 사고 또는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되는 사유의 발생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고 또는 사유 발생의 일시, 장소, 피해의 상황, 사고 또는 사유의 원인이 된 불런티어 활동의 개요, 피해자의 주소, 성명 및 이들 사항에 대한 증인이 있을 경우 그사람의 주소, 성명을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앞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에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앞의 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사는 그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 8 조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

1.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앞의 제1항의 사고 또는 이유의 발생을 알고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 또는 수습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1)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응급, 긴급의 조치
- (2) 제3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에 필요한 수속

2.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조정, 화해 또는 중재에 붙이려는 경우에는 즉시 당사에 통지하고 서면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됩니다.

3.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배상 책임에 대한 소송을 받고 또는 조정, 화해, 또는 중재에 붙여졌을 경우에는 즉시 당사에 통지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4.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전에 당사의 서면에 의한 확실한 승인을 얻지않고 배상 책임 전부 또는 일부의 승인을 하면 안됩니다.

5.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앞의 각 조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사가 지불해야하는 보험금액을 다음 각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 (1) 제1항에 대해서는 방지 또는 경감이 가능했었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공제합니다.
- (2)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 (3) 앞항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에게 보상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합니다.

제 9 조 (당사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의 해결)

1. 당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자기 비용으로 손해 배상 청구의 해결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당사의 요구에 따라 그 수행에 따라 당사에 협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앞항의 협력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 (보험금의 청구)

1.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할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서, 손해 및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사고가 불런티어활동으로 기인하였다는 것을 불런티어 활동 단체 또는 불런티어 활동 추진 법인이 증명한 서류를 보험 증권에 첨부하여 손해액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당사가 승인한 유예기간내에 당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당사가 손해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 보험자는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 피보험자가 앞 2항의 서류에 대해 고의로 부실하게 기재하고 또는 사실을 숨기고 또는 증거가 되는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및 앞 2항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사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 11 조 (다른 보험 계약과의 관계)

1. 본 보험 계약과 중복되는 다른 보험 계약 (명칭은 상관 없습니다.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이 있을 경우 다음 제1호에 언급한 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는 당사는 제2호에 언급한 액의 제1호에 언급한 액에 대한 비율을 손해액에 반영하여 지불 보험금을 결정 합니다.

(1) 각각의 보험 계약에 대해 다른 보험 계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정산한 지불 보험금의 합계액

(2) 다른 보험 계약이 없다고 간주하고 산출한 당사의 지불 보험금액

2. 앞항의 손해액은 각각의 보험 계약에 면책 금액의 정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낮은 면책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제 3 장 상 해 담 보 조 항

제 1 조 (보험금을 지불할 경우)

1. 당사는 본 담보 조항과 함께 제 1장 정의조항 및 제4장 일반 조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불런티어 활동중의 돌발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 본 담보 조항 및 제4장 일반 조항에 있어서 「사고」라 합니다)에 의한 그 신체에 입힌 상해(이하 제4장 일반 조항에 있어서 「상해」라 합니다)에 대해 보험금(사망보험금, 후유 장애 보험금, 입원 보험금, 수술 보험금 및 통원 보험금을 말합니다)을 지불 합니다.

2. 앞항의 상해에는 신체외부로부터 유독 가스 또는 유독 물질을 우연, 또는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경우에 급격하게 발생하는 중독증상 (계속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기는 중독 증상은 제외합니다)을 포함합니다. 단 세균성 식물 중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 2 조 (피보험자의 범위)

본 담보 조항에 있어서 피보험자란 보험 증권 기재의 불런티어를 말합니다.

제 3 조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1)

1. 당사는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생기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 (1) 보험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의 고의
- (2) 보험금을 받는자의 고의. 단 그사람이 사망 보험금의 일부의 수취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3) 피보험자의 자살 행위, 범죄행위 또는 투쟁행위
- (4) 피보험자가 일본 국내의 법령에 정해진 운전 자격을 가지지 않거나, 또는 음주, 혹은 마약, 대마, 아편, 각성제, 신나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위험한 상태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자전거를 운전하는 중에 생기는 사고
- (5)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 상실
-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조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외의 의료 처치, 단 당사가 보험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7) 피보험자에 대한 형의 집행
- (8) 지진, 분화 또는 해일
- (9)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정권 탈취, 내란, 무장 반란 그외 이와 유사한 사변 또는 폭동(본 담보 조항에 있어서는 군중 또는 다수의 집단의 행동에 따라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서 현저히 평온이 깨져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가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10) 핵연료물질 (이미 사용된 연료를 포함 합니다. 이하 이항에 있어서

도 마찬가지입니다)또는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건(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외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11) 앞 3호의 사유에 수반하여 생기는 사고 또는 이들과 함께하는 질서의 혼란에서 생기는 사고

(12) 제 10항 이외의 방사선 투시 또는 방사능 오염

2. 당사는 원인에 관계없이 경부증후군(편타증) 또는 요통으로 다른 증상이없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 4 조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2)

당사는 피보험자가 다음의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에 따라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별표 1에 언급한 운동 등을 하고 있는 사이

(2) 피보험자가 자동차, 원동기 자전거, 모터보트(수상 오토바이를 포함합니다), 스노모빌, 그외 이와 유사한 것들의 경기, 경쟁, 흥행(연습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성능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 또는 조정을 말합니다)을 하고 있는 동안, 단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자전거를 이용해 도로상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항공운송 사업자가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항공기 (정기편, 부정기편 구별없이) 이외 다른 항공기(글라이더 및 비행풍선은 제외합니다)를 피보험자가 조정하고 있는 동안

(4) 다음에 언급한 불런티어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ㄱ. 해난 구조 불런티어 활동

- ㄴ. 산악 구조 불런티어 활동
- ㄷ. 불을 사용하는 삼림보호 불런티어 활동
- ㄹ. 자동톱을 사용하는 삼림 불런티어 활동
- ㅁ. 총기를 사용하여 해로운 들짐승을 제거하는 불런티어 활동

(5)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

제 5 조 (사망 보험금의 지불)

1. 당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의 상해를 입어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을 포함 18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 증권 기재의 보험 금액(이하 본 담보 조항에 있어서 「보험 금액」이라 합니다.)의 전액(이미 지불한 후유장해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에서 이미 지불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사망 보험금으로 사망 보험금 수취인(사망 보험금 수취인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지불합니다.

2. 앞항에 있어 사망 보험금 수취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로 새로운 사망 보험금 수취인 지정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망 보험금 수취인의 사망시의 법정 상속인을 사망 보험금 수취인으로 합니다.

제 6 조 (후유 장애 보험금의 지불)

1. 당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의 결과로써 사고일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후유장해 (신체에 상처가 남아 장래에 있어서도 회복할 수 없는 기능의 중대한 장애 또는 신체의 일부의 결손으로 인한 상해가 치료된후에 것을 말합니다. 이하 본 담보 조항에 있어서도 같습니다)가 생긴 경우에는 보험금액에 별표2의 각항에 언급된 비율의 금액을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불합니다.

2. 앞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사고일을 포함하여 180일을 지난 후에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일 경우에는 당사는 사고일을 포함하여 181일째에 의사(피보험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피보험자 이외의 의사를 말합니다. 이하 본 담보조항에 있어서도 같습니다.)의 진단을 근거로 후유장애의 정도를 인정하고 휴유 장애 보험금을 지불합니다.

3. 제1항에서 말한 별표2의 각항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신체장애의 정도에 따라 별표2의 각항의 구분에 준하여 휴유장애 보험금의 지불액을 결정합니다. 단 별표2의 제1항 3호, 4호, 제2항 3호, 제4항 4호 및 제5항 2호에 규정하는 기능 장애에 이르지 않는 장애에 대해서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4. 동일사고에 의한 2종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는 각각에 대해 앞의 3항을 적용하여 그 합계액을 지불합니다. 단 별표2의 제7항 제8항 및 제9항에 규정하는 상체(어깨 및 팔)또는 하체(다리 또는 발)의 후유장애에 대한 후유장애 보험금은 보험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5. 이미 신체장애가 있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의 상해를 입고 그직접의 결과로써 새로운 후유 장애가 가중됨에 따라 별표3의 각항에 해당한 경우에는 가중된후의 후유 장애의 상태에 대응하는 별표2의 각항에서 언급된 비율을 적용하여 후유 장애 보험금을 지불합니다. 단 이미 있던 신체의 장애(이하 본 담보 조항에 있어서「기존장애」라 합니다)가 이 보험 계약의 후유장애 보험금의 지불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

는 가중된 후의 후유장해의 상태에 대응하는 비율에서 기존장해에 대응하는 비율을 빼고 얻어진 비율에 따라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불합니다.

6. 앞의 각항을 기초로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액은 보험기간을 통한 보험금액의 사용을 한도로 합니다.

제 7 조 (입원보험금 및 수술보험금의 지불)

1. 당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의 결과로써 일상의 업무에 종사 하는 일 또는 일상의 생활이 불가능해져 나아가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사고일을 포함하여 180일을 한도로 1일에 보험증권 기재의 입원 보험금 일액 (이하 본 담보 조항에 있어서 「입원 보험금일액」이라합니다.)을 입원 보험금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지불합니다.

(1) 입원한 경우.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자택등에서 치료가 곤란하기 때문에 병원 또는 진료소에 입원하여 항상 의사의 관리하에서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본 담보 조항에 있어서 같습니다.)

(2) 별표 4의 각항에 해당하고 나아가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앞항의 입원 보험금의 지불을 받을수 있는 기간 중 새로이 다른 상해를 입었다해도 당사는 중복해서 앞항의 입원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제1항의 입원 보험금이 지불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사고일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제1항의 입원 보험금을 지불해야하는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별표5에 언급한 수술을 받았을

때는 입원 보험금 일일액에 수술의 종류에 따라 별표5에서 정한 비율(1 사고에 준한 상해에 대해 2 이상의 수술을 받았을 때는 그중 최고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술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 지불합니다. 단 1 사고에 준한 상해에 대해서 1회 수술에 한합니다.

제 8 조 (통원 보험금의 지불)

1. 당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의 결과로써 일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 또는 일상의 생활에 지장 등으로 인하여 통원한 경우는 그 일수에 대해 90일을 한도로 1일당 보험 증권 기재의 통원보험금 일액을 통원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불합니다. 단지 일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 또는 일상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완치된 이후의 통원에 대해서는 통원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2. 앞항의 통원이란 의사에 의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병원 또는 진료소를 방문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것(왕진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가 통원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상해의 부위, 상태에 따라 일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 또는 일상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당사가 인정할 때는 그 일수에 대해 제1항에 규정한 통원 보험금을 지불합니다.

4. 당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7조(입원 보험금 및 수술 보험금의 지불) 제1항에 규정하는 입원 보험금이 지불되어야 하는 기간 중의 통원에 대해서는 통원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5.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사고일을 포함하여 180일을 경과한

후의 통원에 대해서는 통원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6. 피보험자가 통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 새로운 상해를 입었을 때도 당사는 중복해서 통원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 9 조 (사망의 추정)

피보험자가 탑승하고 있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 불명이 되고부터 또는 조난하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을 경과하여도 피보험자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 불명이 된 날 또는 조난한 날에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의 상해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 10 조 (다른 신체장애 또는 질병의 영향)

1.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의 상해를 입었을 때 이미 존재하고 있던 신체장애 또는 질병의 영향 및 제1조(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의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의한 제1조(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의 상해가 심한 경우에는 당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경우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해서 지불합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고 또는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을 자가 치료를 방해하여 제1조(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의 상해가 심하게 된 경우에도 앞항과 같은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불합니다.

제 11 조 (사고의 뚝지)

1.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의 상해를 입었을 때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을 자(이들의 대리인을 포함합니다. 이하 본조항에 있어서도 같습니다)는 그 원인이 된 사고일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의 사고 발생의 상황, 상해의 정도 및 상해의 원인이 된 불런티어 활동의 개요를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사가 설명을 요구할 경우 또는 피보험자의 신체의 진찰 또는 사체의 검안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피보험자가 탑승하고 있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이 된 경우 또는 조난한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을 자는 해당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이 된날 또는 조난된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행방불명 또는 조난 발생의 상황을 당사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을 자가 당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앞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또는 그 통지 또는 설명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당사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 12 조 (보험금의 청구)

1.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을 자가 보험금을 받으려 할 경우에는 별표6에 정한 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당사는 앞항 이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앞항 제출서류의 일부 생략을 인정할 경우가 있습니다.

3.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을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제출서류 첨부사실을 알리지 않고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당사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 (당사지정 의사에 의한 진찰 등의 요구)

1. 당사는 제11조(사고의 통지)의 통지 또는 앞조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당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당사가 지정하는 의사에 의한 피보험자의 신체의 진찰 또는 사체의 검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앞항의 당사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당사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 4 장 일 반 조 항

제 1 조 (보험 기간과 당사의 지를 책임의 관계)

1. 당사는 보험 기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험금을 지불합니다.

2. 보험 기간이 개시하여도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는 그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 또는 상해 (이하 본조항에 있어서 「손해 등」이라 합니다) 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 2 조 (고지의무)

1. 보험 계약 체결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이들의 대리인을 포함합니다. 이하 본조항에 있어서 같습니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보험 계약 신청서 기재 사항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 당사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당사는 보험증권 기재의 보험 계약자의 주소로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고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앞항의 규정이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1) 앞항의 알리지 않은 사실 또는 부실하게 알린 사항이 없어졌을 때.
- (2) 당사가 보험 계약 체결시, 앞항의 알리지 않았던 사실 또는 부실하게 알린 것을 알았거나 또는 과실에 의해 이것을 알지 못했을 때.
- (3)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 계약 신청서 기재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정정 신청을 하고 당사가 이것을 승인했을 때. 또 당사는 정정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있어서 보험 계약 체결시, 보험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정정 해야하는 사실을 당사에 알려도 당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이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합니다.
- (4) 당사가 앞항에 알리지 않은 사실 또는 부실하게 알린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0일을 경과했을 때.

3. 사고가 발생한 후에 제1항의 해지가 이루어 졌을 경우에도 제9조(보험계약 해지의 효력)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사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미 보험금을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당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통지 의무)

1. 보험 계약 체결후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사실의 발생이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사전에, 책임을 돌릴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는 그 발생을 안후 지체없이 서면에 의한 그 사유를 당사에 통지하고 승인을 청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단, 그 사실이 없어진 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이 보험 계약과 중복되는 다른 보험 계약의 체결

(2) 보험계약 신청서 또는 보험 증권 기재 사항의 변경 (피보험자의 변경을 포함합니다)

2. 앞항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당사는 앞항의 사실이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당사가 앞항의 승인 청구서를 수령하기 까지 그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단 앞항 제2호에 언급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변경 후의 보험료가 변경전의 보험료보다 올라가지 않는다고 당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 4 조 (관리와 사고의 예방)

1.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평소에 사고의 발생 예방에 필요한 관리와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당사는 보험 기간중에 언제든지 사고 발생의 예방조치와 관리의 상황을 조사하고 미비한 점의 개선을 보험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앞항의 조사 또는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는 그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 5 조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 체결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1) 보험 계약에 관해 보험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을 자 (이들의 대리인을 포함합니다) 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
- (2) 타인을 위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그 대리인을 포함합니다)가 그 취지를 보험 계약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 (3)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이들의 대리인을 포함합니다)가 당사가 보험금을 지불해야하는 사고가 이미 발생했음을 알고 있었을 때

제 6 조 (보험계약의 무효의 특칙)

1. 이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복수의 경우에 있어서 다음의 각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을 때는 이 보험계약 자체를 유효로하고 해당 피보험자의 가입 신청에 대해서만 가입 신청일을 소급하여 무효로 합니다.

- (1) 가입 신청에 관해 피 보험자또는보험금을받을자(이들의대리인을포함합니다)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
- (2) 피 보험자(그 대리인을 포함합니다)가 당사가 보험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으며 가입 신청을 하였을 때

2. 당사는 앞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 신청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가 지불한 보험료 상당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 7 조 (보험계약의 해지)

1. 당사는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되어있는 보험계약자의 주소로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고 본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1) 제3조(통지의무) 제1항의 통지를 받은경우에 있어서 당사는 위험의 증가를 인정했을 때
- (2) 정당한 이유없이 제4조(관리와 사고의 예방)제2항의 조사 또는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 (3) 보험금 청구에 관해 보험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이들의 대리인을 포함합니다)에게 사기 행위가 있었을 때

2. 보험 계약자는 당사에 대한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고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 제1호에 언급한 당사의 해지권은 그 통지의 수령후 30일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제 8 조 (피보험자의 지위의 상실)

1. 이 보험 계약의 피 보험자가 복수의 경우에 있어서 피 보험자(그 대리인을 포함합니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가입 신청서 기재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당사에 알리지 않고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때는 보험 증권 기재의 보험 계약자의 주소로 당사의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고 해당 피 보험자는 가입 신청서로 소급하여 본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본 보험 계약의 피 보험자가 복수의 경우에 있어서 다음의 각항에 해당될 때는 보험증권 기재의 보험계약자의 주소로 당사의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고 해당 피보험자는 이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합니다.

- (1)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관리와 사고의 예방) 제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 (2) 제3조(통지의무) 제1항 제1호의 통지가 있었을 때
- (3) 제3조(통지의무)제2항제2호의 통지가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 위험이 증대되었다고 당사가 인정할 때.
- (4) 보험금 청구에 관해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을 자(그들의 대리인을 포함합니다)에 사기행위가 있을 때.

3. 당사가 앞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통지를 수령했을 경우에 있어서 그 통지를 수령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을 보험증권 기재의 보험계약자의 주소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때는 당사의 해당권리는 소멸합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당사는 해당 피보험자가 지불한 보험료 상당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 9 조 (보험계약 해지의 효력)

보험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제 10 조 (보험료의 반환 또는 청구-고지, 통지사항 승인의 경우)

1. 제2조(고지의무) 제2항 3호 또는 제3조(통지의무)제1항 2호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료를 변경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사는 그 결정하는 시점에 따라 보험료의 반환 또는 추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앞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 당사의 청구에 대해 보험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했을 때 당사는 추가 보험료 영수전에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 11 조 (보험료의 반환 - 보험계약의 무효, 효력상실의 경우)

1. 당사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이들의 대리인을 포함 합니다. 이하 본조항에 있어서 같습니다)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이 보험계약의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당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않는 본 보험계약의 무효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액을 효력상실의 경우에는 미경과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보험 계약자에게 반환 합니다.

제 12 조 (보험료의 반환 - 해지의 경우)

제2조(고지의무)제1항 및 제7조(보험계약의 해지)의 규정에 따라 당사 또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당사는 보험료를 반환 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 (보험금의 지불)

1. 당사는 사고발생의 경우에 당사가 요구하는 수속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을 자가 종료한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불합니다. 단 당사가 이 기간내에 필요한 조사를 종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끝 낸 후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불 합니다.

2. 당사는 피보험자로 부터의 청구에 준하여 제2장 배상책임 담보조항 제3조(보험금을 지불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에 언급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을때는 피보험자로부터 법률상의 손해 배상금의 지불을 받을 자에 대해 직접 보험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 14 조 (판정인 및 재정인)

1. 손해액 또는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정도에 대해서 당사와 피보험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은 서면으로 각1명씩 공정한 판정인을 선택하여 그 판정을 맡기는 것으로 합니다. 판정인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정인 쌍방이 선정하는 1명의 재정인에게 그 재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 및 피보험자는 각기 선정한 판정인의 비용(보수를 포함합니다)을 각자 부담하고 판정에 필요한 공통비용 및 재정인의 비용(보수를 포함합니다.)은 반액 씩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5 조 (대위)

1. 당사가 보험금을 지불한 손해 등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그 손해 등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당사는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단, 제3장 상해 담보 조항의 보험금을 지불한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당사로 이전 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는 보험금의 영수와 동시에 앞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취

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필요한 일체의 관계 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 16 조 (관할 재판소)

본 보험 계약에 대한 소송에 관해서는 일본국의 재판소로 합의에 따른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제 17 조 (준거법)

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국의 법령에 따릅니다.

* 별표 1-5 : 보통상해 보험의 별표 1-5 와 같음

* 별표 6 (제3장 상해 담보 조항 제12조 제1항 관계)

〈 보험금 청구 서류 〉

제출서류	보험금종류	사 망	후유장해	입 원 수 술	통 원
1. 보험금 청구서		○	○	○	○
2. 보험 증권		○	○	○	○
3. 당사가 정한 상해 상황 보고서		○	○	○	○
4. 공공기관 (부득이한 경우, 제3자)의 사고 증명서		○	○	○	○
5. 볼런티어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동안 의 사고 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볼런티 어활동 단체 또는 볼런티어 활동 추진 법인의 증명서류		○	○	○	○
6.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7. 후유장해 또는 상해의 정도 또는 수술 의 내용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	○
8. 입원일수 또는 통원일수를 기재한 병 원 또는 진료소의 증명 서류				○	○
9. 사망 보험금 수취인 (사망보험금 수취 인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의 인감 증명서		○			
10.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	○	○
11. 피 보험자의 호적등본		○			
12. 법정 상속인의 호적등본(사망보험금 수취인의 지정이 없는 경우)		○			
13. 위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위임을 받 은 자의 인감증명서(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을자가 보험금의 청구를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	○	○	○

(注)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가 있는 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상해 불담보 특약 조항

당사는 본 특약조항에 따라 볼런티어 활동보험 보통보험 약관 제3장 상해 담보조항 제1조 (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금 (사망 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 입원 보험금, 수술 보험금 및 통원 보험금을 말합니다)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천재 위험 담보 특약 조항

제 1 조 (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

당사는 이 특약조항에 따라 볼런티어 활동 보험 보통 보험 약관(이하 「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3장 상해 담보조항 제3조(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1)제1항 제8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지진, 화산, 해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또는 이로 인한 질서의 혼란으로 생기는 사고로 입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불합니다.

제 2 조 (특약 조항의 효력상실 또는 해제)

보통약관 제4장 일반 조항 제11조(보험료의 반환 - 보험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의 경우)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 특약조항이 효력상실의 경우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당사는 이 특약 조항에 관한 보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첨 (7)

사회복지법인 兵庫縣사회복지 협의회 볼런티어활동 보험특약 조항

제 1 조 (피보험자의 범위)

본 특약조항에 있어서 불런티어 활동보험 보통보험 약관(이하 본 특약조항에 있어서 「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 배상책임 담보조항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1호 및 제3장 상해 담보조항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보험 증권 기재의 불런티어」란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불런티어로 등록(소속된 불런티어활동 단체를 통한 등록을 포함합니다)

또는 불런티어로써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위촉(소속하는 불런티어 활동 단체를 통한 위촉도 포함합니.)를 받은 자연인중 보험의 가입 수속을 완료한 자로 합니다.

- (1) 사회복지법인 兵車縣 사회복지 협의회 (이하 본 특약조항에서 「縣社協」이라고 합니다)
- (2) 縣社協의 회원인 市·區 사회복지 협의회
- (3) 사회복지법인 神戸市 사회복지 협의회
- (4) 사회복지법인 神戸市 사회복지 협의회 회원으로 區 사회복지 협의회(제2호에서 제4호에서 언급한 사회복지협의를 이하 본 특약조항에서 「社協」이라 합니다)

제 2 조 (보험의 가입 수속)

본 특약조항에 있어서 보험의 가입 수속이란 가입 신청자가 가입 신청서에 필요 기재 사항을 기입한 위에 縣社協 또는 社協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縣社協 또는 社協이 확인하여 접수인을 찍을 때까지의 수속을 말합니다.

제 3 조 (각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 책임 기간)

당사의 각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책임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보험 기간 개시전에 보험의 가입 수속이 완료된 피 보험자에 대해서는 보험 기간과 동일
- (2) 보험 기간 개세후에 보험에 가입 수속을 완료한 피보험자에 대해서

제 4 조 (명부의 비치)

1.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성명 및 불런티어 활동의 내용 등을 기재한 명부를 가입 수속을 접수한 縣社協 또는 社協에 첨부하는 것으로 당사가 그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보험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앞항의 열람을 거부한 경우에는 당사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 5 조 (통지)

보험계약자는 매월 말일을 마감일로 마감일 전 1개월간에 가입 수속을 완료한 자의 수를 마감후 10일 이내에 앞조 제1항의 명부를 근거로 당사에 통지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 6 조 (통지의 지체 또는 누락)

1. 당사는 앞조의 통지에 지체 또는 누락있을 경우에는 해당 통지의 마감일 전 1개월간에 보험의 가입 수속을 완료한 모든 피보험자의 손해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가 그 지체 또는 누락이 자기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에 의함이 아님을 입증하고 그 통지 또는 누락사항에 대해 즉시 서면에 의해 통지하고 당사가 이것을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앞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험 기간 종료후라도 보험 계약자는

이의없이 이것에 대한 보험료를 당사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 7 조 (보험료의 지불 - 1)

보험 계약자는 보험 기간 개시전에 가입 수속이 완료된 피보험자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제5조(통지)의 통지일의 익월15일을 지불 기일로 제5조(통지)의 통지를 기본으로 당사가 정산한 보험료(이하 본 특약조항에 있어「보험료」라 합니다)를 지불기일까지 당사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 8 조 (보험료의 지불 - 2)

보험 계약자는 보험 기간 개시후에 가입 수속을 완료한 피보험자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제5조(통지)의 통지일의 말일을 지불 기일로하여 보험료를 지불 기일까지 당사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 9 조 (보험료 영수전의 사고)

보통 약관 제4장 일반조항 제1조 (보험 기간과 당사의 보험 책임)제2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보험 계약자가 제7조 (보험료의 지불 -1)또는 제8조(보험료의 지불-2)의 지불기일까지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는 지불하지 않은 보험료의 피보험자의 지불기일부터 그 보험료를 영수하기까지 생기는 손해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 (보험 계약의 해지)

1. 당사는 보통 약관 제4장 일반조항 제7조(보험 계약의 해지)에 정한 경우외에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 기재의 보험계약자의 주소로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제1조 (피보험자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피 보험자가 되는 모두를 피보험자로 하지 않을 때
- (2) 제4조 (명부의 비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 (3) 제5조 (통지)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 (4) 제7조 (보험금의 지불-1) 또는 제8조(보험금의 지불-2)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2. 앞조 제4호에서 언급한 사유에 의해 당사가 이 보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4장 일반조항 제9조(보험 계약 해지의 효력)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 계약 해지의 효력은 제7조(보험료의 지불-1) 또는 제8조(보험료의 지불-2)의 지불기일에 소급해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1 조 (準用 규정)

이 특약 조항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특약 조항의 취지에 역행하지 않는 한 보통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학교교사용

No. □□□

학생봉사활동 안전사고에 관한 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는 '96년도부터 학생봉사활동을 제도화하여 학생들에게 매년 일정시간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내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극히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학부모나 학교 교사들께서 학생봉사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비단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현행 학교내 교과활동 중 사고나, 학교밖에서 실시되는 수련·단체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 질문하는 내용은 맞거나 틀리는 답이 없고 단순히 귀하의 의견만을 묻는 것이며, 귀하의 의견은 오직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귀하의 응답이 개별적으로 알려질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전화 : 578-4101, FAX: 576-4104)

연구 책임자 : 김정배

학생봉사활동 안전사고에 관한 의식조사

〈 ※ 해당 응답 번호에 ○를 표시하십시오.〉

1. 선생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선생님의 연령은?

- ① 21 - 30세 ② 31 - 40세 ③ 41 - 50세 ④ 51 - 60세 ⑤ 61세 이상

3. 선생님께서 재직중인 학교 교급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중학교
② 실업계 고등학교
③ 특수 목적 고등학교
④ 인문계 고등학교

4. 선생님께서 재직중인 학교는 다음 중 어느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 ① 농어촌 지역(군단위 이하) ② 중·소도시(시 단위)
③ 대도시 지역(광역,특별시 단위)

5. 선생님의 교사경력은?

- ① 1 - 5년 ② 6 - 10년 ③ 11 - 15년 ④ 16 - 20년 ⑤ 21년 이상

6.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청소년 봉사활동을 지도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 지도하셨는지요?

(학교외의 타 기관에서의 자원봉사지도 경력도 포함됨)

- ① 없다 ② 6개월 미만 ③ 6개월이상 - 1년 미만
④ 1년이상 - 2년미만 ⑤ 2년이상 - 3년미만 ⑥ 3년 이상

7. 선생님의 학교 또는 학급에서는 연중 학생 봉사활동을 어떠한 형태로 실시합니까?

- ① 학교에서 교사가 주관
- ② 학교교사가 주관하는 형태와 학생 개개인의 계획을 병행하여 실시
- ③ 학생 개개인의 계획에 맡김
- ④ 기타 형태 ()

8. 선생님께서는 현재 학생 봉사활동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 ① 담당하고 있다.
- ② 담당하고 있지 않다.

< 8번의 ①번을 응답한 경우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

8-1. 학생 봉사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경우에 학생 봉사활동을 현장지도하십니까?

- ① 학교가 주관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현장지도한다.
- ② ①의 경우를 포함하여 학생들의 봉사동아리 활동도 현장지도한다.
- ③ 학생 개개인의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도 현장지도한다.
- ④ 기타 ()

< 8번의 ②번을 응답한 경우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

8-2. 학생 봉사활동을 담당하고 있지 않는 경우 귀교의 학생 봉사활동 담당교사는 어떠한 경우에 현장지도하십니까?

- ① 학교가 주관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현장지도한다.
- ② ①의 경우를 포함하여 학생들의 봉사동아리 활동도 현장지도한다.
- ③ 학생 개개인의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도 현장지도한다.
- ④ 잘모르겠다.

9. 선생님의 학교나 학급, 또는 학생 개개인의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었던 학생봉사활동 ()안에 모두 ○ 표 하여 주십시오.

실시되었던 활동 내용
농촌벼베기() 방역활동() 환자간병() 복지시설일손돕기()
공공기관내에 일손돕기() 학교내봉사활동()
군부대위문() 고아원위문() 양로원위문() 장애인위문() 병약자위문()
동하교 교통안전지도() 일일방법지도활동() 사회교육지도활동()
수상안전요원()
공공질서확립 캠페인 활동()환경보존 캠페인 활동()학교주변 정화 캠페인 활동()
장애인 봉사활동() 노인봉사활동() 보육아동돌보기()
재해구호() 불우이웃돕기() 헌혈()
수질오염조사활동() 산림보호활동() 문화재청소활동()
농약병수거활동() 산불예방감시원활동() 폐비닐 수거활동()
지역실태조사활동() 지역사회가꾸기활동() 지역홍보활동() 지역행사지원활동()

10.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봉사활동과정에서의 사고 발생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 ① 항상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활동 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④ 생각해본 적이 없다
11. 상기 활동을 포함하여 사고 발생율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하신 활동을 순서대로 3가지만 기술하여 주십시오
- ① ()활동 ② ()활동 ③ ()활동

12. 선생님의 학교에서는 학생봉사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사전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까?

- ① 하고 있다. ② 하고 있지않다. ③ 필요에 따라 하고 있다. ④ 잘 모른다

13. 선생님께서는 사고 발생가능성이 학생 봉사활동을 활성화 하는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크다. ② 크다. ③ 보통이다. ④ 적다. ⑤ 매우 적다.

14.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중 학생본인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 혹은 재산상에 피해를 입힌 경우를 보거나 들은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1 - 2회 ③ 3 - 4회 ④ 5 - 6회 ⑤ 7 - 8회 ⑥ 9회 이상

< 14번의 ①번을 응답한 경우는 응답하지 마십시오. >

14-1. 봉사활동 중에 학생 본인이 다쳤을 경우 피해보상은 누가 하였습니다?

- ① 학교 ② 본인 ③ 봉사를 실시했던 기관 ④ 가해자 ⑤ 기타()

< 14번의 ②번을 응답한 경우는 응답하지 마십시오. >

14-2. 봉사활동 중에 학생이 다른사람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보상은 누가 하였습니다?

- ① 학교 ② 본인 ③ 봉사를 실시했던 기관 ④ 피해자 ⑤기타()

15. 자원봉사 활동시 일어날 사고 중 어떤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봉사를 하는 학생 자신의 신체적 피해
 ② 봉사를 받는 사람의 신체적 피해
 ③ 봉사학생들간의 상해사고
 ④ 봉사기관내에서의 재산상의 피해 (기물파손등)

16. 학생들의 봉사활동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① 국가가 100% 책임 ② 학교가 100% 책임
- ③ 봉사자가 100% 책임 ④ 국가와 학교가 50%씩 책임
- ⑤ 국가와 봉사자가 50%씩 책임 ⑥ 학교와 봉사자가 50%씩 책임
- ⑦ 국가, 학교, 봉사자가 공통적으로 책임

17. 선생님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다음의 어느 활동을 하는 경우에 보험에 가입하게 합니까? 해당되는 활동은 ()에 모두 ○표를 하여주십시오

- ① 소풍() ② 실험 및 실기실습() ③ 수학여행() ④ 봉사활동()
- ⑤ 극기훈련(수련활동)() ⑥ 청소년 단체활동() ⑦ 기타()활동

18. 선생님의 학교에서는 안전공제기금을 어떻게 조성하십니까?

- ① 학생들이 현금으로 납부
- ② 학생들이 수집한 폐지나 빈병수거 비용
- ③ 학교운영 기금에서 충당
- ④ 기타()

19. 안전공제기금의 혜택은 어떠한 활동에 적용되어집니까?

(해당되는 번호에는 모두 ○표를 해주십시오.)

- ① 교내의 모든 활동
- ②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교 밖 봉사활동
- ③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교 밖 수련활동
- ④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교 밖 청소년 단체활동
- ⑤ 학생 개개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봉사활동

20. 학생들의 봉사활동에 수반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장치로서 보험 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가가 보험가입, 사고발생시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
- ② 학교재정으로 보험가입비를 일괄 부담, 사고발생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
- ③ 학생이 보험가입비를 부담하되 학교가 보험회사와 계약하는 형태
- ④ 학생이 보험가입비를 부담하되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 공공기관이 보험회사와 협약하여 학생부담의 가입비를 최소로 하고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지급
- ⑤ 학생이 보험가입비를 부담하되 사고발생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액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추가로 더 보상해주는 형태
- ⑥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해당기관에서 보험가입비를 부담하고 사고발생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
- ⑦ 기타 ()

21. 선생님께서는 학생봉사활동 보험 가입대상이 학생 및 현장 지도자가 지 적용되는 경우 가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가입할 의향이 있다. ② 가입할 의향이 없다. ③ 잘모르겠다.

(21번의 ①을 응답한 경우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21-1.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경우 지도자 대상 보험 가입비와 보상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연간 보험가입비 3000원 - 최고 보상액 8000만원
- ② 연간 보험가입비 2000원 - 최고 보상액 5000만원
- ③ 연간 보험가입비 900원 - 최고 보상액 500만원
- ④ 기타 (연간 보험가입비 원 - 최고 보상액 만원)

(21번의 ②번을 응답한 경우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21-2. 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없는 경우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까지 장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부모용

No.

학생봉사활동 안전사고에 관한 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는 '96년도부터 학생봉사활동을 제도화하여 학생들에게 매년 일정시간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내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활동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극히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학부모나 학교 교사들께서 학생봉사활동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비단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현행 학교내 교과활동 중 사고나, 학교밖에서 실시되는 수련·단체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 질문하는 내용은 맞거나 틀리는 답이 없고 단순히 귀하의 의견만을 묻는 것이며, 귀하의 의견은 오직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귀하의 응답이 개별적으로 알려질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전화 : 578-4101, FAX: 576-4104)

연구 책임자 : 김정배

학생봉사활동 안전사고에 관한 의식조사

〈 ※ 해당 응답번호에 ○를 표시하십시오. 〉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이상

3.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초등학교 졸업(국민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이상

4. 귀하의 자녀중 학생은 몇 명입니까? ()안에 명수를 써넣으십시오.

초등학교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 목적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대학교
()명	()명	()명	()명	()명	()명

5. 귀하의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는 다음 중 어느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 ① 농어촌 지역 (군단위 이하) ② 중·소도시 (시 단위)
③ 대도시 지역 (광역시, 특별시 단위)

6. 귀하의 자녀는 봉사활동을 어떠한 형태로 참여합니까?

- ① 대부분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② 학생들이 조직한 봉사활동 동아리를 통해 참여한다.
③ 학생 스스로가 봉사활동 기관을 찾아가서 참여한다.

④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등을 통해서 참여한다.

⑤ 기타 형태()

7. 귀하께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 자원봉사활동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십시오.

① 대부분 시간 매우기식, 형식적인 활동으로 이루어 진다. ()

② 봉사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③ 봉사활동 기관에서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원하지 않는다. ()

④ 봉사활동기관에서 단순한 노동력만을 요구한다. ()

⑤ 봉사활동을 위한 사전교육이 부족하다. ()

⑥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지가 부족하다. ()

8. 귀하의 자녀 혹은 이웃의 자녀가 학생봉사활동 중에 다치거나, 다른 사람 혹은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가 있었습니까?

① 없다. ② 1 - 2회 ③ 3 - 4회 ④ 5 - 6회 ⑤ 7 - 8회 ⑥ 9회 이상

<8번의 ①번을 응답한 경우는 응답하지 마십시오.>

8-1. 봉사활동 중에 학생 본인이 다쳤을 경우 피해보상은 누가 하였습니까?

① 학교 ② 본인 ③ 봉사를 실시했던 기관 ④ 피해자 자신 ⑤ 기타()

8-2. 봉사활동 중에 학생이 다른 사람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보상은 누가 하였습니까?

① 학교 ② 본인 ③ 봉사를 실시했던 기관 ④ 피해자 자신 ⑤ 기타()

9. 귀댁의 자녀가 참여하였던 학생봉사활동 ()안에 모두 ○ 표 하여 주십시오.

실시되었던 활동 내용
농촌벼베기() 방역활동() 환자간병() 복지시설일손돕기() 공공기관내에 일손돕기() 학교내봉사활동()
군부대위문() 고아원위문() 양로원위문() 장애인위문() 병약자위문()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일일방법지도활동() 사회교육지도활동() 수상안전요원()
공공질서확립 캠페인 활동()환경보존 캠페인 활동()학교주변 정화 캠페인 활동()
장애인 봉사활동() 노인봉사활동() 보육아동돌보기() 재해구호() 불우이웃돕기() 헌혈()
수질오염조사활동() 산림보호활동() 문화재정소활동()
농약병수거활동() 산불예방감시원활동() 퇴비닐 수거활동()
지역실태조사활동() 지역사회가꾸기활동() 지역홍보활동() 지역행사지원활동()

10. 학생봉사활동 과정에서 귀댁 자녀의 사고발생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항상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② 활동내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생각해본 적이 없다
 ④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11. 사고발생율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하신 활동을 순서대로 3가지만 기입하여 주십시오.

- ① ()활동 ② ()활동 ③ ()활동

11-1. 위의 활동들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을때 귀하의 자녀를 참여시키겠습니까?

- ① 참여시킨다
- ② 참여시키지 않는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자녀의 의사를 전적으로 따른다

12. 자원봉사 활동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중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봉사를 하는 학생 자신의 신체적 피해
- ② 봉사를 받는 사람의 신체적 피해
- ③ 봉사학생들간의 상해사고
- ④ 봉사기관내에서의 재산상의 피해(기물파손등)

13. 학생들의 봉사활동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가가 100% 책임
- ② 학교가 100% 책임
- ③ 봉사자가 100% 책임
- ④ 국가와 학교가 50%씩 책임
- ⑤ 국가와 봉사자가 50%씩 책임
- ⑥ 학교와 봉사자가 50%씩 책임
- ⑦ 국가, 학교, 봉사자가 공통적으로 책임

14. 학생들의 봉사활동중에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위험사고에 대한 대책으로서 자원봉사보험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가가 보험가입, 사고 발생시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
- ② 학교재정으로 보험가입비를 일괄부담, 사고발생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

- ③ 학생이 보험가입비를 부담하되 학교가 보험회사와 계약하는 형태
- ④ 학생이 보험가입비를 부담하되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등 공공기관이 보험회사와 협약하여 학생부담의 가입비를 최소화 하고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지급
- ⑤ 학생이 보험가입비를 부담하되 사고발생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액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추가로 더 보상해 주는 형태
- ⑥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이루어지는 해당기관에서 보험가입비를 부담하고 사고발생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
- ⑦ 기타()

15. 자녀의 안전을 위하여 학생봉사활동 보험에 가입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15번의 ①을 응답한 경우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15-1. 자녀의 안전을 위하여 학생봉사활동 보험 가입비와 보상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연간 보험가입비 3000원 - 최고 보상액 8000만원
- ② 연간 보험가입비 2000원 - 최고 보상액 5000만원
- ③ 연간 보험가입비 900원 - 최고 보상액 500만원
- ④ 기타 (연간보험가입비 원 - 최고 보상액 만원)

(15번의 ②번을 응답한 경우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15-2. 보험에 가입할 생각이 없는 경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6. 자녀의 활동과 관련하여 안전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16번의 ①번을 응답한 경우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16-1. 만약 가입한 보험이 있었다면 어떠한 종류의 보험입니까?

① 수련활동(극기훈련 등) 참가시 보험가입

② 청소년 단체활동(모이스카웃, 걸스카웃 등) 참가시 보험가입

③ 교내씨클 및 클럽활동 참가시 보험가입

④ 시중보험회사 상품 - 상품명 ()

⑤ 기타 ()

♣ 지금까지 장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